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

#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

(교통건설국)

김 포 시



# 목 차

1. 교통과 .....	5
2. 대중교통과 .....	82
3. 건설도로과 .....	182
4. 철도과 .....	314

---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

교 통 과



# 교통 업무 보조활동 지원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공모여부	비공모
보조사업자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카포스)	대표자	이명희
사업목적	김포시민 및 취약계층 소유의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แทem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1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5.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7,000	17,000	17,000	0	10,950	-6,050	
시비	7,000	7,000	7,000		5,950	-1,050	
자부담	10,000	10,000	10,000		5,000	-5,00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4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b>합 계</b>	<b>10,950</b>	<b>5,950</b>	<b>5,000</b>	
교통 업무 보조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인원 : 100명</li> <li>- 지원단체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li> <li>- 사업내용 :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 보충</li> <li>- 산출근거</li> <li>· 천막대여 : 110,000원*20개동 = 2,200      2,200      -</li> <li>· 홍보비 : 80,000원*현수막30장 = 2,400      2,400      -</li> <li>· 서식인쇄(유인물 등) : 400,000원 = 400      400      -</li> <li>· 행사운영물품구입 : 리더선, 타이어공기압축기 등 구입 = 950      950      -</li> <li>· 소모품 구입 : 4,200,000원*1식(오일,부동액,필터 등) = 4,200      -      4,200</li> <li>· 식대 : 8,000원*100명 = 800      -      800</li> </ul>				

##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소유의 차량 무상점검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에 기여

## □ 예산증감 사유

- 2022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2023년 예산 편성액(보조금)중 15% 감액
  - 기구입한 소독기 사용으로 차량 소독 관련 예산 편성액 전액을 삭감하고(1,650천원) 행사운영시 필요한 물품 구입비 편성(950천원)
  - 유인물 등 서식인쇄비 감액 편성(750천원 → 400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카포스)</li> <li>○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li> <li>- 일 시 : 2021. 11. 28.(일) 10:00 ~ 15:30</li> <li>- 참여인원 : 105명</li> <li>- 주요내용 : 차량 250여 대 무상점검 서비스(차량점검, 소모품 교환 등)</li> </ul> </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카포스)</li> <li>○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li> <li>- 일 시 : 2022. 10. 16.(일) 09:00 ~ 16:00</li> <li>- 참여인원 : 125명</li> <li>- 주요내용 : 차량 420여 대 무상점검 서비스(차량점검, 소모품 교환 등)</li> </ul> </li> </ul>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카포스)</li> <li>○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li> <li>- 일 시 : 2023. 09. 17.(일) 9:30 ~ 16:00</li> <li>- 참여인원 : 전문정비사 100여명</li> <li>- 행사내용 : 김포시민 차량 670여대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 및 보충</li> </ul> </li> </ul>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17,000	7,000	10,000	17,000	7,000	10,000	-	-	-	
2022	17,000	7,000	10,000	17,000	7,000	10,000	-	-	-	
2023	17,000	7,000	10,000	17,000	7,000	10,0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자동차관리팀장 남궁행	담당자	행정7급 서호진	전화	5908
-----	-----	-------------	-----	----------	----	------

# 녹색어머니회 지원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공모여부	비공모
보조사업자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	대표자	정미라
사업목적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한 스쿨존 내 교통질서 확립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type="checkbox"/> 보템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적근거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지도반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지도반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지도반이 실시하는 교통지도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및 기타경비 3. 교통지도반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4. 교통지도반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에 위한 조치를 요청 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0,694	16,671	16,671	0	16,984	313	
시비	20,694	16,671	16,671		16,984	313	
자부담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4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b>합 계</b>	16,984	16,984	-	
녹색 어머니회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일시 : 2024년 중				
		- 장소 : 관내 33개교				
		- 참여인원 : 16,989명				
		- 지원단체 :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				
		- 사업내용 :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및 교통캠페인 지원				
		- 산출근거				
		o 홍보비				
		· 옐로카드 : 3,850원*2,286개	= 8,800	8,800	-	
		· 현수막 : 50,000원*20개	= 1,000	1,000	-	
		o 식비				
		· 캠페인참석자 급식비 : 8,000원*18명*20회	= 2,880	2,880	-	
		· 다과비 : 6,000원*33명*5회	= 990	990	-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4년 요구액		비고	
		○ 물품구입비				
		· 명찰 : 8,000원*33개	=	264	264	-
		· 깃발set : 15,000원*70개	=	1,050	1,050	-
		· 형광조끼 : 38,500원*33개	=	1,270	1,270	-
		· 선캡 : 27,500원*27개	=	730	730	-

### □ 예산요구 사유

-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굣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봉사하는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교통 안전 캠페인 활동 시 필요한 급식비 및 물품구입비를 지원하여 교통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예산증감 사유

- 스쿨존 캠페인 활동 시 필요한 물품(깃발set, 형광조끼 등) 및 식비를 지원하여 봉사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관내 스쿨존 캠페인 추진 - 일시 : 2021. 04. ~ 매주 화요일 - 내용 : 김포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교통지도 및 캠페인 실시
2022	○ 관내 스쿨존 캠페인 추진 - 일시 : 2022. 05. ~ 매주 화요일 - 내용 : 김포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교통지도 및 캠페인 실시
2023	○ 관내 스쿨존 캠페인 추진 - 일시 : 2023. 04. ~ 매주 화요일 - 내용 : 김포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교통지도 및 캠페인 실시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19,153	18,853	300	19,153	18,853	300	-	-	-	
2022	20,694	20,694	-	20,694	20,694	-	-	-	-	
2023	16,671	16,671	-	16,671	16,671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물류정책팀장 최종호	담당자	행정8급 최지영	전화	2466
-----	-----	--------------	-----	----------	----	------

# 모범운전자회 지원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공모여부	비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시 모범운전자회	대표자	유홍선
사업목적	교통 혼잡지역의 신속한 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지도를 통하여 교통사고 없는 시민행복도시 김포 건설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type="checkbox"/> 보템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적근거	김포시交通安全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p>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지도반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지도반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li> <li>2. 교통지도반이 실시하는 교통지도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및 기타경비</li> <li>3. 교통지도반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li> <li>4. 교통지도반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li> </ol> <p>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9,993	50,156	50,156	0	50,300	144	
시비	49,993	50,156	50,156	0	50,300	144	
자부담	0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50,300	50,300	-	
모범 운전자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일 시 : 2024년 중 - 장 소 : 김포시 전 지역 - 참여인원 : 91명 - 지원단체 : 김포시 모범운전자회 - 사업내용 : 모범운전자회 교통캠페인 지원 - 산출근거				
		o 식비				
		· 출퇴근 정체지역 근무자 식대 : 8,000원*16명*20일*12개월	=	30,720	30,720	-
		o 물품구입비				
		· 야간경광봉 : 15,000원*91개	=	1,365	1,365	-
		· 발광조끼 : 35,000원*91벌	=	3,185	3,185	
		· 모범정복 : 42,000원*91벌	=	3,822	3,822	
		· 모범우의 : 70,000원*91벌	=	6,370	6,370	-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 순찰차운영 및 무전기			-	
		· 유류비 : 120,000원*12개월	=	1,440	1,440	-
		· 모범순찰차 세금 : 348,000원	=	348	348	-
		· 자동차보험료 : 470,000원	=	470	470	-
		· 무전기전파사용료 : 6,000원*15대*12개월	=	1,080	1,080	-
		· 노후 무전기 교체 : 300,000원*5대	=	1,500	1,500	-

### □ 예산요구 사유

- 상습 정체지역 교통정리 활동 등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식비 및 활동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봉사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 활동에 교체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예산증감 사유

- 모범운전자 회원 변경(91명)에 따른 노후된 물품(야간경광봉, 발광조끼, 정복, 우의) 구입비를 지원하여 봉사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스쿨존 연합 캠페인(2021년 중 월 2회) ○ 상습정체지역 2021년 중 교통단속 근무 ○ 코로나 선별검사소, 백신접종시설 교통정리 특별근무 ○ 시 주관 행사 지원
2022	○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스쿨존 연합 캠페인(2022년 중 월 2회) ○ 상습정체지역 2022년 중 교통단속 근무 ○ 코로나 선별검사소, 백신접종시설 교통정리 특별근무 ○ 시 주관 행사 지원
2023	○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스쿨존 연합 캠페인(2023년 중 월 2회) ○ 상습정체지역 2023년 중 교통단속 근무 ○ 시 주관 행사 지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40,000	40,000	-	40,000	40,000	-	-	-	-	
2022	49,993	49,993	-	49,993	49,993	-	-	-	-	
2023	50,156	50,156	-	50,156	50,156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물류정책팀장 최종호	담당자	행정8급 최지영	전화	2466
-----	-----	--------------	-----	----------	----	------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고령운전자 537명		
사업목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p>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p> <p>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p>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70,000	60,000	60,000	0	53,700	-6,300	
국비	0	0	0	0	16,110	16,110	
도비	35,000	30,000	30,000	0	18,795	-11,205	
시비	35,000	30,000	30,000	0	18,795	-11,205	
기타	0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3,700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301-14 기타 보상금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 100,000원 * 537명	= 53,700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국도비보조사업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증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전체 사고 2%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 사고 4% 증가)(도로교통공단 참고)

2018년 (단위:건)		2022년 (단위:건)	
전체 사고건수	고령자 사고건수	전체 사고건수	고령자 사고건수
217,148	30,012	196,836	34,652

- 김포시 거주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유자 수 : 38,184명(2023.7월말 기준)(자진반납 보상율:2%)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자
- 지원금액 및 방식 : 1인당 10만원(1회 한정) 상당의 김포페이 카드

## □ 예산증감 사유

-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사업 국도비 삭감으로 예산 감소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事成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3.21.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참여 보고 [교통과-9256(2019.03.21.)호]
  - 2019.07.11. : 「김포시交通安全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2020.08.01.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시행
  - 2022.09.01. : 지급방식 변경(교통카드 → 김포페이 카드)
  - 2019.09.01. ~ 2023.04. : 사업 시행(예산소진으로 사업완료)
  - 2024.01.01.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재개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교통카드 585매 지급
202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교통카드 700매 지급
202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교통카드 600매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70,000	58,500	-	11,500	
2022	70,000	70,000	-	-	
2023	60,000	6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물류정책팀장 최종호	담당자	시설7급 문나연	전화	5924
-----	-----	--------------	-----	----------	----	------

# 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 업무 지원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무단방치차량 견인: 연간 140여대		
사업목적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른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함으로써 교통안전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5조(단가계약) 제14항, 제2항
		<b>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b>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b>제25조(단가계약)</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가계약의 범위·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9,500	12,996	12,996	0	12,096	-9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500	12,996	12,996	0	12,096	-9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공 통		합 계	12,096	
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 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차량 견인비 : 84,000원*12대*12개월	= 12,096	* 차량 견인비 : 84,000원/1대  * 예상 견인대수: - 월 12대, 연144대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도로변, 사유지 등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이동조치하기 위한 견인비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견인 대수는 감소 예상, 견인비 단가 현실화 반영(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예산 감액  
 - 2023년도 예산: 12,996천원(180대\*72,000원) -> 2024년도 예산: 12,096천원(144대\*84,000원)  
 ※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10.1. 시행)기준에 따라 견인거리(방치장소 ~ 폐차장)가 평균 12km내외로 11km ~ 15km까지 요금기준인 84,000원을 견인요금 기준금액으로 적용(※ 과년도 10km미만 72,000원 적용)  
 참고) 견인대수: 2021년도 156대, 2022년도 130대, 2023년 130~140대(예정)  
 견인비: 2021년도 70,000원, 2022년도 72,000원, 2023년도 72,0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12. : 무단방치차량 견인 사업 집행(매월 약 12대 견인) ※ 견인비 지급(상, 하반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견인대수: 총 156대
2022	- 견인대수: 총 130대
2023	- 견인대수: 총 93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2,750	10,513	-	2,237	
2022	19,500	11,367	-	8,133	
2023	12,960	3,312	-	9,648	10.31.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자동차관리팀장 남궁행	담당자	행정6급 조성래	전화	5907
-----	-----	-------------	-----	----------	----	------

#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시스템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특사경 프로그램 시스템 1식		
사업목적	특사경 프로그램 이용을 통하여 방치차량 관리 및 특사경 업무의 효율성 증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85조(통칙) 제2항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개정 2014. 1. 7.>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3,600	3,600	3,600	0	4,260	6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600	3,600	3,600		4,260	66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공 통		합 계	4,260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시스템	201-01 공공운영비	· 특사경프로그램(ASP) 유지보수 사용료 - 시스템 유지보수 : 월 사용료(300,000원)*12개월=3,600,000원 - DB암호화 유지보수: 월 사용료(55,000원)*12개월=660,000원	= 4,260	* 월 사용료 : 355,000원

**□ 예산요구 사유**

- 방치차량 신고 접수 및 안내문 생성, 조사 내용 기록 등 특사경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지원시스템 사용에 따른 매월 사용료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특사경프로그램 사용 관련 차량 개인정보 해킹 예방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제품(DB암호화) 설치에 따른 유지 보수 사용료 증액
  - DB암호화 유지보수비 예산(월 55,000원\*12개월 = 660,000원) ※보안제품 설치비 무상(업체 제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2024. 12. :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사용료 지급(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유지보수 사용료 지급(1월~12월)
2022	유지보수 사용료 지급(1월~12월)
2023	유지보수 사용료 지급(1월~10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300	3,300	-	-	
2022	3,600	3,600	-	-	
2023	3,600	3,000	-	6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자동차관리팀장 남궁형	담당자	행정6급 조성래	전화	5907
-----	-----	-------------	-----	----------	----	------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연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목적	교통분야 자문비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당 지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10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조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9,280	9,280	9,280	0	9,28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280	9,280	9,280	0	9,280	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280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01-01 사무관리비	· 사전검토 수당 : 30,000원*8명*12건 · 심의 수당 : 80,000원*8명*10회	= 2,880 = 6,400	

##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 사전검토 및 심의 수당 지급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외에 기타 교통분야 자문 요청에 따른 자문비용 지급

## □ 예산증감 사유

- 위원회 운영계획이 동일함에 따라 증감사유 없음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05. : 김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최초 구성
- 2024.01. ~ 2024.12. : 심의위원회 운영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12회 개최, 19건 처리
2022	9회 개최, 13건 처리
2023	6회 개최, 9건 처리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9,280	7,560	-	1,720	
2022	9,280	6,470	-	2,810	
2023	9,280	5,090	-	4,190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7급 전보배	전화	2465
-----	-----	------------	-----	----------	----	------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규모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43개소		
사업목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 제5항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305,930	939,080	778,500	160,580	406,640	-371,8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05,930	939,080	778,500	160,580	406,640	-371,86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6,64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01-02 공공운영비	· 통신요금 : 34,000원 * 87개소 * 12개월 · 전기요금 : 26,000원 * 87개소 * 12개월	= 62,640	
	401-01 시설비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연간단가) 143개소 -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 150,000,000원 - 노면표시 유지보수 : 100,000,000원 - 과속 방지시설 유지보수 : 50,00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 : 400,000원 * 110개소	= 300,000 = 44,000	

## □ 예산 요구 사유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노면표시 유지보수 등 연간단가를 통한 민원 즉각 대응 및 교통안전 확보
-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종점 부적합 등 설치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분쟁 우려로 부적합 구역 재정비 필요.

## □ 예산증감 사유

- 물량조정으로 인한 증감액 발생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지보수 연간단가(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과속 방지시설) 착공
- 2024.01. ~ 12. : 무인 교통단속 장비 전기 및 통신 요금 납부
- 2024.03. ~ 05. :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12.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지보수 연간단가 준공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안전펜스 설치 (은여울초교 외 1개소) - 미끄럼방지포장 (사우초교 외 4개소) - 노란신호등 설치 (개곡초교 외 19개소)	- 횡단보도 도로표지병 설치 (청수초교 외 3개소) -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하성초교 외 8개소) - 표지판 보수공사 (학운초교 외 19개소)
2022	- 사우교 주변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공사 - 예은유치원 앞 차로 확포장공사 - 감정초등학교 보행인도 열선 설치 공사 -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정비(월곶초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나비초교 외 2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 -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인수검사 수수료 납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및 볼라드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논슬립) 설치 - 도막형 바닥재 설치(감정초교)
2023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설치(마송중앙초교 외 1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중앙분리대 설치(감정초교 외 1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논슬립) 설치(감정초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차식표지 설치(호수초교 외 8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석정초교 외 3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 바닥신호등 설치 (걸포초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900,840	1,778,201	90,482	32,157	
2022	1,396,413	1,298,535	-	97,878	
2023	939,080	678,812	-	260,268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8급 이영수	전화	2327
-----	-----	------------	-----	----------	----	------

#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사업기간	2020. 06. ~ 2024. 12.	사업위치	걸포동 1553번지
사업규모	안전체험관 조성 (A=1,987.62㎡, 지하1층 지상2층)		
사업목적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으로 시민안전의식 고취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제5호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교통안전	
		재난안전법	제66조의4 제1항7호, 제4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000,000	300,000	0	300,000	1,000,000	1,000,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2,000,000	300,000	0	300,000	1,000,000	1,000,000	
기타	0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0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401-01 시설비	· 공사비(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	= 1,000,000	

## □ 예산요구 사유

- 실내 안전체험시설 제작 및 설치 비용 미확보 등 업체선정 지연으로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사업에 차질 발생 등 사업지연 불가피

## □ 예산증감 사유

-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2024년 본예산 사업비 1,000,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적정(변경)	-	-	-
일자	2023.11.	2021.04.	-	-	-	-	2023.04.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20.08. : 건축기본계획 수립
- 2020.10.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 2020.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03. :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 2021.01. ~ 2022.04.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04. : 공유재산 변경 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이행
- 2023.05.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 2024.12. : 공사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A+B+E)	기투자(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E)	비고
			계(B=C+D)	본예산(C)	추경(D)		
<b>계</b>	<b>11,680,000</b>	<b>3,598,300</b>	<b>8,081,700</b>	<b>1,000,000</b>	<b>7,081,700</b>	<b>0</b>	
공정별	설계비	380,000	380,000	0	0	0	0
	보상비	0	0	0	0	0	0
	공사비	9,661,700	1,800,000	7,861,700	1,000,000	6,861,700	0
	감리비	1,600,000	1,400,000	200,000	0	200,000	0
	부대비	38,300	18,300	20,000	0	20,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공용건축물 건축(증축) 협의 완료
2023	공유재산 변경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이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 ○ 최근3년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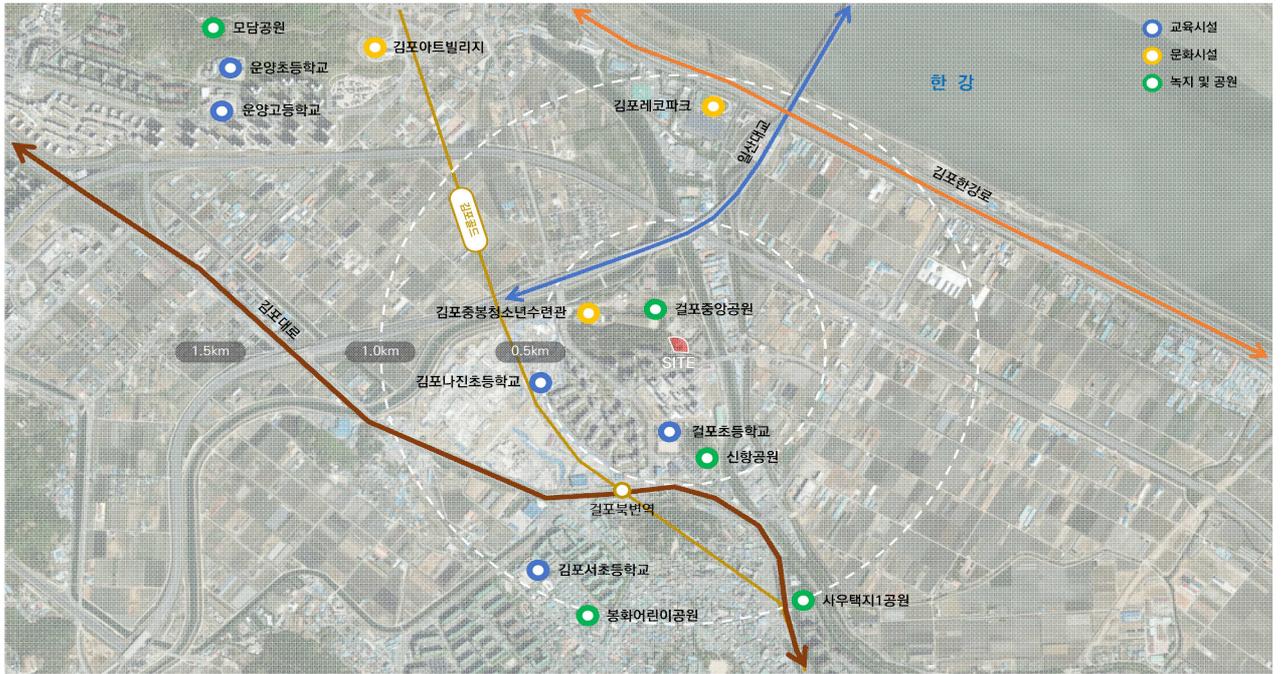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278,536	252,199	1,020,826	5,511	
2022	3,020,826	123,358	2,897,234	234	
2023	3,197,234	400,760	2,796,474	-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과	사업규모	A=1,987.62㎡, 지하1층 지상2층	본예산 요구액 (천원)	1,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사업위치	걸포동 1553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홍원욱	담당자	시설7급 박종국	전화	5941
-----	-----	--------	-----	-----	----------	----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04. 31.	사업위치	김포한강3로 291 등 2개소
사업규모	신규 지정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2개소		
사업목적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항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0,000	150,000	0	150,000	50,000	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000	150,000	-	150,000	50,000	5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50,000</b>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2개소)</li> <li>- 교통안전표지 설치 : 2,000,000원 * 2개소</li> <li>- 노면표시 설치 : 2,000,000원 * 2개소</li> <li>-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 33,000원 * 200㎡</li> <li>- 고원식 횡단보도 재포장 : 9,200,000원 * 1개소</li> <li>-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표시 : 1,000,000원 * 1개소</li> <li>- 방호울타리 설치 : 360,000원 * 70경간</li> </ul>	= 50,000	

## □ 예산요구 사유

- 신규 지정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및 시인성 확보 필요

## □ 예산증감 사유

- 물량조정으로 인한 증감액 발생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 ~ 06. : 신규 지정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 착공 및 준공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미끄럼 방지 포장(갈산3리 마을회관 외 1개소)
2022	- 안전펜스 설치(약암1리 경로당 외 2개소)
2023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0,000	38,415	-	1,585	
2022	40,000	38,345	-	1,655	
2023	150,000	-	-	15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8급 이영수	전화	2327
-----	-----	------------	-----	----------	----	------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시내버스 와이파이 450대		
사업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관내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08,664	127,009	127,009	0	101,883	-25,12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8,664	127,009	127,009		101,883	-25,126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공통		합 계	101,883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시내버스 와이파이 통신요금 : 18,867원 * 450대 * 12개월	= 101,883	

※ 국비 부담금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납부, 국비 세입예산 대상 아님.

## □ 예산요구 사유

○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기초로 2018년 하반기 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임.

##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공공 와이파이 회선 수 감소 (타 시·군 양도·양수 등)

○ 24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국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가내시) 변경(정정) [경기도 버스정책과-19836, (2023.9.26.)회]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2.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완료
- 2020.01.~ 2023.06. : 정상운영 및 요금 납부(478대)
- 2023.06.~ : 고양시 양도 및 현황조사 28회선 감소(450대)
- 2024.01.~2024.12. : 와이파이 운영 및 요금 납부 예정(450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감소 (11대)
2022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478대) 정상운영
2023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감소 (28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450대) 운영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11,814	107,866	-	3,948	
2022	108,664	107,445	-	1,219	
2023	127,009	96,498	-	30,511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9급 오승연	전화	5923
-----	-----	------------	-----	----------	----	------

#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광역버스 와이파이 189대		
사업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관내 광역버스 이용 시민들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86,772	106,920	106,920	0	84,824	-22,096	
국비		0				0	
도비	26,032	32,076	32,076		25,447	-6,629	
시비	60,740	74,844	74,844		59,377	-15,467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공통		합 계	84,824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광역버스 와이파이 통신요금 : 37,400원 * 189대 * 12개월 =	84,824	도비30% 시비70%

## □ 예산요구 사유

-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기초로 2018년 하반기 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임.

##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공공 와이파이 회선 수 감소 (9대)
- 2024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 [경기도 버스정책과-18446, (2023.9.11.)호]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2. :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완료
- 2020.01~ 2023.08. : 정상운영 및 요금 납부(198대)
- 2023.09. : 광역버스 현황조사로 인한 9회선 감소(189대)
- 2024.01. ~ 2024.12. : 정상운영 및 요금 납부 예정(189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완료(198대)
2022	-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198대)
2023	-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감소 (9대),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189대) 운영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86,773	86,772	-	1	
2022	86,773	86,772	-	1	
2023	106,920	76,250	-	30,670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9급 오승연	전화	5923
-----	-----	------------	-----	----------	----	------

#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개소		
사업목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380,000	380,000	
국비					380,000	380,0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80,000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 유류비 : 40,000,000원*6개월 = 240,000 - 정비비 : 96,000,000원 = 96,000 - 통행료 : 1,500,000원*6개월 = 9,000 - 시스템운영비 : 3,000,000원*6개월 = 18,000 - 공공요금 : 17,000,000원 = 17,000		

## □ 예산요구 사유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제공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대당 9,5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9.20. :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14559)
- 2024.1.~12. : 사업 집행(김포도시관리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2023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	-	-	-	
2023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물류정책팀장 최종호	담당자	행정7급 유미선	전화	2464
-----	-----	--------------	-----	----------	----	------

# 특별교통수단 운영 (도비)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개소		
사업목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969,887	3,968,321	3,968,321	0	4,462,304	493,983	
국비	0	0	0	0	0	0	
도비	913,074	1,190,496	1,190,496		1,338,691	148,195	
시비	3,056,813	2,777,825	2,777,825		3,123,613	345,788	
기타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462,304	
특별교통수단 운영 (도비)	201-01 사무관리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회의 수당 : 80,000원*6명*2회 =	960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인력운영비 : 3,195,830,000원 · 경비 : 1,262,578,000원 =	4,458,408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제습기 구입 : 1,297,000원 · 인터넷 방화벽장치 구입 : 1,639,000원 =	2,936	

## □ 예산요구 사유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제공
-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김포도시관리공사 위탁)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전출금으로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공무직 기본급 인상분 반영,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근무시간 및 기간 확대 (6시간, 10개월),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전화회선 추가 증설 등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에 따른 운영비 증액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9.20. : 경기도 도비 보조금 가내시(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14559)
- 2024.1.~12. : 사업 집행(김포도시관리공사)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운행건수 : 61,736건 - 이 용 객 : 89,896명
2022	- 운행건수 : 56,518건 - 이 용 객 : 75,646명
2023	- 운행건수 : 69,181건 - 이 용 객 : 95,940명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306,000	3,142,200	-	163,800	
2022	3,969,887	3,936,231	-	33,656	
2023	3,986,321	3,966,807	-	19,514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물류정책팀장 최종호	담당자	행정7급 유미선	전화	2464
-----	-----	--------------	-----	----------	----	------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3대 교체 구입		
사업목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해당조례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92,000	92,000	96,000	-4,000	138,000	42,000	
국비	0	46,000	48,000	-2,000	0	-48,000	
도비	36,800	0	0	0	55,200	55,200	
시비	55,200	46,000	48,000	-2,000	82,800	34,800	
기타	0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8,000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 46,000,000원 * 3대 (더뉴카니발 저상형 장애인차)	= 138,000	

## □ 예산요구 사유

○ 특별교통수단 내용연수(8년)초과 (연식 2014년 1대, 2015년 2대) 및 차량 노후(운행거리 300,000km 초과)로 교체

## □ 예산증감 사유

○ 차량 3대 노후화(내용연수 및 운행거리 초과)로 인해 수리비 상승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교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3대 교체 구입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반영	-	-	-	-
일자	2023.11.	-	-	-	-	2023.08.21.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9.20. : 경기도 도비 보조금 가내시(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14559)
- 2024.01. : 사업집행(차량구매-조달청)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 구입 (5대 교체)
2022	-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구입 (1대 교체) ※ 차량 1대 부품 수급 불안으로 차량 입고 지연됨에 따라 이월
2023	-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 구입 (3대 교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58,000	235,475	-	22,525	
2022	92,000	45,949	44,767	1,284	
2023	136,767	136,576	-	19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물류정책팀장 최종호	담당자	행정7급 유미선	전화	2464
-----	-----	--------------	-----	----------	----	------

#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도입 지원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3대 구입		
사업목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132,000	132,000	
국비					12,000	12,000	
도비					48,000	48,000	
시비					72,000	72,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2,000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도입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구입 : 40,000,000원 * 3대 · 차량구입(전기차) 국비보조금: 4,000,000원 * 3대	= 120,000 = 12,000	

##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의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통합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3대 도입

## □ 예산증감 사유

-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리프트미장착 차량) 3대 구입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예정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9.20. : 경기도 도비 보조금 가내시(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14559)
- 2024. 상반기 : 사업집행(차량구매)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2023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	-	-	-	
2023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물류정책팀장 최종호	담당자	행정7급 유미선	전화	2464
-----	-----	--------------	-----	----------	----	------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시설 확충

##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전역
사업규모	불법주정차 단속 CCTV유지관리 및 교통시설물 설치(표지판, 블라드, 시선유도봉, 안전펜스, 적색표시 등)		
사업목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항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5m 이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134,928	2,104,928	1,966,928	138,000	919,804	-1,047,12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134,928	2,104,928	1,966,928	138,000	919,804	-1,047,124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919,804</b>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확충	201-02 공공운영비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전기·통신요금 (34,500,000원 * 12월) =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 =	414,000 300,000	
	401-01 시설비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 블라드 설치 : 202,000원 * 150개 = - 차선규제봉 설치 : 25,000원 * 200개 = -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설치(연석) : 654,000원 * 76개소 = - 표지판 설치 : 400,000원 * 100개 = - 안전펜스 설치 : 360,000원 * 30경간 = - 노면도색 : 25,000원 * 2,800㎡ =	205,804 30,300 5,000 49,704 40,000 10,800 70,000	

### □ 예산요구 사유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 용역
  -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주정차 방지 요청 민원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물(블라드, 표지판, 차선규제봉) 설치 필요

## □ 예산증감 사유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확충(공공운영비)
  -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 하자보수기간(2년) 만료로 인한 유지관리 개소수 증가(295개소 → 331개소)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 2023 소화전 관리 및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대행감사 소화전 적색표시(937개소) 중 미설치 및 설치기준 부적합(37개소)등 160개소에 대한 관리 및 설치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 필요
  - 불법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시설물(표지판, 차선규제봉) 설치 예산 추가 확보 필요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12.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 용역 착수 및 준공  
불법주정차 방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연간단가)용역 착공 및 준공
  - 2024.02. ~ 06. : 소화전 적색표시 및 안전펜스 착수 및 준공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 26개소</li> <li>-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 : 26개소</li> <li>-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240개소, 시선유도봉 설치 : 800EA</li> <li>- 불법주정차 방지 블라드 설치 : 250개, 안전펜스 설치 : 328경간</li> <li>-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 : 3,375.3㎡</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 15개소</li> <li>-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 : 43개소</li> <li>- 불법주정차 단속 프로그램 통합 플랫폼 설치</li> <li>- 불법주정차 방지 블라드 설치 : 242개, 안전펜스 설치 : 450경간</li> <li>-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 2,016㎡</li> <li>- 소화전 적색표시 플라스틱 커버 설치 : 70개소</li> <li>- 버스전용차로 표지병 설치 : 373EA</li> <li>-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 2,220㎡</li> <li>-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225개, 시선유도봉 설치 : 600개</li> </ul>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 10개소</li> <li>-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 : 17개소</li> <li>- 불법주정차 방지 블라드 설치 : 308개</li> <li>- 소화전 적색표시 플라스틱 커버 설치 : 150개소</li> <li>-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200개 중 150개 설치 완료, 시선유도봉 설치 : 500개 중 300개 설치 완료</li> <li>-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사업 진행 중</li> <li>- 소화전 적색 복선 노면표시 공사 사업 진행 중</li> </ul>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194,750	2,069,921	-	124,829	
2022	2,974,362	2,781,887	10,000	182,475	
2023	2,104,928	1,692,510	-	412,41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9급 김수은 시설9급 오승연	전화	2482 5923
-----	-----	------------	-----	----------------------	----	--------------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지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단속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 등 운영		
사업목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단속반운영, 과태료 부과, 체납 관리, 단속알림 서비스 등 효과적인 계도단속 운영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0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3호 제16조
	<p><b>160조(과태료)</b> ③ 차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b>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b>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 시장 등</p>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731,153	744,830	591,450	153,380	529,562	-61,88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31,153	744,830	591,450	153,380	529,562	-61,888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529,562</b>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고지서용지구입 : 55,000원*35박스*12개월 = 23,100 ·전산 소모품 비용 : 2,000,000원*12개월 = 24,000 ·교통지도단속 급식비 등 : 8,000원*4명*30일*12개월 = 11,520 ·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회위원회 참석수당 : 170,000원*3명*12개월 = 6,120 ·단속반 근무자 피복비 : 200,000원*14명 = 2,800 ·단속반 근무자 휴게실 기본경비 : 500,000원 = 500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 홍보비(현수막 등) : 4,500,000*2회 = 9,000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드납부 수수료 : 100원*2,500건*12개월 = 3,000 ·불법주정차 가상계좌 사용수수료 : 80원*10,000건*12개월 = 9,600		
	201-02 공공운영비	·등기 우편요금 : 2,530원*1,750건*12개월 = 53,130 ·일반 우편요금 : 430원*23,800건*12개월 = 122,808 ·모바일 발송료 : 카카오킬 발송 300원*36,500건*12개월+문자발송 185원*7,300건*12개월+CI변환 500,000원/년 = 148,106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지관리 : 5,500,000원*4대 = 22,000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상해보험료 : 10,500원*14명*12개월 = 1,764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보험료 : 800,000원*4대 = 3,200 ·주정차관리전산시스템(S/W) 유지관리 : 1,516,000원*12개월 = 18,192 ·문자알리미시스템(S/W) 유지관리 : 714,833원*12개월 = 8,578 ·문자알리미 서비스 사용료 : 1,000,000원*12개월 = 12,000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 1,210,000원*12개월 = 14,520 ·국민신문고민원 자동처리시스템 유지관리 : 360,000원*12개월 = 4,320 ·전자고지 유지관리비 : 1,000,000원*12개월 = 12,000 ·주정차및전용차로위반과태료 시스템 자료이관 : 19,303,900원 = 19,304		

□ 예산요구 사유

- 단속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전산소모품 구입, 단속홍보 및 급식비, 과태료심의회위원회 참석수당, 과태료 부과 위한 수수료(카드, 가상계좌)]
-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운영비[우편료, 단속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 예산증감 사유

- 전자고지 시행 초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방식(우편발송)을 병행하되 등기 및 일반우편 요금을 감액하고 모바일 발송료 및 전자고지 유지관리비를 편성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부과 건수 : 108,908건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 4,496,714천원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금액 : 3,555,111천원 - 과태료 징수율 : 79.0%
2022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부과 건수 : 132,501건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 5,607,605천원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징수금액 : 4,583,215천원 - 과태료 징수율 : 81.7%
2023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부과 건수 : 161,604건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 6,943,739천원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징수금액 : 5,460,019천원 - 과태료 징수율 : 78.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71,360	352,924	-	18,436	
2022	783,153 (예산액 731,153 전용액 52,000)	723,742	22,000	37,411	
2023	766,830 (예산액 744,830 이월액 22,000)	516,952	-	249,87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질서팀장 장석희	담당자	행정7급 임성민 행정8급 전병욱 행정9급 허예진	전화	5577 5575 5574
-----	-----	------------	-----	----------------------------------	----	----------------------

# 불법주정차 견인차고지 조성 및 운영

##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전역
사업규모	견인차량보관소 1개소(3명), 통신기 5대, 견인대상 차량 40대/1년		
사업목적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을 통한 주정차 민원 해소 및 원활한 차량 소통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제1항 및 제3항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소요비용)제1항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 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02,278	175,923	175,923	0	97,205	-78,71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2,278	175,923	175,923	0	97,205	-78,718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7,205	
불법주정차 견인차고지 조성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견인료 35,000원 * 40대	= 1,400	
	201-02 공공운영비	· 견인단속 장비 통신 요금 500,000원 * 12월	= 6,000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견인차고지 운영비 - 견인차고지 경상이전(연금부담금 및 배상금 등) - 견인차고지 인건비	= 24,932 = 9,961 = 54,912	
			89,805	

### □ 예산요구 사유

- 견인차량보관소 외 공영주차장<sup>1)</sup>(현재 무료 운영중), 전대부지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운영비용
- 현재 견인 대행업체 모집 과정에 있으며 대행업체 선정시 연단위 40대 범위에서 견인 시행 예정

1) 공영주차장 39면, 불법주정차 견인차고지 10면, 무단방치견인 이륜차전용구역 7면

## □ 예산증감 사유

- 견인 감소(2021년 514대 > 2022년 4대 > 2023년 현재 0대)로 인한 인건비 감액(3명->2명)
  - ※ 견인율 감소 사유 :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확대<sup>2)</sup>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주민제보 등 불법주정차 단속방식의 다변화로 견인 필요성 및 요구 민원 감소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0. : 견인차고지 정비공사 완료
  - 2019.09. : 견인업무 시민홍보 및 단속원 교육 실시
  - 2019.10. ~ 2020.12. : 시범운영 및 견인단속 실시
  - 2021.01. ~ 2023.12. : 민원다수 발생지역에 대한 견인 실시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불법주정차 차량 514대 견인
2022	- 불법주정차 차량 4대 견인
2023	- 견인대행업체 모집 과정으로 미실시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91,865	138,813	-	53,052	
2022	202,278	123,003	-	79,275	
2023	175,923	171,950	-	3,973	10.31. 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2)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 21년말 280대, 22년말 331대, 23년 현재 359대

부서명	교통과	주차질서팀장 장석희	담당자	행정7급 임성민	전화	5577
-----	-----	------------	-----	----------	----	------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등 구입(교체)

##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다목적 승용 1대, 이동형 CCTV 1세트		
사업목적	노후단속차량의 교체를 통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속차량을 추가 구입하여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제1항
		① 단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80,000	0	0	0	77,000	77,000	
국비	7,000	0			4,000	4,000	
도비		0				0	
시비	73,000	0			73,000	73,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7,000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등 구입(교체)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다목적승용차 구입 : 50,000,000원*1대	= 50,000	
		· 이동형 단속 CCTV 구입 : 27,000,000원*1대	= 27,000	

### □ 예산요구 사유

- 현재 운용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노후되어, 수리비 상승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바, 차량 및 단속 CCTV를 교체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도모
  - 교체대상 차량 : 31저4759(쏘렌토) / 최초등록 : 2015.05.27. / 주행거리 326,426km(2023.10.10.기준)
  - ※ 교체정수 승인 : 회계과-13388(2023.5.4.) 공용차량 정수배정 결과 안내
  - 기후에너지과-39754(2023.10.5.)호에 따라 국비 4,000천원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단속차량(50,000천원/대), 이동형(차량부착형) 단속 CCTV(27,000천원/대)를 각각 1대 구입
  - ※ 친환경자동차(전기차) 구매예정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승인	-	-	-	-
일자	2023.11.	-	-	-	-	2023.05.04.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교체) 80,000천원 편성 → 명시이월
2023	집행 73,049,820원 [※ 단속 차량 구매(48,738,750원), 이동형 단속 CCTV 구매(24,311,070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80,000	-	80,000	-	
2023	80,000	73,050	-	6,950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질서팀장 장석희	담당자	행정6급 김형욱	전화	5578
-----	-----	------------	-----	----------	----	------

#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공영주차장
사업규모	공영주차장 59개소, 주차면 4,849면		
사업목적	공영주차장 지속 운영 및 관리,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b>제8조 ①</b>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b>제13조 ②</b>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564,819	2,766,973	2,639,773	127,200	2,658,260	18,487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3,564,819	2,766,973	2,639,773	127,200	2,658,260	18,487	
기타	0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58,260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소 계	= 84,700	
		·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 82,000	
		· 공영주차장 홍보 및 물품 구입	= 2,700	
	201-02 공공운영비	소 계	= 180	
		· 행복나눔 및 품무역 노외주차장 공공요금	= 180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소 계	= 2,553,380	
		· 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 30명, 기간제근로자 3명)	= 1,393,019	
		· 운영경비(공공요금 납부, 수선유지비 등)	= 1,160,361	
	401-01 시설비	소 계	= 20,000	
		·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 20,000	

## □ 예산요구 사유

○ 공영주차장 부지 내 국유지 지속 사용을 위한 대부료 납부

주차장명(면수)	위 치	소유자 (지목)	사용면적(㎡)	사용기간(1년)	연간사용료(천원)
북변공영(157면)	북변동 105-10 외2필지	기획재정부 (대지)	1,266	2024.04.17. ~ 2025.04.16.	34,000
사우동행복나눔(49면)	사우동 847-5		167	2024.11.07. ~ 2025.11.06.	14,000
고촌공영(58면)	신곡리 532-87	농어촌공사 (구)	1,360	2024.08.01. ~ 2025.07.31.	18,000
신곡공영(18면)	신곡리 578-2		385.5	2025.01.01. ~ 2026.12.31.	10,000
풍무역노외(99면)	풍무동 333-4		839	2024.02.28. ~ 2025.02.27.	6,000
<b>합 계</b>					<b>82,000</b>

- 운양·구래 행복나눔주차장 및 풍무역노외주차장 전기요금 등 납부
- 즉각적인 공영주차장 정비를 통하여 시민편의 제공
-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주차장 문제 발생 시 즉시 처리 가능

## □ 예산증감 사유

○ 장기2 공영주차장의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정비필요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기획재정부 및 농어촌공사 부지) / 공영주차장 운영 2021년 공영주차장 노면 정비사업 / 2021년 공영주차장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통진 마송주차장 조성공사 / 풍무동 행복나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22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기획재정부 및 농어촌공사 부지) / 공영주차장 운영 장기동 노외주차장 차폐블럭 설치 및 관목식재공사 / 양곡행복나눔주차장 조성공사
2023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기획재정부 및 농어촌공사 부지) / 공영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용품 구매 / 장기동 노외주차장 외 4개소 정비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992,916	2,798,183	19,733	175,000	
2022	3,584,552	3,138,031	136,299	310,222	
2023	2,903,272	2,631,029	-	272,243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홍원욱	담당자	시설7급 김지은	전화	2330
-----	-----	------------	-----	----------	----	------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교통유발부담금 약 6,000건		
사업목적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 정확성 증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67,346	62,430	62,430	0	32,863	-29,567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67,346	62,430	62,430	0	32,863	-29,567	
기타	0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86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소 계	= 26,863	
		·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반		
		- 기본급 : 89,680원 * 20일 * 12명(정액급식비 및 여비 포함)	= 21,524	
	- 유급휴일수당 : 89,680원 * 4일 * 12명	= 4,305		
- 고용산재보험료 : 25,828,000원 * 4%	= 1,034			
	201-01 사무관리비	소 계	= 6,000	
		· 고지서 구입 : 60,000원 * 10박스	= 600	
		· 정기부과 사전안내문 발송 : 900원 * 6,000건	= 5,400	

### □ 예산요구 사유

- 시설물 실사용 용도조사를 위한 조사반(12명) 운영 관련 인건비 편성
- 정기부과 전 부담금 부과 안내 및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위한 사전안내문 인쇄비, 발송비 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사전준비 및 조사결과 입력 등에 필요한 전산반 미채용 사유로 인건비 삭감
- 사전안내문 발송료 증액분 반영
-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가상계좌납입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및 가상계좌수수료 삭제(공공운영비 삭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6. :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및 채용
  - 2024.08. :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부과 사전안내문 발송
  - 2024.10.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고지서 발송
  - 2024.12.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교통유발부담금 가상계좌 수수료 납부, 고지서 구입 등(4,049건)
2022	- 교통유발부담금 가상계좌 수수료 납부, 고지서 구입 등(4,551건)
2023	- 교통유발부담금 가상계좌 수수료 납부, 고지서 구입 등(4,838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6,727	34,261	-	2,466	
2022	67,346	55,781	-	11,565	
2023	62,430	57,759	-	4,67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홍원욱	담당자	행정8급 황미선	전화	2329
-----	-----	------------	-----	----------	----	------

# 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사업위치	사우삼거리~신곡사거리~개화교
사업규모	관내 버스전용차로 L=8.0km		
사업목적	버스전용차로 내 훼손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와 교통정체 및 불편민원 발생 지점에 대한 개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 등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2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20,000	2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401-01 시설비	· 버스전용차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 20,000	

### □ 예산요구 사유

- 버스전용차로 내 훼손된 교통시설물(노면표시, 표지판 등)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 버스전용차로 정체 및 불편지점에 대한 흐름개선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 □ 예산증감 사유

- 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 ~ 10. : 버스전용차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2023	'23.02.13. 고촌~개화 중앙 버스전용차로 개통 '23.05.26. 개화~김포공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	-	-	-	
2023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교통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7급 전보배	전화	2465
-----	-----	------------	-----	----------	----	------

# 인력운영비

##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사업위치	교통과
사업규모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공무원 근로자 1명 운영		
사업목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2,753	44,036	44,036	0	44,433	397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42,753	44,036	44,036	0	44,433	397	
기타	0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4,433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소 계	= 38,976	
		· 기본급 : 2,432,010원 * 12월 * 1명	= 29,185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12월 * 1명	= 1,680	
		· 가족수당 : 40,000원 * 12월 * 1명	= 480	
		· 시간외수당 : 20,190원 * 15시간 * 12월 * 1명	= 3,635	
		· 연차유급휴가수당 : 107,680원 * 10일	= 1,077	
		· 명절휴가비 : 2,432,010원 * 2회 * 60%	= 2,919	
	304-0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소 계	= 5,457	
		· 4대보험료 : 38,976,000원 * 14%	= 5,457	

### □ 예산요구 사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업무수행 담당자 필요 인건비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공무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증액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12.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 수행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4,049건/1,380,142,620원)
2022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4,551건/1,476,787,390원)
2023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4,838건/1,549,382,740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1,036	39,009	-	2,027	
2022	42,753	41,374	-	1,379	
2023	44,036	35,336	-	8,700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홍원욱	담당자	행정8급 황미선	전화	2329
-----	-----	------------	-----	----------	----	------

#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0. 01. ~ 2024. 12.	사업위치	걸포동 1553번지
사업규모	안전체험관 조성 (A=1,987.62㎡, 지하1층 지상2층)		
사업목적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으로 시민안전의식 고취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제5호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교통안전	
		재난안전법	제66조의4 제1항7호, 제4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3,298,300	395,322	2,902,978	300,000	400,760	2,802,218	8,081,700	1,000,000	7,081,700
국비									
도비									
시비	3,298,300	395,322	2,902,978	300,000	400,760	2,802,218	8,081,700	1,000,000	7,081,700
기타									

※ 지출잔액(불용액:5,744천원) 미포함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0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401-01 시설비	· 공사비(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	= 1,000,000	

## □ 예산요구 사유

- 안전체험관조성사업 건축물 신축과 전시시설 설치 용역이 동시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 전시시설 설치용역의 미발주 사항으로 시설공사비 예산확보율이 18%에 불과하여 24년 본예산 미편성 시 사업계속추진 불가

## □ 예산증감 사유

-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추진중인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적정(변경)	-	-	-
일자	2023.11.	2021.04.	-	-	-	-	2023.04.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20.08. : 건축기본계획 수립
- 2020.10.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 2020.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04. :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 2021.01. ~ 2022.04.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04. : 공유재산 변경 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이행
- 2023.05.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 2024.12. : 공사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11,680,000</b>	<b>3,598,300</b>	<b>8,081,700</b>	<b>1,000,000</b>	<b>7,081,700</b>	<b>0</b>	
공 정 별	설계비	340,000	340,000	0	0		
	보상비			0	0		
	공사비	9,701,700	1,840,000	7,861,700	1,000,000	6,861,700	
	감리비	1,600,000	1,400,000	200,000		200,000	
	부대비	38,300	18,300	20,000		20,00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시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2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공용건축물 건축(증축) 협의 완료
2023	공유재산 변경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이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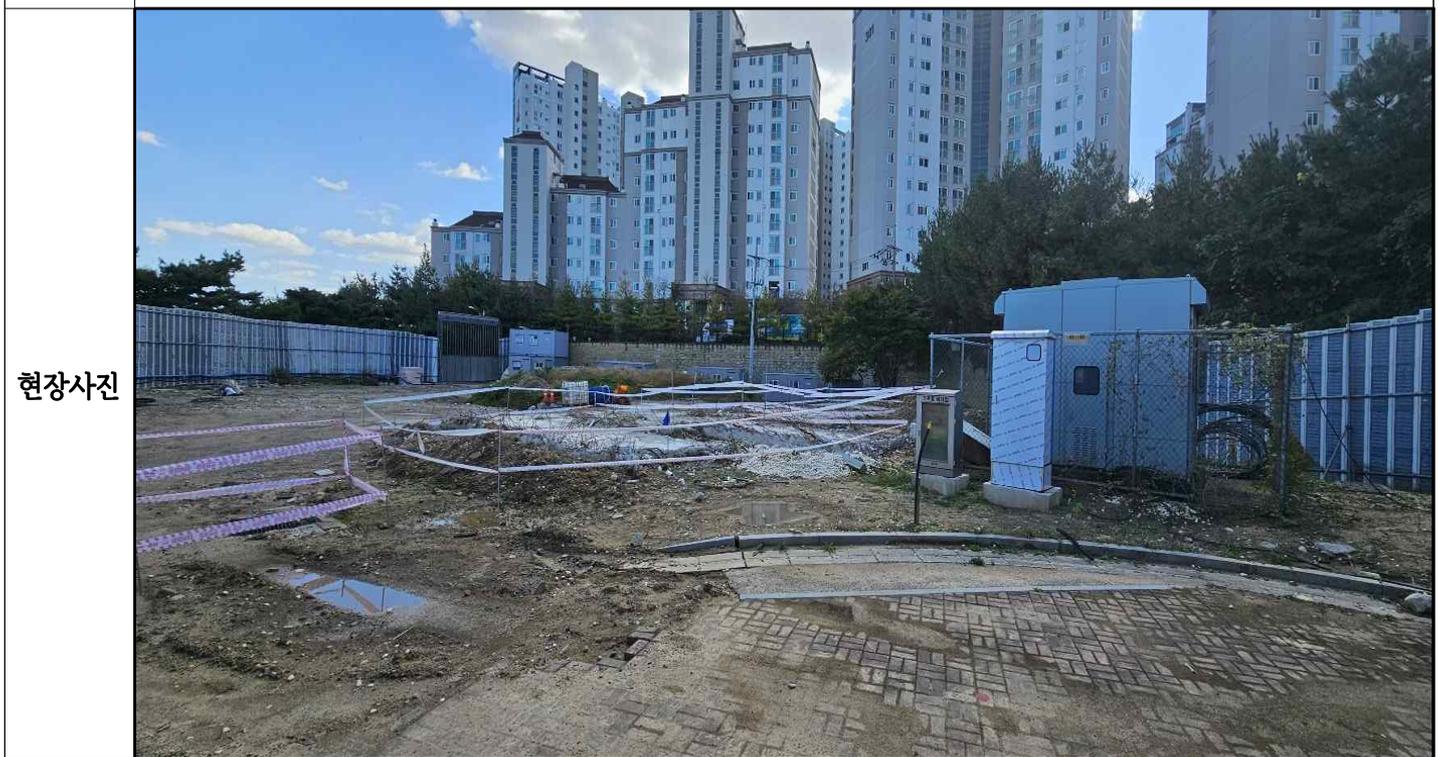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278,536	252,199	1,020,826	5,511	집행잔액 반납
2022	3,020,826	123,358	2,897,234	233	집행잔액 반납
2023	3,197,234	400,760	2,796,474	-	10.31. 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과	사업규모	A=1,987.62㎡, 지하1층 지상2층	본예산 요구액 (천원)	1,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사업위치	걸포동 1553번지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홍원욱	담당자	시설7급 박종국	전화	5941
-----	-----	--------	-----	-----	----------	----	------

#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조성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11. ~ 2024. 12.	사업위치	구래동 6882-7번지
사업규모	지하주차장 105면(지하1층, 연면적 3,760㎡)		
사업목적	구래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계)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6,840,000	5,650,392	1,189,608	6,689,134	3,294,627	4,584,115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2,000,000	2,000,000	0	0	0	0
시비	6,840,000	5,650,392	1,189,608	4,689,134	1,294,627	4,584,115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 해당없음

## □ 예산요구 사유

- 해당없음

##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계속비이월 사업내용
  -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조성 중 발생된 토사를 LH와 협의하여 유희부지에 야적 중으로 2024년 6월 내 사토처리 및 원상복구 비용발생
  -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 정비 필요(주차장 진입도로 정비 등)
  -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필요(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반영	-	-	-
일자	2023.11.	2020.03.	-	-	-	-	2020.02.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1. : 사업계획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0.02. : 공유재산 심의
- 2020.03.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21.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2.0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2.03. ~ 2023.12. :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 2024.01. ~ 2024.12. : 부대공사추진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A+B+E)	기투자(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E)	비고	
			계(B=C+D)	본예산(C)	추경(D)			
<b>계</b>	<b>13,529,134</b>	<b>13,529,134</b>	<b>0</b>	<b>0</b>	<b>0</b>	<b>0</b>		
공정별	설계비	340,000	340,000	0	0	0	0	
	보상비	0	0	0	0	0	0	
	공사비	11,650,849	11,650,849	0	0	0	0	
	감리비	1,508,285	1,508,285	0	0	0	0	
	부대비	30,000	30,000	0	0	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2022	공용건축물 건축(신축) 협의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공사 착공
2023	공사 준공(11월 예정),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12월 예정)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840,000	234,020	605,980	-	
2022	6,605,981	5,416,373	1,189,608	-	
2023	7,878,742	3,294,627	4,584,115	-	10.31. 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과	사업규모	지하주차장 105면 (지하1층, 연면적 3,760㎡)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위치	구래동 6882-7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홍원욱	담당자	시설7급 박종국	전화	5941
-----	-----	------------	-----	----------	----	------

# 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0. 07. ~ 2027. 12.		사업위치	풍무동 933번지	
사업규모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A=5,815㎡, 6층 135면)				
사업목적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4,950,000	4,328,512	621,488	500,000	55,455	1,066,033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0
시비	4,950,000	4,328,512	621,488	500,000	55,455	1,066,033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시 추진 (임기내 착공)

※ 집행잔액(불용액:66,033천원) 미포함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 해당없음

## □ 예산요구 사유

○ 해당없음

##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적정	-	-	-
일자	2023.11.	2020.10.	-	-	-	-	2020.08.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7. : 사업계획수립
- 2020.08.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반영
- 2020.10. : 투지심사 완료(경기도)
- 2021.03. ~ 2023.0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05. : 계약심사 완료(경기도)
- 2026.03. ~ 2027.12. : 공사추진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11,100,000</b>	<b>5,450,000</b>	<b>0</b>	<b>0</b>	<b>0</b>	<b>5,650,000</b>	
공 정 별	설계비	350,000	350,000	0	0	0	
	보상비	4,100,000	4,100,000	0	0	0	
	공사비	5,780,000	900,000	0	0	0	4,880,000
	감리비	830,000	100,000	0	0	0	730,000
	부대비	40,000	0	0	0	0	40,00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2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계약심사 완료 / 풍무2지구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50,000	225,793	124,207	-	
2022	624,207	2,719	555,455	66,033	집행잔액 반납
2023	1,055,455	55,455	1,000,000	-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과	사업규모	A=5,815㎡, 6층 135면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위치	풍무동 933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홍원욱	담당자	시설7급	김지은	전화	2330
-----	-----	--------	-----	-----	------	-----	----	------

#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0. 09. ~ 2024. 12.	사업위치	장기동 2001-1번지
사업규모	공영주차장 208면(3층 4단, 연면적 6,720㎡)		
사업목적	한강중앙공원 및 라베니체 상가 이용자 주차문제 해결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계)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7,275,000	2,429,551	4,845,449	4,725,000	3,295,405	6,275,044	0	0	0
국비									
도비									
시비	7,275,000	2,429,551	4,845,449	4,725,000	3,295,405	6,275,044	0	0	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 해당없음

## □ 예산요구 사유

- 해당없음

##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계속비 이월 사업내용
  -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중 발생된 토사를 LH협약하여 유희부지 내 야적중으로 2024년 6월 내 사토처리 및 원상복구 비용 발생
  -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필요(BF본인증 보완사항 정비 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반영	-	-	-
일자	2023.11.	2020.11.	-	-	-	-	2020.10.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9. :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2020.10. : 공유재산심의
- 2020.11.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1.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01. ~ 2022.0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2.06. : 공사 착공
- 2024.03. : 공사 준공(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포함)
- 2024.04. ~ 2024.12. : 부대공사 추진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12,000,000</b>	<b>12,000,000</b>	<b>0</b>	<b>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375,000	375,000	0	0	0	0	
	보상비	0	0	0	0	0	0	
	공사비	11,305,000	11,305,000	0	0	0	0	
	감리비	300,000	300,000	0	0	0	0	
	부대비	20,000	20,000	0	0	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건축구조형식 결정(공법심의 추진)
202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착공
2023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중 (공정률 54%)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875,000	233,169	641,831	-	
2022	7,041,831	2,196,382	4,845,449	-	
2023	9,570,449	3,295,405	6,275,044	-	10.31. 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과	사업규모	3층 4단 자주식 공영주차장, 208면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위치	장기동 2001-1번지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홍원욱	담당자	시설7급 김지은	전화	2330
-----	-----	------------	-----	----------	----	------

# 양곡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1. 8. ~ 2025. 12.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리 1331	
사업규모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4,790㎡, 지하1층, 지상1층 220면)				
사업목적	독립기념관·공원·체육시설 이용객 및 주변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729,000	537,495	191,505	0	6,459	185,046	7,000,000	0	7,000,000
국비									
도비									
시비	729,000	537,495	191,505	0	6,459	185,046	7,000,000	0	7,000,00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 해당없음

## □ 예산요구 사유

- 독립기념관·공원·체육시설이용객 및 주변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양곡근린공원 내 부설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필요

## □ 예산증감 사유

-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2025년 12월 준공을 위하여 사업비 7,000,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적정	-	-	-
일자	2023.11.	2021.11.	-	-	-	-	2021.10.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8. : 사업계획 수립
- 2021.10. : 공유재산 심의
- 2021.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22.03. ~ 2023.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4.09. ~ 2025.12. : 공사추진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10,329,000</b>	<b>729,000</b>	<b>7,000,000</b>	<b>0</b>	<b>7,000,000</b>	<b>2,600,000</b>	
공 정 별	설계비	429,000	429,000	0	0		
	보상비	300,000	300,000	0	0		
	공사비	8,260,000	0	6,100,000	0	6,100,000	2,160,000
	감리비	1,300,000	0	900,000	0	900,000	40,000
	부대비	40,000	0	0	0	0	40,00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3	건축구조형식 결정(공법심의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12월 예정)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00,000	300,000	-	-	
2022	429,000	237,495	191,505	-	
2023	191,505	6,459	185,046	-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과	사업규모	A=4,790㎡, 지하1층 지상1층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양곡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리 1331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홍원욱	담당자	시설7급 김지은	전화	2330
-----	-----	------------	-----	----------	----	------

# 장기1 공영주차장 조성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3. 11. ~ 2026. 12.	사업위치	장기동 1861번지
사업규모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7,100㎡, 지상3층 290면)		
사업목적	장기역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주차환경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0	0	0	0	0	0	600,000	0	600,000
국비									
도비									
시비	0	0	0	0	0	0	600,000	0	600,00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 해당없음

## □ 예산요구 사유

- 장기역 이용객 및 인근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만성적 주차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시민불편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장기1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확보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
- 2020년 주차실태조사 용역 결과

구분	주차 수급률				불법 주차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수요	비율	수요	비율	수요	비율	수요	비율
장기동	4098	152.9	3987	157.1	472	89.1	674	86
장기본동	3364	142.7	2383	201.4	165	63.5	247	78.2
평균	3731	147.8	3185	179.25	318.5	76.3	460.5	82.1

□ 예산증감 사유

- 장기역 주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추진 사업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미이행	-	-	-	-	미이행	-	-	-
일자	2023.11.	2024년(실시예정)	-	-	-	-	2024년(실시예정)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4.01. ~ 2024.06. : 사업계획 수립,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 추진
- 2024.08. ~ 2025.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5.03. ~ 2026.12. : 공사 추진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A+B+E)	기투자(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E)	비고
			계(B=C+D)	본예산(C)	추경(D)		
<b>계</b>	<b>17,340,000</b>	<b>0</b>	<b>600,000</b>	<b>0</b>	<b>600,000</b>	<b>16,740,000</b>	
공정별	설계비	600,000	0	600,000	0	600,000	0
	보상비	0	0	0	0	0	0
	공사비	14,200,000	0	0	0	0	14,200,000
	감리비	2,500,000	0	0	0	0	2,500,000
	부대비	40,000	0	0	0	0	4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 해당없음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과	사업규모	지상3층, 연면적 7,100㎡ (290면)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장기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위치	장기동 1861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홍원욱	담당자	시설7급 김지은	전화	2330
-----	-----	--------	-----	-----	----------	----	------

# 장기3 공영주차장 조성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3. 11. ~ 2027. 12.	사업위치	장기동 1521번지
사업규모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7,700㎡, 지상2층 380면)		
사업목적	상업지역(장기먹자골목) 및 주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주차환경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계)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0	0	0	0	0	0	0	0	0
국비									
도비									
시비	0	0	0	0	0	0	0	0	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 해당없음

## □ 예산요구 사유

- 상업지역(장기먹자골목) 이용객 및 인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만성적 주차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시민불편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2020년 주차실태조사 용역 결과

구분	주차 수급률				불법 주차율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수요	비율	수요	비율	수요	비율	수요	비율
장기동	4098	152.9	3987	157.1	472	89.1	674	86
장기본동	3364	142.7	2383	201.4	165	63.5	247	78.2
평균	3731	147.8	3185	179.25	318.5	76.3	460.5	82.1

□ 예산증감 사유

- 장기먹자골목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추진 사업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미이행	-	-	-	-	미이행	-	-	-
일자	2023.11.	2024년(실시예정)	-	-	-	-	2024년(실시예정)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4.01. : 사업계획수립
- 2024.03. ~ 2024.12. :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 추진
- 2025.03. ~ 2026.0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6.04. ~ 2027.12. : 공사 추진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A+B+E)	기투자(A)	2024년 예산 소요액(B)			향후투자(E)	비고
			계(B=C+D)	본예산(C)	추경(D)		
<b>계</b>	<b>18,540,000</b>	<b>0</b>	<b>0</b>	<b>0</b>	<b>0</b>	<b>18,540,000</b>	
공정별	설계비	600,000	0	0	0	600,000	
	보상비	0	0	0	0	0	
	공사비	15,400,000	0	0	0	15,400,000	
	감리비	2,500,000	0	0	0	2,500,000	
	부대비	40,000	0	0	0	4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 해당없음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과	사업규모	지상2층, 연면적 7,700㎡ (380면)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장기3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위치	장기동 1521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홍원욱	담당자	시설7급 김지은	전화	2330
-----	-----	--------	-----	-----	----------	----	------

#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7. 03.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운양동 1306-7번지 외 2필지
사업규모	지하2층, 지상5층 2개동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목적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한 인근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35,621,000	33,996,441	1,624,559	0	641,223	983,336	0	0	0
국비									
도비									
시비	35,621,000	33,996,441	1,624,559	0	641,223	983,336	0	0	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 해당없음

## □ 예산요구 사유

- 해당없음

##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계속비 이월 사업내용

- 운양환승센터 조성중 발생된 토사를 LH협약하여 유희부지에 야적중으로 2024년 6월 내 사토 처리 및 원상복구 비용발생
- 운양역환승센터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시설 설치 필요(빗물유입방지 타공판 설치, 운전면허시험장 유치관련 시설공간 조성 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적정	-	-	-
일자	2023.11.	2017.11.	-	-	-	-	2020.08.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03. : 추진계획 수립
- 2018.05. : 실시설계 추진
- 2020.03. : 운양환승센터 조성공사 착공
- 2020.08. :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 공유재산심의 완료
- 2022.08. : 운양환승센터 조성공사 준공
- 2023.01. ~ 2024.12. : 운양환승센터 부대공사 추진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35,621,000</b>	<b>35,621,000</b>	<b>0</b>	<b>0</b>	<b>0</b>	<b>0</b>	
공정별	설계비	970,286	970,286	0	0	0	0
	보상비	0	0	0	0	0	0
	공사비	32,595,276	32,595,276	0	0	0	0
	감리비	1,957,000	1,957,000	0	0	0	0
	부대비	98,438	98,438	0	0	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기초공사 완료 및 통신관로 이설
2022	운양환승센터조성공사 준공
2023	운양환승센터 부대공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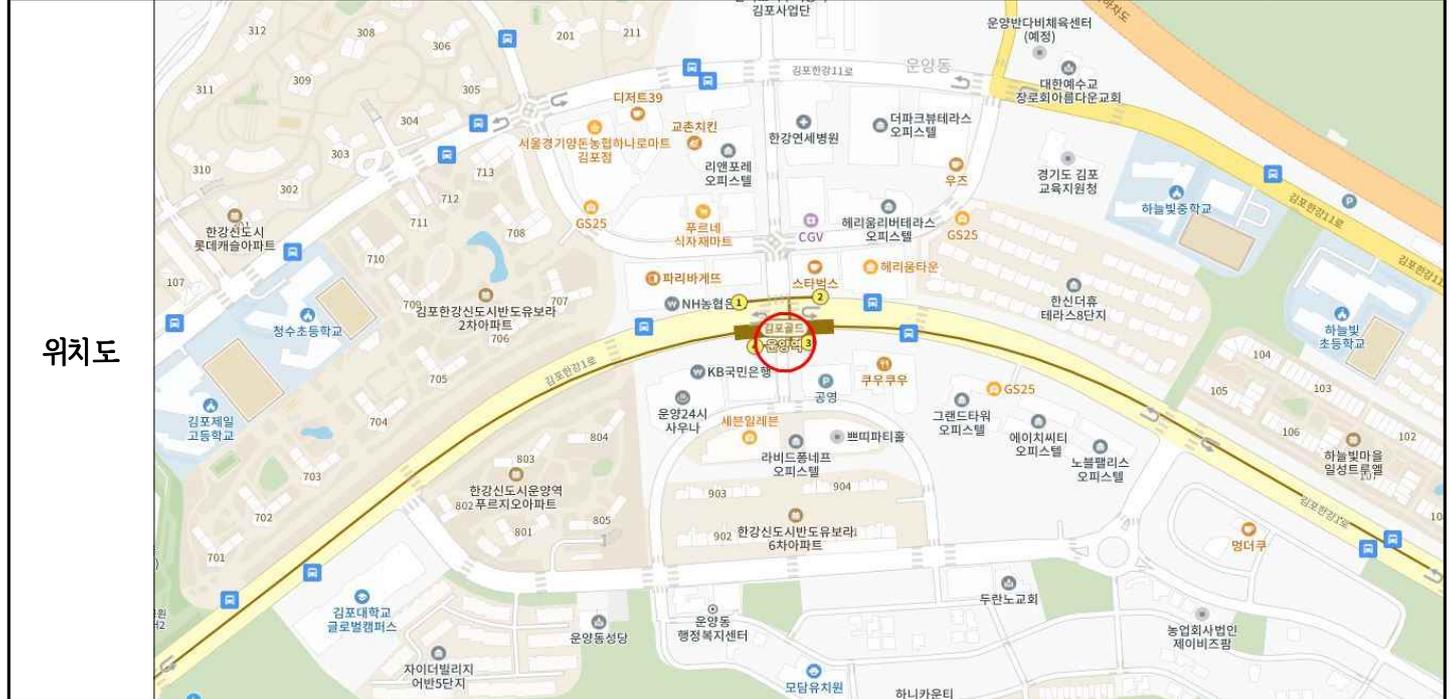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6,118,696	14,625,902	11,492,794	-	
2022	12,592,794	10,968,235	1,624,559	-	
2023	1,624,559	641,223	983,336	-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과	사업규모	지하2층 지상5층 2개동 공용주차장, 424면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	사업위치	운양동 1306-7번지 외 2필지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홍원욱	담당자	시설7급 박종국	전화	5941
-----	-----	--------	-----	-----	----------	----	------

---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

대중교통과



#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택시 632대		
사업목적	택시요금 지불수단의 다양화로 카드 사용률을 높여 이용객 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4호
		제9조(재정 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2,715	13,200	13,200	0	13,349	149	
국비		0				0	
도비	4,768	4,950	4,950		5,006	56	
시비	7,947	8,250	8,250		8,343	93	
기타	0	0	0		0	0	자부담: 3,337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349	자부담 제외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합)성일운수 : 2,200원*66대*12월*80% = ·삼원운수(주) : 2,200원*51대*12월*80% = ·(합)진명택시 : 2,200원*29대*12월*80% = ·김포시개인택시 : 2,200원*486대*12월*80% =	1,394 1,077 613 10,265	

##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지원 내시 632대
- 택시요금 카드 결제 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통신료를 지원하여 카드 결제 기피 현상 해소
- 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해소 및 카드 이용 활성화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법인택시 3대 증차분 반영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0.31.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4.01. ~ 2024.12. : 사업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개인택시 총 468대 9,297,660원 지원 - 일반택시 3개 업체 총 143대 2,782,340원 지원
2022	- 개인택시 총 467대 9,847,520원 지원 - 일반택시 3개 업체 2,867,480원 지원
2023	- 개인택시 총 476대 4,125,440원 지원 - 일반택시 3개 업체 1,202,080원 지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2,080	12,080	-	0	
2022	12,715	12,715	-	0	
2023	13,200	5,328	-	7,872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8급 강인우	전화	5552
-----	-------	------------	-----	----------	----	------

#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택시 632대		
사업목적	택시 업계 재정 부담 완화 및 택시요금 지불수단의 다양화로 카드 사용률을 높여 이용객 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4호
		제9조(재정 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10,033	110,033	110,033	0	111,150	1,117	
국비		0				0	
도비	33,010	33,010	33,010		33,345	335	
시비	77,023	77,023	77,023		77,805	782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1,150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합)성일운수 : 14,656원*66대*12월 = ·삼원운수(주) : 14,656원*51대*12월 = ·(합)진명택시 : 14,656원*29대*12월 = ·김포시개인택시 : 14,656원*486대*12월 =	11,608 8,969 5,100 85,473	

## □ 예산요구 사유

-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해소
- 카드 이용 활성화로 택시 이용객의 편리한 결제 수단 제공
- 카드 결제액 10,000원 미만 수수료 전액 지원

##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사업량 확대
  - 2024년 법인택시 3대 증차분 반영 (2024년 택시 대수 632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0.31.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4.01. ~ 2024.12. : 사업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개인택시 총 467대 38,996,640원 지원 - 일반택시 3개 업체 총 143대 27,924,290원 지원
2022	- 개인택시 총 481대 42,989,790원 지원 - 일반택시 3개 업체 38,014,210원 지원
2023	- 개인택시 총 480대 18,972,520원 지원 - 일반택시 3개 업체 16,645,580원 지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80,810	66,921	-	13,889	
2022	110,033	81,004	-	29,029	
2023	110,033	35,618	-	74,415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8급 강인우	전화	5552
-----	-------	------------	-----	----------	----	------

#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공모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수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전지정 <input type="checkbox"/> 공모
보조사업자	(합)성일운수 외 3개	대표자	김봉구, 문광은, 진형민, 유득현
사업목적	택시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에 따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및 시민 택시이용 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템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5호
		제9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 시스템 지원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25,000	230,214	230,214	0	231,312	1,098	
시비	225,000	230,214	230,214		231,312	1,098	
자부담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4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231,312	231,312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 30,500원*632대*12월 =	231,312	231,312		

## □ 예산요구 사유

- 택시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김포시 단일 콜(김포 통합콜)을 통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호출 시스템을 사용하는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 □ 예산증감 사유

- 제4차 택시 총량에 따른 택시 증차(2024년 3대) ※ 택시 대수 632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10.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 (합)성일운수 외 3개</li> <li>○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및 사업내용 :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li> <li>- 사업기간 및 장소: 2021.1~2021.12 / 김포시</li> <li>- 사업성과 및 개선사항 등 사업평가 내용</li> </ul> </li> </ul> 관내 택시 617대 콜센터 사용료 지원을 통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및 시민 택시아용편의 증진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 (합)성일운수 외 3개</li> <li>○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및 사업내용 :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li> <li>- 사업기간 및 장소: 2022.1~2022.12 / 김포시</li> <li>- 사업성과 및 개선사항 등 사업평가 내용</li> </ul> </li> </ul> 관내 택시 625대 콜센터 사용료 지원을 통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및 시민 택시아용편의 증진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 (합)성일운수 외 3개</li> <li>○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및 사업내용 :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li> <li>- 사업기간 및 장소: 2023.1~2023.12 / 김포시</li> <li>- 사업성과 및 개선사항 등 사업평가 내용</li> </ul> </li> </ul> 관내 택시 629대 콜센터 사용료 지원을 통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및 시민 택시아용편의 증진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222,120	222,120		215,280	215,280		6,840	6,840		
2022	225,000	225,000		224,541	224,541		459	459		
2023	230,214	230,214		188,612	188,612		41,602	41,602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8급 강인우	전화	5552
-----	-------	------------	-----	----------	----	------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203명		
사업목적	3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해당조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급여 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대상자는 일정 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교통사고자 및 유발자의 과실 비율이 과반 이상자	제8조의2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77,240	177,240	177,240	0	170,520	-6,720	
국비		0				0	
도비	126,600	126,600	126,600		121,800	-4,800	
시비	50,640	50,640	50,640		48,720	-1,92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52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70,000원*203명*12월	= 170,520	

##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03명(2023.10월 기준)
- 타 운수업종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근로의욕 고취
- 2023년 10월 기준, 관내 법인택시(3개) 운수종사자 203명에게 1인당 월 7만원(도비 5만원, 시비 2만원 정액)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보조금 지원 대상자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0.31.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4.01. ~ 2024.12. : 사업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총 2,328회 / 116,400,000원 지원
2022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총 2,219회 / 155,330,000원 지원
2023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1,751회 / 122,570,000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47,000	116,400	-	30,600	
2022	177,240	155,330	-	21,910	
2023	177,240	122,570	-	54,67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8급 강인우	전화	5552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택시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위법행위		
사업목적	택시 위법행위 근절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9조(신고포상금 제도) ① 시장·군수는 주민 제보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지급기준·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③ 신고포상금의 재원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 징수한 과태료(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군의 전년도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을 제출받아 해당 시·군의 전년도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5.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0,000	3,000	3,000	0	3,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0	3,000	3,000		3,000	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등 포상금 지급	301-14 기타보상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 3,000	

## □ 예산요구 사유

- 택시 승차 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여객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행위 9종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위법행위 근절, 서비스 개선 효과 및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

□ 예산증감 사유

- '23년도 사업비 동일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12 : 사업 집행
  - 2025.01 : 실적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19건 지급(950,000원)
202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17건 지급(28,000,000원)
202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21건 지급(2,10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000	950	-	2,050	
2022	30,000	28,000	-	2,000	
2023	3,000	2,100	-	9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8급 강인우	전화	5552
-----	-------	------------	-----	----------	----	------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관내 택시 632대		
사업목적	택시 운행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지원 및 데이터 활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1조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 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택시 요금 미터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택시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7,832	8,284	8,284	0	6,639	-1,64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832	8,284	8,284		6,639	-1,645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639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치단체 부담금)	= 6,639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도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영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 유지·관리, 고도화 등에 따른 비용을 면허 대수 비율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
- 택시 산업 발전, 종사자 근무 여건 및 운수회사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실시간 택시 영업 정보 및 운행데이터 분석, 앱 미터 검정 기능 수행) 활용으로 택시 운행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택시 정책 수립 지원

## □ 예산증감 사유

-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비 감소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12 : 사업 집행
- 2025.01 : 실적 보고 및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치단체 부담금) 집행
2022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치단체 부담금) 집행
2023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치단체 부담금) 집행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6,082	6,082	-	0	
2022	7,832	7,832	-	0	
2023	8,284	8,284	-	0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8급 강인우	전화	5552
-----	-------	------------	-----	----------	----	------

# 제5차 택시총량 산정 및 택시 공급계획 수립 용역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제5차 택시 총량 조사 용역		
사업목적	제5차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실차율 및 가동을 조사·분석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9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①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22,000	2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22,000	22,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제5차 택시총량 산정 및 택시 공급계획 수립 용역비	207-01 연구용역비	· 제5차 택시 총량 조사용역비	= 22,000	

**□ 예산요구 사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업 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

**□ 예산증감 사유**

○ 제5차 택시총량 산정을 위한 실차율 및 가동율 조사·분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 : 용역 착수
- 2024.06. : 용역 준공
- 2024.10. ~ 2024.12. :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제4차 택시총량 시행(증차: 15대)
2022	-제4차 택시총량 시행(증차: 8대)
2023	-제4차 택시총량 시행(증차: 4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	-	-	-	
2023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8급 강인우	전화	5552
-----	-------	------------	-----	----------	----	------

#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음택시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25개 마을
사업규모	25개 마을		
사업목적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2항 제1호 바목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생략)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5호 및 제35조의2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80,000	80,000	80,000	0	40,000	-40,000	
국비	40,000	40,000	40,000		20,000	-20,000	
도비							
시비	40,000	40,000	40,000		20,000	-2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음택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별 구간 요금*운행 횟수*12월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대중교통 취약지역 거주 시민의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을 목적으로 대체교통수단(택시) 운행

**□ 예산증감 사유**

○ 버스 노선 개편 및 확대에 의한 이용객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0.31. : 이음택시 기본요금 인상 관련 대중교통기획단 자문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4.01. : 2023년 7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본요금 인상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6개 마을 2,092회 이용
2022	- 26개 마을 1,420회 이용
2023	- 25개 마을 1,848회 이용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80,000	67,273	-	12,727	
2022	80,000	15,451	-	64,548	
2023	40,000	19,831	-	20,16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7급 김유진	전화	5554
-----	-------	------------	-----	----------	----	------

# 택시 승차장 설치사업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관내 승차장 2개소		
사업목적	택시 승차장 쉼터 신규 설치를 통한 택시 이용 시민 편의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적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①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택시 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관청이 도로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4호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해당조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제8조	
	제8조(재정지원 사업)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로부터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회계자료 등)를 제출받아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3.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2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6,000	6,000	
시비		0			14,000	14,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택시 승차장 설치 사업	401-01 시설비	· 택시 승차장 설치 공사비 : 10,000,000원*2개소	= 20,000	

## □ 예산요구 사유

○ 택시 승차장 쉼터 신설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인구 및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신규 택시 승차장 수요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0.31.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4.01. ~ 2024.03. : 사업계획 수립 및 현장 조사
- 2024.04. ~ 2024.12. : 신규 승차장 공사 착공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입간판 신규 설치 4개소(사우동, 김포본동, 장기동, 풍무동) 쉘터 교체 2개소(김포본동, 장기동) 쉘터 신규 설치 1개소(장기동)
2022	-
2023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0,000	38,205	-	1,795	
2022	-	-	-	-	
2023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7급 김유진	전화	5554
-----	-------	------------	-----	----------	----	------

#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및 여객운송사업자	대표자	화물운송사업자 및 여객운송사업자 대표
사업목적	유류인상분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운수업계에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의 안정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템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제50조(재정 지원)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3,200,000	11,700,000	11,700,000	0	13,200,000	1,500,000	
시비	13,200,000	11,700,000	11,700,000		13,200,000	1,500,000	
자부담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3,200,000	13,200,000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화물(경유) : 152.37원 x 6,129,841L x 12개월 =	11,208,047	11,208,047		
		· 택시(LPG) : 131.66원 x 423,971L x 12개월 =	669,840	669,840		
		· 버스(경유) : 167.60원 x 236,970L x 12개월 =	476,594	476,594		
		· 버스(CNG) : 65.30원 x 1,079,019㎡ x 12개월 =	845,519	845,519		

## □ 예산요구 사유

- 물류 및 여객의 안정적인 수송 및 운영의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유류액 인상분에 대한 보전 필요('01년부터 시행)
-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액과 천연가스(CNG)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 예산증감 사유

- 물동량 증가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증가(60%↑) 및 유종별 지원단가 현행화 자료 반영하여 예산 증액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보조사업자 :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추진실적 : 16,113,364천원 지급
2022	○ 보조사업자 :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추진실적 : 12,095,705천원 지급
2023	○ 보조사업자 :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추진실적 : 6,735,028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16,600,000	16,600,000	-	16,113,364	16,113,364	-	486,636	486,636	-	
2022	13,200,000	13,200,000	-	12,095,705	12,095,705	-	1,104,295	1,104,295	-	
2023	11,700,000	11,700,000	-	6,735,028	6,735,028	-	4,964,972	4,964,972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행정8급 박인규 행정8급 강인우 행정8급 김동준	전화	2456 5569 5552 5918
-----	-------	--------------------------	-----	--	----	------------------------------

#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전환사업)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버스정류소 일원
사업규모	버스정류소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		
사업목적	-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 편의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도로법	제2조, 제30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770,000	333,000	333,000	0	170,000	-163,000	
국비		0	0			0	
도비	204,000	100,000	100,000		51,000	-49,000	
시비	566,000	233,000	233,000		119,000	-114,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0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유지관리 공사 : 100,000천원 × 1식 = 100,000 (이설, 철거 등 23개 공정)</li> <li>· 버스정류소 조명시설 유지관리 공사 : 20,000천원 × 1식 = 20,000 (조명시설 설치, 교체, 철거 등 33개 공정)</li> <li>· 쉼터형 버스정류소 신설 및 교체 : 10,000천원 × 5개소 = 50,000</li> </ul>		

## □ 예산요구 사유

- 버스정류소 시설물 보수, 보안등(조명시설) 설치 및 정비 등 연간단가 업체 운영을 통한 민원 신속 대처(단가사업 2개)
- 버스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 및 노후 정류소를 대상으로 버스정류소(쉼터형, 안내판) 교체 및 설치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일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유지관리 공사 계약 체결 및 착공(단가사업 2개)
- 2024. 02. : 버스정류소 설치 계획 수립 및 착공
- 2024. 12. :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유지관리 공사 준공(단가사업 2개)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A+B+E)	기투자(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E)	비고
			계(B=C+D)	본예산(C)	추경(D)		
계	170,000	0	170,000	170,000	0	0	
공정별	설계비	0	0	0			
	보상비	0	0	0			
	공사비	170,000		170,000	170,000		
	감리비	0	0	0			
	부대비	0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쉘터형 버스정류소 신설 37개소, 이설 및 철거 20개소</li> <li>- 버스정류소 내 의자 설치 4개소, 안내판 설치 14개소</li> <li>- P형 표지판 정류소 이설 및 신설 18개소, 철거 6개소</li> <li>- 마을버스 전용 사각 표지판 이설 4개소, 철거 10개소</li> <li>- 지주형(김포시 공공디자인 적용) 정류소 신설 3개소</li> <li>- 버스정류소 내 조명시설 신설 10개소</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쉘터형 버스정류소 설치 25개소, 안내판 버스정류소 설치 16개소</li> <li>- 쉘터형 버스정류소 이설 및 철거 16개소, P형 표지판 설치 및 이설, 철거 31개소, 임시정류장 설치 및 철거 10개소, 정류소 내 의자 설치 28개소</li> <li>- 버스정류소 내 조명 설치 및 철거 등 48개소</li> <li>- 버스정류소 내 보도정비(점자블록 정비 및 자전거도로 절단 등) 35개소</li> <li>- 쉘터형 버스정류소 지붕유리필름 정비사업 75개소</li> </ul>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쉘터형 버스정류소 설치 8개소, 안내판 버스정류소 설치 1개소</li> <li>- 쉘터형 버스정류소 이설 및 철거 12개소, P형 표지판 설치 및 이설, 철거 39개소, 정류소 내 의자 설치 10개소</li> <li>- 버스정류소 내 조명 설치 및 철거, 정비 48개소</li> <li>- 버스정류소 내 보도정비(점자블록 정비) 및 노면도색 25개소</li> <li>- 쉘터형 버스정류소 지붕유리필름 정비사업 47개소</li> </ul>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919,906	896,533	-	23,373	이월액포함
2022	770,000	763,296	-	6,704	
2023	333,000	267,257	-	65,74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팀장 김지선	담당자	시설8급 하만수 시설9급 김필석	전화	☎2462 ☎2457
-----	-------	------------	-----	----------------------	----	----------------

#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전환사업)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운양역 버스정류소 등 6개소
사업규모	운양역 광역 환승정류소 등 6개소 시설개선		
사업목적	-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2조, 제30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9조 제3호
	제9조(대중교통 육성 지원)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240,000	240,000	0	162,000	-78,000	
국비		0	0			0	
도비	-	72,000	72,000		48,600	-23,400	
시비	-	168,000	168,000		113,400	-54,6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2,000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 수행마을.홈플러스(ID:35262) 개선공사 : 42,000천원 × 1식 = 42,000 · 조리미입구(ID:35268) 개선공사 : 17,000천원 × 1식 = 17,000 · 운양역(ID:35649) 개선공사 : 32,000천원 × 1식 = 32,000 · 전월마을1단지(ID:35578) 개선공사 : 22,000천원 × 1식 = 22,000 · 반도유보라2차(ID:35669) 개선공사 : 22,000천원 × 1식 = 22,000 · 양도사거리(ID:35255) 개선공사 : 27,000천원 × 1식 = 27,000		

## □ 예산요구 사유

- 대중교통 이용수요 및 버스 노선 수에 비해 규모가 작고 노후된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 및 편의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사업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일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12. : 운양역 등 6개소 환승 정류소 개선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162,000</b>	<b>0</b>	<b>162,000</b>	<b>162,000</b>	<b>0</b>	<b>0</b>	
공정별	설계비	0	0				
	보상비	0	0				
	공사비	162,000		162,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결포북변역 하행(강화방향)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공사
2022	-
2023	-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사업(1차)] 3개소 완료 · 뉴고려병원 이니스터원(ID:35493) 광역형 버스정류소 15m 설치 · 운양역(ID:35650) 광역형 버스정류소 6m(밀폐형) 설치 · 당곡고개(ID:35250) 광역형 버스정류소 9m 설치 -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사업(2차)] 3개소 완료 · 장기역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ID:35513) 광역형 밀폐형 버스정류소 6m 추가 설치 · 힐스테이트 경남아너스빌(ID:35659) 광역형 반 밀폐형 버스정류소 12m 설치 · 수정마을 휴먼시아(ID:35623) 광역형 버스정류소 12m 설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50,000	132,621	-	17,379	이월액포함
2022	-	-	-	-	
2023	240,000	239,414	-	586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eam 김지선	담당자	시설9급 김필석	전화	☎2457
-----	-------	--------------	-----	----------	----	-------

# 버스정류소 위탁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버스정류소 전체
사업규모	버스정류소(쉘터형, 지주형) 1,129개소		
사업목적	- 버스정류장 위탁관리를 통한 이용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버스정류장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1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③ 제2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31,427	164,681	164,681	0	157,673	-7,008	
국비		0	0			0	
도비		0				0	
시비	231,427	164,681	164,681		157,673	-7,008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7,673	
버스정류소 위탁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버스정류소 위탁 운영 : 157,673천원 × 1식 (수선유지비, 일반운영비 등)	= 157,673	

## □ 예산요구 사유

- 쉘터형, 지주형 버스정류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광고물, 노선도 정비 등 정류소 내 환경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 예산증감 사유

- 시 재정여건 반영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일자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전출금 공단 지급
- 2024. 12. : 전출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김포시 관내 버스정류소(셸터형+지주형) 수선유지 및 광고물 정비 : 1,066개소
2022	- 김포시 관내 버스정류소(셸터형+지주형) 수선유지 및 광고물 정비 : 2,982개소
2023	- 김포시 관내 버스정류소(셸터형+지주형) 수선유지 및 광고물 정비 : 5,350개소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89,152	189,152	-	-	
2022	231,427	231,427	-	-	
2023	164,681	164,681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eam장 김지선	담당자	시설9급 김필석	전화	☎2457
-----	-------	---------------	-----	----------	----	-------

#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월곶면 김포대로 2600
사업규모	월곶공영차고지 위탁운영비		
사업목적	공영차고지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차고지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김포시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김포도시공사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89,397	67,045	63,045	4,000	60,803	-2,24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9,397	67,045	63,045	4,000	60,803	-2,242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803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월곶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1식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23,201	
		· 소화기 구입 : 소화기 39,714원*63개	= 2,502	
		· CCTV렌터수수료 : 385천원*12월	= 4,620	
		· 복리후생비(격년 편성) : 240천원*1명	= 240	
		· 전기요금 : 2,520천원*12월	= 30,240	

## □ 예산요구 사유

- 월곶 공영차고지에 대한 공공 시설물 위탁관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 □ 예산증감 사유

- 시 재정여건 반영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일자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전출금 지급
- 2024.12. : 전출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월곶 공영차고지 시설관리 운영 위탁 - 공영차고지 임대관리 : 3개 업체, 79대 임대(코로나19로 인한 단기(월간)주차대수 포함)
2022	- 월곶 공영차고지 시설관리 운영 위탁 - 공영차고지 임대관리 : 5개 업체, 52대 임대(코로나19로 인한 단기(월간)주차대수 포함) - 정비동 지붕도색 및 코킹보수공사 완료
2023	- 월곶 공영차고지 시설관리 운영 위탁 - 공영차고지 임대관리 : 6개 업체, 48대 임대(코로나19로 인한 단기(월간)주차대수 포함)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62,065	60,326	-	1,739	
2022	89,397	89,377		20	
2023	67,045	67,045		0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대중교통과	사업규모	공영차고지 유지관리	본예산 요구액 (천원)	60,803
부기명 (세부사업)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	사업위치	월곶면 김포대로 2600		
위치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임장 김지선	담당자	시설8급 하만수	전화	☎2462
-----	-------	-------------	-----	----------	----	-------

#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6 30.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김포시 이용자수 12,464명		
사업목적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알뜰교통카드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79,800	770,200	651,600	118,600	662,000	10,400	
국비	189,900	385,100	325,800	59,300	331,000	5,200	
도비	56,970	115,530	97,740	17,790	99,300	1,560	
시비	132,930	269,570	228,060	41,510	231,700	3,640	
기타	0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62,000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13,603원*12,464명*6월*62.1%  [월평균지원액*알뜰교통카드이용자수*6월*15회이상 적립률]	= 662,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가내시 반영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24.7.1부터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교통비 환급지원(K-패스)」사업으로 확대전환됨에 따라 기존 1년에서 6개월 사업분으로 축소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6. : 2024년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급
- 2024. 12. : 2024년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 269,121,420원 지급
2022	-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 399,200,000원 지급
2023	-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1,2차 지원 : 561,300,000원 지급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69,602	269,121	-	481	
2022	399,200	399,200	-	-	
2023	651,600	561,300	-	208,900	10.31. 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김은정	전화	5913
-----	-------	------------	-----	----------	----	------

# The 경기패스(국비)

사업기간	2024. 7.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김포시 이용자수 16,553명		
사업목적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마일리지 적립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알뜰교통카드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1,146,000	1,146,000	
국비	0	0	0	0	573,000	573,000	
도비	0	0	0	0	171,900	171,900	
시비	0	0	0	0	401,100	401,100	
기타	0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46,000	
The 경기패스 (국비)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19,562원*16,553명*6월*59.8% [월평균지원액*알뜰교통카드이용자수*6월*21회이상 적립률]	= 1,146,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The 경기패스(국비) 사업 가내시 반영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24.7.1부터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The 경기패스」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신규예산(국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7. ~ 12. : 2024년 The 경기패스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2023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	-	-	-	
2023	-	-	-	-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김은정	전화	5913
-----	-------	------------	-----	----------	----	------

# The 경기패스(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4. 7.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김포시 이용자수 16,553명		
사업목적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마일리지 적립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알뜰교통카드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53,894	53,894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0	0	0	53,894	53,894	
기타	0	0	0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3,894	
The 경기패스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76,992,000원*70%=53,894,400원	= 53,894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The 경기패스(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 가내시 반영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24.7.1부터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The 경기패스」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신규예산(자치단체간부담금)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7. ~ 12. : 2024년 The 경기패스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2023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	-	-	-	
2023	-	-	-	-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김은정	전화	5913
-----	-------	------------	-----	----------	----	------

#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저상버스 51대		
사업목적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제4항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제9조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840,000	4,756,000	4,756,000	0	4,692,000	-64,000	
국비	920,000	2,378,000	2,378,000		2,346,000	-32,000	
도비	138,000	356,700	356,700		351,900	-4,800	
시비	782,000	2,021,300	2,021,300		1,994,100	-27,2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692,000	
저상버스 도입보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대형 : 92,000천원 * 51(대)	= 4,692,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가내시 반영 편성(사업량:51대)
- 2023년부터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해마다 사업규모 점진적 확대

##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도입실적에 따라 다음해 저상버스 도입 사업량 배정받아 51대 물량 확보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4. : '24년도 저상버스 도입 수요조사
- 2023.09. :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4.01.~2024.12 : 저상버스 도입 및 지원(51대)
- 2024.12. :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저상버스 11대 도입(전기버스 6대, CNG버스 5대)
2022	- 저상버스 15대 도입(CNG버스 15대)
2023	- 저상버스 5대 도입(전기버스 5대)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991,848	991,848	-	-	
2022	1,840,000	1,380,000	460,000	-	
2023	5,216,000	460,000	2,116,000	2,64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456
-----	-------	------------	-----	----------	----	------

#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CNG저상버스 73대		
사업목적	연료비·정비비 등 운행비용 일부 보전을 통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제4항
	해당조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 제1항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50,000	275,000	275,000	0	365,000	90,000	
국비		0				0	
도비	50,000	55,000	55,000		73,000	18,000	
시비	200,000	220,000	220,000		292,000	72,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5,000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5,000천원 * 73(대)	= 365,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 가내시 반영 편성(사업량:73대)
-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에 운영비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 CNG저상버스에 운영비 5,000천원/대 지원(폐차, 매각 및 연속 15일 초과 미운행 차량 등 제외)

## □ 예산증감 사유

- '23년도 CNG저상버스 보유대수 기준으로 사업량 배정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8. : '24년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대상 조사
- 2023.09.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4.06. : 상반기 운영비 보조(2,500천원/대)
- 2024.12. : 하반기 운영비 보조(2,500천원/대)
- 2024.12. :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상반기 28대분 × 2,500천원 = 70,000천원 지원 - 하반기 31대분 × 2,500천원 = 77,500천원 지원
2022	- 상반기 39대분 × 2,500천원 = 97,500천원 지원 - 하반기 43대분 × 2,500천원 = 107,500천원 지원
2023	- 상반기 36대분 × 2,500천원 = 90,000천원 지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35,000	147,500	-	87,500	
2022	250,000	205,000	-	45,000	
2023	275,000	90,000	-	185,000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456
-----	-------	------------	-----	----------	----	------

#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공영버스 7대 [선진버스:53번,86-1번/ 서정마을버스:공영쇄암(53-3번),공영학운(53-5번),86번,201번,202번]		
사업목적	교통취약지역의 상시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위한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 제3항
	제5조(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③ 공영버스 운영주체는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공영버스운영결손이 심하여 공영버스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518,644	581,284	560,000	21,284	727,000	167,000	
국비		0				0	
도비	155,593	174,385	168,000	6,385	218,000	50,000	
시비	363,051	406,899	392,000	14,899	509,000	117,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27,000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103,857천원 × 7 대	= 727,000	

##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수단 부족으로 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교통취약지역의 상시 대중교통 수단인 도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금 지급

## □ 예산증감 사유

- 도 공영버스 7개 노선[시내버스: 53번, 86-1번 / 마을버스: 공영쇄암(53-3번), 공영학운(53-5번), 86번, 201번, 202번] 7대 운행에 대한 운송원가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1. : 2024년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
- 2024. 1.~12. : 2024년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
- 2025. 1. : 2024년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사업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도 공영버스 5대 운영손실금 지원(447,897천원)
2022	- 도 공영버스 7대 운영손실금 지원(518,644천원)
2023	- 도 공영버스 7대 운영손실금 지원(290,642천원), 50% 조기집행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47,897	447,897	-	-	
2022	518,644	518,644	-	-	
2023	581,284	290,642	-	290,642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마을버스티eam장 김지선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행정7급 신고운	전화	2456 5917
-----	-------	-----------------------------	-----	----------------------	----	--------------

# 경기도 맞춤형버스 운행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맞춤형버스 5개 노선(김포운수: 1번,4번/선진상운: 3번,7번,8번)		
사업목적	벽·오지 및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요일·시간대별 수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버스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013,000	1,151,000	1,151,000	0	1,138,000	-13,000	
국비		0				0	
도비	506,500	575,500	575,500		569,000	-6,500	
시비	506,500	575,500	575,500		569,000	-6,5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38,000	
경기도 맞춤형버스 운행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맞춤형버스 5개 노선(13대)	= 1,138,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경기도 맞춤형버스 은행 지원사업 가내시 반영 편성(사업량:5개 노선 13대)
-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시설 접근성 개선 및 지역명소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요일·시간대별 수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버스 서비스 제공

##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운행실적을 기준으로 '24년도 경기도 예산 시군 배분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0. : 도비 보조금 내시
- 2024.01.~12. : 맞춤형 버스 운영지원금 교부(도→시) 및 보조금 운수업체 지원
- 2024.12. :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보조사업자 : 김포운수(주), 선진상운(주) - 추진실적 : 맞춤형버스 운영지원금 지급(954,000천원)
2022	- 보조사업자 : 김포운수(주), 선진상운(주) - 추진실적 : 맞춤형버스 운영지원금 지급(1,013,000천원)
2023	- 보조사업자 : 김포운수(주), 선진상운(주) - 추진실적 : 맞춤형버스 운영지원금 1차 가지급(810,000천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954,000	954,000	-	-	
2022	1,013,000	1,013,000	-	-	
2023	1,151,000	810,000	-	341,000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456
-----	-------	------------	-----	----------	----	------

#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전환사업)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운수업체 버스차고지 5개소		
사업목적	버스 전기 충전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 개선을 통한 실질적 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8,858	519,882	519,882	0	32,885	-486,997	
국비		0				0	
도비	14,656	155,965	155,965		9,865	-146,100	
시비	34,202	363,917	363,917		23,020	-340,897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885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307-09 운수업체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포리차고지 휴게시설 개선 840천원 * 1개소</li> <li>○ 양곡차고지 휴게시설 개선 1,400천원 * 1개소</li> <li>○ 이젠차고지 휴게시설 개선 10,440천원 * 1개소</li> <li>○ 걸포차고지 휴게시설 개선 2,100천원 * 1개소</li> <li>○ 구래차고지 휴게시설 개선 18,945천원 * 1개소</li> </ul>	= 840 1,400 10,440 1,260 18,945	

## □ 예산요구 사유

- 운수업체의 운수종사자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수요 제출하여 '24년 경기도 내시 반영
-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 확대 및 개선을 지원하여 실질적 버스 서비스 개선

## □ 예산증감 사유

- 차고지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24년도 수요없어 전년도 대비 사업비 감소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8. : 버스 차고지 인프라 개선사업 수요조사
- 2023.10. : 사업대상 선정 통보 및 도비 보조금 내시
- 2024.01.~12. : 시설개선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운수업체 지급
- 2024.12. :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구래차고지 시설개선 : 전기버스충전, 자동세차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정비 완료 - 대포리차고지 시설개선 : 휴게시설 정비 완료
2022	- 걸포차고지 시설개선 : 자동세차시설 설치 - 대포리/석모리차고지, 이젠/걸포/구래차고지 시설개선 : 휴게시설 정비 완료
2023	- 추진실적 없음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92,700	192,626	-	74	
2022	48,858	48,858	-	-	
2023	519,882	-	-	519,882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김포운수	대포리 차고지 양촌읍 향동로 20		
		양곡 차고지 양촌읍 양곡리 1341		
	선전버스	이젠 차고지 양촌읍 학운리 256-19		
		걸포 차고지 걸포동 1550-62		
		구래 차고지 김포한강3로 611-12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456
-----	-------	------------	-----	----------	----	------

#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전세버스 증차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4개 노선		
사업목적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대중교통 이용객 분산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1,160,000	0	1,160,000	2,328,704	2,328,704	
국비		0				0	
도비		580,000		580,000	698,611	698,611	
시비		580,000		580,000	1,630,093	1,630,093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28,704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전세버스 증차지원	307-09 운수업체보조금	· 70AB번 : 226천원/회 * 32회 * 184일 · 70CD번 : 226천원/회 * 24회 * 184일	= 1,330,688 998,016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전세버스 증차지원사업 내시서 반영예정 (도30, 시70)
- 골드라인 증차전까지(~24.9월) 혼잡률 분산 대책으로 70번 노선에 추가투입되는 전세버스 임차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 공급

##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에는 경기도 예비비 교부받아 분담비 5:5로 편성하였으나, 도:시=3:7로 분담률 변경
-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 전세버스 임차에 따른 운행손실금 증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시내버스 70번 노선 최초 운행개시(5대, 총 30회)
- 2023.04. :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대책으로 70번 운행계통(ABCD) 노선협의 추진
- 2023.05. : 70A·B·C·D번 노선 운행개시
- 2024.01.~12. : 전세버스 증차에 따른 운행손실 보조금 운수업체 지원
- 2024.12. :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추진실적없음
2022	- 추진실적없음
2023	- 보조사업자 : 선진상운(주) - 추진실적 : 4~10월분 운행손실금 지급(822,307천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	-	-	-	
2023	1,160,000	822,307	-	337,693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456
-----	-------	------------	-----	----------	----	------

#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출근 급행버스 운행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선진상운(주)	대표자	신재호
사업목적	주요 역사 인근 아파트 출발 셔틀버스를 도입하여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사업구분	□신규 ■(연례) 반복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템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
	위임규정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923,640	0	923,640	998,016	998,016	
시비		923,640		923,640	998,016	998,016	
자부담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998,016	998,016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출근 급행버스 운행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70C번 : 226천원/회 × 12회 × 184일	= 499,008	499,008		
		· 70D번 : 226천원/회 × 12회 × 184일	= 499,008	499,008		

## □ 예산요구 사유

- 골드라인 증차전까지(~'24.9월) 혼잡률 분산 대책으로 주요역사(고촌역) 인근 아파트출발 출근 급행버스 운영을 위해 전세버스의 임차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 공급

## □ 예산증감 사유

- 70C·D 노선 운영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에 따른 손실금 상승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추진실적없음
2022	○ 추진실적없음
2023	○ 보조사업자 : 선진상운(주) ○ 추진실적 : 운행손실금 554,591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	-	-	-	-	-	-	-	-	
2022	-	-	-	-	-	-	-	-	-	
2023	923,640	923,640	-	554,591	554,591	-	369,049	369,049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456
-----	-------	------------	-----	----------	----	------

# 벽지오지 등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시내버스 운수업체 2개 업체	대표자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자
사업목적	비수익노선의 운행손실금 재정지원을 통해 교통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 반복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템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906,000	1,492,992	857,984	635,008	1,556,305	698,321	
시비	906,000	1,492,992	857,984	635,008	1,556,305	698,321	
자부담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556,305	1,556,305		
벽지오지 등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307-09 운수업체보조금	· 2번 : 45,276천원 * 12개월	= 543,313	543,313		
		· 70번 : 50,000천원 * 12개월	= 600,000	600,000		
		· 90-1번 : 34,416천원 * 12개월	= 412,992	412,992		

## □ 예산요구 사유

- 비수익 노선으로 업체 손실에도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노선에 운행손실을 지원(70%)하여 노선 유지
  - ▷ 2번 : '19년도 노선개편 추진시 반대민원이 많아 현행 노선 유지
  - ▷ 90-1번 : 학운산단 직원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으로 인해 노선연장하여 운행 유지
- 김포골드라인 증차 전 혼잡률 분산 대책으로 도입된 70번 노선의 운행손실 100% 보전

## □ 예산증감 사유

- 지속적인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운송비용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보조사업자 : 관내 버스업체 6개소(김포운수, 선진버스, 선진상운, 월곶운수, 한강교통, 금파산업)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손실보전 800,891천원 지급
2022	○ 보조사업자 : 관내 버스업체 2개소(선진버스, 선진상운)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손실보전 604,211천원 지급
2023	○ 보조사업자 : 관내 버스업체 2개소(선진버스, 선진상운)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손실보전 466,306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1,100,066	1,100,066	-	800,891	800,891	-	299,175	299,175	-	
2022	906,000	906,000	-	604,211	604,211	-	301,789	301,789	-	
2023	1,492,992	1,492,992	-	466,306	466,306	-	1,026,686	1,026,686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456
-----	-------	------------	-----	----------	----	------

# 심야버스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운수(주)	대표자	정종운, 신재호
사업목적	심야시간 운행노선에 대한 손실지원을 통해 주 이용객인 야간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이동수단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템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제2조 제1호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42,059	94,706	94,706	0	94,706	0	
시비	142,059	94,706	94,706		94,706	0	
자부담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94,706	94,706		
심야버스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이음1 : 3,387,500원 * 12개월	= 40,650	40,650		
		· 이음2 : 4,504,660원 * 12개월	= 54,056	54,056		

## □ 예산요구 사유

- 심야시간 운영은 적자발생이 불가피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 손실보상 실시
- 심야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노선에 재정지원 필요

## □ 예산증감 사유

- '23년도 예산과 동일편성
- 지속적인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회당 운송비용은 증가하였으나 노선별 2회→1회 휴업에 따라 월별 운행손실 감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보조사업자 : 김포운수(주) ○ 추진실적 : 이음1, 2번 연간 운행손실금 111,643천원 지원
2022	○ 보조사업자 : 김포운수(주) ○ 추진실적 : 이음1, 2번 연간 운행손실금 71,714천원 지원
2023	○ 보조사업자 : 김포운수(주) ○ 추진실적 : 이음1, 2번 상반기 가지급금 35,674천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161,817	161,817	-	111,643	111,643	-	50,174	50,174	-	
2022	142,059	142,059	-	71,714	71,714	-	70,345	70,345	-	
2023	94,706	94,706	-	35,674	35,674	-	59,032	59,032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456
-----	-------	------------	-----	----------	----	------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18,913명(관내 만13세 이상 ~ 만23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 청소년)		
사업목적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502,020	502,020	0	516,151	14,13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2,020	502,020		516,151	14,131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16,151	
청소년 교통비 지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55,630,000천원(총 사업비) × 30% <sup>1</sup> × 3.09% <sup>2</sup>	= 516,151	

- 1) 총사업비 대비 전체 시군 부담지시율
- 2) '23년 기준 김포시 부담비율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군부담액 반영 편성
- 교통약자인 청소년에게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후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
- 만13세~23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 청소년 대상으로 최대 12만원/연 지원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군부담액 반영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7. ~ 2025. 1. : 2024년 상반기 및 하반기 청소년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급(경기교통공사)
- 2025. 12. : 2024년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1년 상/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급
2022	2022년 상/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급
2023	2023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30,356	530,356	-	-	
2022	301,790	301,790	-	-	
2023	502,020	502,020	-	-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김은정	전화	5913
-----	-------	------------	-----	----------	----	------

#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운송업체 3개, 마을버스 운송업체 11개 업체		
사업목적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송기관의 환승할인금의 일부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조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제3호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869,081	4,741,740	4,741,740	0	4,741,74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869,081	4,741,740	4,741,740		4,741,740	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741,740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260,000,000천원(총 사업비) × 70% <sup>1</sup> × 2.6% <sup>2</sup>	= 4,741,740	

1) 총사업비 대비 전체 시군 부담지시율

2) 환승통행량(경기버스 교통카드 자료), 재정능력(지방세+세외수입) 기준 김포시 분담비율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지원 시군부담액 가내시 반영 편성
- 교통약자수도권통합요금제시행 공동합의문('07)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 전철·시내·마을 버스 간 환승할인으로 인한 운임손실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

##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예산 동일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1. : 2024년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시군부담액 가내시
- 2024.01. :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시→도)
- 2024.01.~12. :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월별 환승할인금 산정 및 지원(도→시→시내마을버스업체)
- 2024.12. :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10개 업체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2022	○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11개 업체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2023	○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11개 업체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조기집행(9월분까지)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441,625	4,441,625	-	-	
2022	3,869,081	3,869,081	-	-	
2023	4,741,740	4,741,740	-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456
-----	-------	------------	-----	----------	----	------

#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운송업체 3개		
사업목적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을 통해 비수익 적자노선 운행 유지 및 버스 다양화·고급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조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제1호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470,381	2,476,764	2,476,764	0	2,278,043	-198,72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70,381	2,476,764	2,476,764		2,278,043	-198,721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78,043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90,006,669천원(총 사업비) × 70% <sup>1</sup> × 3.62% <sup>2</sup>	= 2,278,043	

- 1) 총사업비 대비 전체 시군 부담지시율
- 2) 전체 경기도 인구수 대비 김포시 인구비율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시군부담액 가내시 반영 편성
-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대중교통 수단 제공 및 버스 고급화 추진
- 4개 사업 추진 사업비 포함하여 예산 편성(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시내버스 적자노선지원금, 시내버스 시설개선, 벽지노선 지원)

##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시군 부담지시액 감소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0. : 2024년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비 가내시
- 2024.01. :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시→도)
- 2024.01.~12. : 각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청소년할인결손보전금 지원,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지원, 적지노선지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 추진
2022	○ 청소년할인결손보전금 지원,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지원, 적지노선지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 추진
2023	○ 청소년할인결손보전금 지원,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지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 추진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387,317	2,387,317	-	-	
2022	2,470,381	2,470,381			
2023	2,476,764	2,476,764	-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456
-----	-------	------------	-----	----------	----	------

#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운송업체 3개			
사업목적	시내버스 업체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한 서비스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 발전 및 활성화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해당조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제4호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80,254	283,513	378,000	-94,487	379,646	1,64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80,254	283,513	378,000	-94,487	379,646	1,646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79,646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15,000,000천원(총 사업비) × 70% <sup>1</sup> × 3.62% <sup>2</sup>	= 379,646	

1) 총사업비 대비 전체 시군 부담지시율

2) 전체 경기도 인구수 대비 김포시 인구비율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시군부담액 가내시 반영 편성예정
-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통하여 평가분야별 업체를 6개 등급(A~F)등급으로 상대평가 한 후 항목별 C등급 이상 성과가 있는 업체에 가감항목으로 가감평가 후 재정지원금 산정하여 지원

##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총사업비를 시군 인구수 기준으로 배분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1. : 2024년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비 가내시
- 2024.01. :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시→도)
- 2024.05.~12. : 경영 및 서비스 개선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경기도)
- 2024.12 :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인센티브 지급(도→시→시내버스업체)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금 지급 : 558,771,070원 지원(시내버스업체 3개사)
2022	○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금 지급 : 514,200,310원 지원(시내버스업체 3개사)
2023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시→도)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60,018	360,018	-	-	
2022	380,254	380,254	-	-	
2023	283,513	283,513	-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456
-----	-------	------------	-----	----------	----	------

#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자치단체 부담금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마을버스 11개 업체		
사업목적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발생한 마을버스 운송업자의 결손액 일부 보전을 통해 업체의 경영난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3항
		제94조(재정지원)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해당조례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3항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65,100	68,176	64,662	3,514	79,481	14,81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5,100	68,176	64,662	3,514	79,481	14,819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9,481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83만건 × 1.1(여유율 10%) × 125원 × 부담비율(70%)	= 79,481	

##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발생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결손액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도에서 배분한 부담금을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집행 실적 반영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12. : 분기별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금 산정 및 지원(도→시→마을버스업체)
- 2024. 3. :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시→도)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마을버스 10개 업체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 지급(65,100천원)
2022	- 마을버스 11개 업체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 지급(65,100천원)
2023	- 마을버스 11개 업체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 지급(63,335천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65,100	65,100	-	-	
2022	65,100	65,100	-	-	
2023	63,335	63,335	-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eam장 김지선	담당자	행정7급 신고운	전화	5917
-----	-------	---------------	-----	----------	----	------

#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고촌교통(유) 등 11개 업체	대표자	박봉수 등 13명
사업목적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손실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템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p>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p> <p>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p>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p>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p>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682,835	4,468,032	4,468,032	0	5,234,395	766,363	
시비	3,682,835	4,468,032	4,468,032		5,234,395	766,363	
자부담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4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b>합 계</b>	<b>5,234,395</b>	<b>5,234,395</b>			
		<b>소계</b>	3,541,411	3,541,411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고촌교통 86,412천원*12개월 =	1,036,946	1,036,946		일반 마을 버스	
		· 금파(한강)산업 27,094천원*12개월 =	325,128	325,128			
		· 대진교통 87,852천원*12개월 =	1,054,223	1,054,223			
		· 서정마을버스 93,760천원*12개월 =	1,125,114	1,125,114			
			<b>소계</b>	1,692,984	1,692,984		
		· 마송운수 10,964천원*12개월 =	131,569	131,569		공공 마을 버스	
		· 방주교통 13,547천원*12개월 =	162,564	162,564			
		· 서정마을버스 18,190천원*12개월 =	218,275	218,275			
		· 월곶운수 8,719천원*12개월 =	104,632	104,632			
		· 조강리마을버스 17,380천원*12개월 =	208,559	208,559			
		· 통진교통 30,100천원*12개월 =	361,201	361,201			
		· 하성마을버스 34,169천원*12개월 =	410,026	410,026			
		· 한강교통 8,013천원*12개월 =	96,158	96,158			

## □ 예산요구 사유

- 시내버스가 경유할 수 없는 관내 세부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중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의 손실금 재정 지원

## □ 예산증감 사유

- 표준운송원가(인건비 및 고정비 인상) 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 반영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보조사업자 : 마을버스 9개 업체 - 추진실적 : 2,351,892천원
2022	- 보조사업자 : 마을버스 11개 업체(일반마을버스 : 5개업체/ 18개노선, 공공마을버스 : 8개업체/ 17개노선) - 손실재정지원 : 3,319,456천원(일반마을버스 : 1,853,947천원, 공공마을버스 : 1,465,509천원) - 물품구입 : 649천원
2023	- 보조사업자 : 마을버스 11개 업체(일반마을버스 : 5개업체/ 18개노선, 공공마을버스 : 8개업체/ 17개노선) - 손실재정지원 : 3,097,119천원(일반마을버스 : 1,971,483천원, 공공마을버스 : 1,125,636천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2,585,590	2,585,590	-	2,351,892	2,351,892	-	233,698	233,698	-	
2022	3,682,835	3,682,835	-	3,319,456	3,319,456	-	363,379	363,379	-	
2023	4,468,032	4,468,032	-	3,097,119	3,097,119	-	1,370,913	1,370,913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eam장 김지선	담당자	행정7급 김승훈 행정7급 신고운	전화	2455 5917
-----	-------	---------------	-----	----------------------	----	--------------

# 공공마을버스 구입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한강교통(주), 통진교통	대표자	신영식, 조은호
사업목적	공공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폐차 구입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템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해당조례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41,750	47,250	47,250	0	47,250	0	
시비	141,750	47,250	47,250		47,250	0	
자부담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4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47,250	47,250		
공공마을버스 구입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 대폐차 구입지원 : 23,625천원/대*2대	= 47,250	47,250	-	

## □ 예산요구 사유

- 차량 만료 및 노후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결행에 대비한 대폐차 구입 정액지원(23,625천원/대)으로 공공마을버스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3년도 본예산 사업비 동일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2	- 공공마을버스 대폐차 구입지원 : 6대, 141,750천원
2023	- 공공마을버스 대폐차 구입지원 : 1대, 23,62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2022	141,750	141,750	-	141,750	141,750	-	0	0	-	
2023	47,250	47,250	-	47,250	23,625	-	23,625	23,625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eam장 김지선	담당자	행정7급 신고운	전화	5917
-----	-------	---------------	-----	----------	----	------

# 마을버스 및 벽지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 용역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마을버스(11개 업체) 및 시내버스(3개 업체) 재정지원 노선		
사업목적	경영분석을 통한 마을버스 및 교통취약 노선의 합리적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5조
	제5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2,000	20,000	20,000	0	22,000	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000	20,000	20,000	0	22,000	2,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마을버스 및 벽지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22,000천원*1회	= 22,000	

## □ 예산요구 사유

- 경영분석을 통한 마을버스 및 교통취약 노선의 운송원가 산정하여 합리적 재정지원
- 운송원가를 통한 시 재정지원 규모(지원율, 원가반영 여부) 예측에 활용

## □ 예산증감 사유

- 학술연구용역 산정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원안가결							
일자	2023.11.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3. : 연구용역 계획수립
- 2024. 3. ~ 2024. 8. : 연구용역 사업진행
- 2024. 8. : 결과보고
- 2024. 9. : '24년 운송원가 반영 재정지원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마을버스 및 벽지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시행( 12개업체, 40개 노선)
2022	- 마을버스 및 벽지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시행( 12개업체, 40개 노선)
2023	- 마을버스 및 벽지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시행( 14개업체, 45개 노선)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2,000	18,000	-	4,000	
2022	22,000	18,600	-	3,400	
2023	20,000	20,000	-	0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eam장 김지선	담당자	행정7급 신고운	전화	5917
-----	-------	---------------	-----	----------	----	------

#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신도시)
사업규모	한강이음버스 6대		
사업목적	신도시 교통취약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테마공원 연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500,000	600,000	500,000	100,000	760,000	260,000	
국비	250,000	300,000	250,000	50,000	380,000	130,000	
도비		0				0	
시비	250,000	300,000	250,000	50,000	380,000	13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60,000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201-02 공공운영비	· 한강이음버스 6대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 100,00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한강이음버스 : 55,000천원 * 12개월	= 660,000	

**□ 예산요구 사유**

- 한강이음버스 6대 운행 손실 전액 보조 및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 고정비 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손실지원액 증가
- 차량사고로 인한 종합보험료 상승으로 공공운영비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12. : 한강이음버스 운행손실 및 운영비 지원
  - 2025. 1. :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도시형 교통모델(한강이음버스) 손실재정지원 및 운영비 지원(305,824천원)
2022	- 도시형 교통모델(한강이음버스) 손실재정지원 및 운영비 지원(410,385천원)
2023	- 도시형 교통모델(한강이음버스) 손실재정지원 및 운영비 지원(490,824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984,000	305,824	-	678,176	
2022	500,000	410,385	-	89,615	
2023	600,000	490,824	-	109,17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م장 김지선	담당자	행정7급 신고운	전화	5917
-----	-------	-------------	-----	----------	----	------

# 경기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사업규모	경기도민 900명		
사업목적	- 경기도민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버스 운전자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2(운수종사자 양성 등)
	위임규정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로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운송능력 확보 및 주민에 대한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력양성 및 교육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면허·버스자격 취득, 교육연수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2,593	29,160	32,593	-3,433	51,596	19,00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2,593	29,160	32,593	-3,433	51,596	19,003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1,596	
경기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버스운전자 양성교육(부담금)	51,596	

##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도에 지급,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후 정산
-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개설을 통해 청·장년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운수업체 버스운전자 부족난 해소
- 교육과정 : 15일 120시간(운전기량평가, 버스별 적응, 노선코스 적응 및 후속대응, 서비스 자세 등)

## □ 예산증감 사유

-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부담금 납부(2022년 9월 말 기준 인구 수 502,457명, 부담금 배분비율 3.6%)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3. : 시군부담금 납부
- 2024. 연중 : 교육 이수 후 운전자 취업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사업비 전액 시군부담금으로 도에 납부 (김포시 수료자 수 46명, 취업 인원 26명)
2022	사업비 전액 시군부담금으로 도에 납부 (김포시 수료자 수 17명, 취업 인원 14명)
2023	사업비 전액 시군부담금으로 도에 납부 (김포시 수료자 수 22명, 취업 인원 15명)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0,859	19,571	-	11,288	
2022	32,593	18,895	-	13,698	
2023	29,160	29,160	-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9급 이윤규	전화	5916
-----	-------	------------	-----	----------	----	------

# 운수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교육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관내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사업목적	- 버스 이용 중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교육 필요 -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마인드 개선으로 안전 운전 및 버스 불편 민원 감소 기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법령 위임규정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2,000	10,000	10,000	0	5,000	-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000	10,000	10,000		5,000	-5,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운수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교육	201-03 행사운영비	·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지급 - 강사료: 2시간(최초 1시간 230,000원 + 추가 1시간 120,000원) * 2명 * 4회 - 원고료: A4 1면 12,000원 * 6면 * 2시간 * 2명 - 보조강사료: 1시간당 40,000원 * 2시간 * 2명 - 기타 운영비(현수막·교재·수료증 제작, 다과 구입 등)	= 5,000	

## □ 예산요구 사유

- 운수종사자의 반복적인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등 불편 민원 발생
- 안전 운전, 서비스 마인드 개선 등을 통한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 정착

##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 창작 연극 「슬기로운 기사생활」 실시, 연극업체와 수익계약 체결
-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지급으로 예산 감소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0 : 계획 수립(강사 섭외, 교육 일시 확정, 교육 장소 대관, 운수업체 협조 등)
- 2023.11.~2024. 1. : 교육 장소 대관 및 강사 계약
- 2024 내 : 운수업체 협조, 교육실시 및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운수종사자 서비스 동영상 교육 (코로나19 4단계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영상제작 취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영상을 통한 비대면교육)
2022	○ 운수종사자 서비스 대면 교육 5회 실시, 운수종사자 270명 참석
2023	○ 연극 「슬기로운 기사생활」 2회 실시, 운수종사자 140명 참석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예산액 반납 (비대면 교육)
2022	12,000	5,000	-	7,000	
2023	10,000	9,112	-	888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9급 이윤규	전화	5916
-----	-------	------------	-----	----------	----	------

#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운영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1개 위원회, 28명		
사업목적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정책수립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교통체계 효율성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제18조(수당 등 예산지원) ① 시장은 위촉직 단원과 시민평가단,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의 참고인 등이 기획단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김포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8,800	4,800	4,800	0	4,8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800	4,800	4,800		4,800	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회의수당 : 80,000원×15명×4회	= 4,800	

##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 □ 예산증감 사유

- 증감내역 없음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0.18. : 조례 제정
- 2018.12.11. : 대중교통기획단 위촉 및 정기회의
- 2019.04.02. : 2019년 제1차 정기회의(22번 종점 마곡역 연장 자문사항 및 일반사항 4건)
- 2019.05.29. : 2019년 제2차 정기회의(시내버스 주말 첫차·막차시간 단축 및 일반사항 4건)
- 2019.11.08. : 2019년 제3차 정기회의(김포골드라인 개통 전·후버스 모니터링 자문사항 및 일반사항 4건)
- 2019.12.26. : 2019년 제4차 정기회의(81-1번 일부구간 단축 추진 및 일반사항 2건)
- 2020.08.21. : 2020년 제1차 정기회의(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참여 및 일반사항 3건)
- 2021.04. (코로나19로 서면 개최) : 2021년 제1차 정기회의(김포골드라인 혼잡을 개선대책 및 일반사항 6건)
- 2021.11. (코로나19로 서면 개최) : 2021년 제2차 정기회의(저상버스 도입 및 일반사항 13건)
- 2022.10.25. : 2022년 제1차 정기회의(김포골드라인 증차전 노선버스 활용방안 및 일반사항 3건)
- 2023.05.30. : 2023년 제1차 정기회의(위촉장 수여, 골드라인 혼잡완화 버스수송대책 등 일반사항 4건)
- 2023.10.31. : 2023년 제2차 정기회의(소위원회 구성 계획(안) 등 자문사항 3건)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정기회의 2회 개최 (2021/4월, 11월)
2022	- 정기회의 1회 개최 (2022.10.25.)
2023	- 정기회의 1회 개최 (2023.05.30.)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410	1,350	-	60	
2022	8,800	1,753	-	7,047	
2023	4,800	2,320	-	2,480	10.31. 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김명주	전화	5912
-----	-------	------------	-----	----------	----	------

#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20명		
사업목적	대중교통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승차환경 정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제14조(시민평가단 구성) ①기획단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 및 철도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2. 시내버스·마을버스·철도의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 3. 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철도 이용 만족도 조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3,000	3,000	0	2,400	-6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	3,000		2,400	-6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	301-13 사회성과보상금	· 교통비 : 30,000원 × 20명 × 4월	= 2,400	

## □ 예산요구 사유

-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시민평가단원이 관내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친절성·안전성·쾌적성을 평가함으로써 대중교통 운행실태 자료 확보
- 평가결과에 대해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행정지도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승차환경 조성

##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 예산액에서 사무관리비 600,000원 감액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2024. 2. : 2024년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계획 수립
- 2024. 2. ~ 3. : 시민평가단 모집·위촉·교육
- 2024. 4. ~ 5. / 9. ~ 10. : 상하반기 시민평가단 운영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중지
2022	시민평가단 모집·위촉 후 상하반기 평가
2023	시민평가단 모집·위촉 후 상하반기 평가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0	0	0	0	
2022	3,000	1,745	0	1,255	
2023	3,000	1,367	0	1,634	10.31. 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김은정	전화	5913
-----	-------	------------	-----	----------	----	------

#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광역버스 9개 노선		
사업목적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광위 준공영제 운영비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664,550	2,240,000	1,575,000	665,000	2,520,000	94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664,550	2,240,000	1,575,000	665,000	2,520,000	945,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20,000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9개 노선 x 800,000천원 x 35% (분담비율 : 국 50%, 도 15%, 시 35%)	= 2,520,000	

## □ 예산요구 사유

-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광위 준공영제 운영비 지원

## □ 예산증감 사유

- 내시서의 노선별 산출기초 5억→8억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으로 위탁사업비 자체예산(부담지시액) 내시 반영하여 예산 편성(국50, 도15 별도)
- '23년도 이관노선 1004번(김포운수) 1개 노선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 1004번 버스 이관 협의
- 2024. :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재정지원 교부금 지급(시->경기교통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490,000천원
2022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1,008,699천원
2023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3,155,85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90,000	490,000	-	-	
2022	2,664,550	1,008,699	1,655,851	-	
2023	3,895,851	3,155,851	-	74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8급 도우리	전화	5931
-----	-------	------------	-----	----------	----	------

#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9개 노선		
사업목적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 운영하여 운수종사자 근무개선 및 운행손실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2,317,346	4,973,280	4,973,280	0	6,644,426	1,671,14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317,346	4,973,280	4,973,280		6,644,426	1,671,146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644,426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경기도 공공버스 9개 노선 (시 분담율 노선별 50~70%)	= 6,644,426	

## □ 예산요구 사유

-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 마련

## □ 예산증감 사유

- '24년 1월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신규사업 1개 노선 추가(8407번, 안양 경유노선)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으로 위탁사업비 자체예산(부담지시액) 편성하여 사업 지원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8. :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확정내시 (수정)
- 2024. 01.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33-1, 2000, 388)
- 2024. 01. ~ 2024. 12. : 경기교통공사 사업비 지급(경기교통공사 → 운수업체)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경기 공공버스 운행손실 지원 : 위탁사업비 9,868,767천원 지급
2022	○ 경기 공공버스 운행손실 지원 : 위탁사업비 12,317,346천원 지급
2023	○ 경기 공공버스 운행손실 지원 : 위탁사업비 4,973,280천원 지급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9,868,767	9,868,767	-	-	
2022	12,317,346	12,317,346	-	-	
2023	4,973,280	4,973,280	-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8급 도우리	전화	5931
-----	-------	------------	-----	----------	----	------

#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수요응답형 버스 15대		
사업목적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운행 효율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p>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p> <p>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p> <p>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p>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1,800,000	0	1,800,000	2,283,600	2,283,600	
국비		0				0	
도비		900,000		90,0000	685,080	685,080	
시비		900,000		90,0000	1,598,520	1,598,52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83,600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도 부담비 685,080천원 (분담비율 도 30%)	= 685,080	
		· 시 부담비 1,598,520천원 (분담비율 시 70%)	= 1,598,520	

## □ 예산요구 사유

- 수요응답형 버스의 도입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대중교통 부족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사업량 감소(30대→15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4. 26. : 운송사업자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모집 공고
- 2023. 5. 18.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3. 6. 27. : 고촌읍 톡버스 개통식 개최 및 시범운행 개시
- 2023. 8. 21. : 품무출근 톡버스 개통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집행실적 없음
2022	집행실적 없음
2023	운수사업자 6,7월 손실지원금 지급 176,913,580천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2023	1,800,000	176,913	361,543	1,623,086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8급 도우리	전화	5931
-----	-------	------------	-----	----------	----	------

# 수요응답형 버스(DRT)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4. 1. ~ 2024.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톡버스 15대		
사업목적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안정적인 재정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1조
	해당조례	경기도 톡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고객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톡버스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톡버스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위탁) ① 도지사는 톡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및 제12조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102,510	102,510	
국비		0				0	
도비		0			30,753	30,753	
시비	0	0	0	0	71,757	71,757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102,510</b>	
수요응답형 버스(DRT)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도 부담비 30,753천원 (분담비율 시 70%)	= 30,753	
		· 시 부담비 71,757천원 (분담비율 도 30%)	= 71,757	

## □ 예산요구 사유

- 김포톡버스의 운송비용 정산, CS센터 운영 등 재정지원에 관한 업무 위탁 비용 지급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톡버스 CS센터 운영을 경기교통공사에 대행하여 운영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특버스 통합 재정지원 및 CS센터 운영 시작(경기교통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8급 도우리	전화	5931
-----	-------	------------	-----	----------	----	------

# 대중교통 정책사업 홍보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현수막, 전단지, 신청서 등		
사업목적	각종 대중교통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 1항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1,150	14,000	7,000	7,000	15,000	8,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150	14,000	7,000	7,000	15,000	8,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대중교통 정책사업 홍보비	201-01 사무관리비	· 버스 정책 업무 홍보물 제작 : 9,000,000원 · 이음택시 홍보물 및 서식 제작 : 1,000,000원 · 택시 시책 홍보물 및 서식 제작 : 1,500,000원 · 밤샘주차 단속계도 홍보비 : 1,000,000원 · 택시 승차장 신설 및 이전 홍보비 : 500,000원 · 공공마을버스 홍보비 : 2,000,000원	= 9,000 = 1,000 = 1,500 = 1,000 = 500 = 2,000	

## □ 예산요구 사유

○ 대중교통 사업에 대한 각종 서식 및 사업 홍보를 위한 포스터·현수막 등 제작을 통한 사업 활성화 기대

## □ 예산증감 사유

○ 새로운 신규사업 및 홍보 증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12.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920,000원
2022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11,150,000원
2023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14,00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000	2,920	-	2,080	
2022	11,150	11,150	-	0	
2023	14,000	14,000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8급 도우리	전화	5931
		마을버스티eam장 김지선		행정7급 신고운		5915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행정7급 김유진		5554

#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업무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밤샘주차 단속원 피복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스마트폰 3대 운영비		
사업목적	최신 스마트폰 기반의 '스마트 기반 밤샘주차단속시스템' 이용 및 단속원 피복비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 단속 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6,360	6,240	6,240	0	6,720	4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360	6,240	6,240		6,720	48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720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밤샘주차 단속원 피복비 : 240,000원*2명	= 480	
	201-02 공공운영비	· 스마트폰 통신 요금: 33,340원*3EA*12월 · 밤샘주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 420,000원*12월	= 1,200 = 5,040	

## □ 예산요구 사유

- 밤샘주차 단속원(현장 근무자) 단속복 필요
- 밤샘주차 단속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및 스마트폰 통신비 편성 필요

## □ 예산증감 사유

- 단속원 피복비 신규 편성에 따른 증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12. : 사업 집행 및 실적 보고, 단속원 단속복 구입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스마트 밤샘주차 시스템 운영 외 단속용 스마트폰 요금(3대) : 5,297,700원
2022	- 스마트 밤샘주차 시스템 운영 외 단속용 스마트폰 요금(3대) : 6,340,000원
2023	- 스마트 밤샘주차 시스템 운영 외 단속용 스마트폰 요금(3대) : 5,553,580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6,004	5,297	-	707	
2022	6,360	6,340	-	20	
2023	6,240	5,554	-	686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7급 김유진	전화	5554
-----	-------	------------	-----	----------	----	------

# 버스 비상수송대책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전세버스 12대		
사업목적	매년 반복되는 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수립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6,000	6,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6,000	6,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버스 비상수송대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500,000원/대 * 12대	= 6,000	

## □ 예산요구 사유

- 매년 반복되는 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수립을 위해 버스정류장과 김포골드라인 주요 역사를 연결하는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수단 공급 안정성 확보
- 버스 비상수송대책 추진을 위한 계약금 등 초기 투입비용 발생에 대비

## □ 예산증감 사유

- 파업과 같은 비상상황에 따라 예비비 등이 필요하나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비상수속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본예산시 편성하고자 함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0. : 경기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속대책 추진
- 2024. : 경기도 시내버스 파업상황 발생 시 전세버스 투입 섭외·계약  
임시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기록 확인 후 전세버스 임차료 지급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추진실적없음
2022	○ 추진실적없음
2023	○ 추진실적없음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	-	-	-	
2023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7급 한선영	전화	2456
-----	-------	------------	-----	----------	----	------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29,378명('23년 8월 말 초승 승객수)		
사업목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부담금 납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 2조	
	제2조(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3,014,887	3,014,88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3,014,887	3,014,887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14,887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시군 부담금 ※분담비율 : 도 30%, 시군 70%	= 3,014,887	

##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 2개 노선(도 주관, 388,33-1)에 재정지원

##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공공관리제 2027년 전면시행 예정이며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1.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해당없음	-	-	-	
2022	해당없음	-	-	-	
2023	해당없음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8급 도우리	전화	5931
-----	-------	------------	-----	----------	----	------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12대		
사업목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2,331,838	2,331,838	
국비		0				0	
도비		0			699,551	699,551	
시비		0			1,632,287	1,632,287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31,838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 2,331,838	

##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도비 내시서 반영(도30%, 시70%)
- 위탁사업자(경기교통공사)에 위탁사업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공공관리제 2027년 전면시행 예정이며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
-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 공기관에 위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1.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해당없음	-	-	-	
2022	해당없음	-	-	-	
2023	해당없음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	담당자	행정8급 도우리	전화	5931
-----	-------	------------	-----	----------	----	------

---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

건설도로과



# 마곡~시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기간	2007. 1. ~ 2026. 12.	사업위치	하성면 마곡리 ~ 시암리 일원
사업규모	L=6.5km, B=15.0m(2차로) (후평교 구간: L=249m(국사천 교량 40m))		
사업목적	협소한 도로를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제13조
	제9조(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486,000	2,521,430	2,521,430	0	1,660,570	-860,860	
국비	2,440,000	1,765,000	1,765,000		1,623,000	-142,000	
도비	0	0				0	
시비	1,046,000	756,430	756,430		37,570	-718,860	
기타	0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60,570	
마곡~시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L=249m (국사천 교량 : 40m)	= 1,558,570	
	401-02 감리비	· 감리비 : L=249m (국사천 교량 : 40m)	= 102,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국사천 교량구간 공사 준공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국사천 교량구간 공사 준공을 위한 소요 사업비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	-	-	-
일자	2015.11.	2006.1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7. 1.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07.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09. 6. : 노선지정 [김포시 공고 제2009-643호]
- 2009. 7. : 보상착수
- 2016. 5. : 노선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2017. 7. ~ 2020. 6. : 1구간(마곡~석탄,2.5km) 공사추진
- 2020. 11. : 후평교 교량구간 보완설계(L=249m) 착수
- 2021. 12. : 2구간 보완설계 착수
- 2022. 2. : 후평교 교량구간 보상 착수
- 2023. 4. : 후평교 교량구간 공사 착공
- 2023. 12. : 2구간 보완설계 준공
- 2024. 3. : 후평교 교량구간 공사 준공
- 2026. 12. : 전구간 공사 완료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43,500,000</b>	<b>41,433,430</b>	<b>1,660,570</b>	<b>1,660,570</b>	<b>0</b>	<b>406,000</b>	
공 정 별	설계비	654,960	654,960	0			
	보상비	21,836,040	21,836,040	0			
	공사비	20,422,000	18,457,430	1,558,570	1,558,570	406,000	
	감리비	572,000	470,000	102,000	102,000		
	부대비	15,000	15,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보완설계(국사천 교량구간) 용역 추진
2022	- 국사천 교량 구간 보상 착수(보상율100%)
2023	- 국사천 교량 구간 공사 착공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266,236	71,313	1,194,923		
2022	4,680,924	1,459,155	3,221,769		
2023	5,743,199	1,365,841	4,377,358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6.5km, B=15.0m(2차로) (후평교 구간 : L=249m(곡사천 교량 4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660,570
부기명 (세부사업)	마곡~시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마곡리 ~ 시암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9급 이승철	전화	2438
-----	-------	-------------	-----	----------	----	------

#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기간	2017. 11. ~ 2025. 12.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 원산리 일원
사업규모	L=3.1km, B=20m(4차로)		
사업목적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구간과 연결되는 시도12호선의 확장을 통한 IC건설 여건 마련으로 교통량 분산 및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260,000	1,500,000	0	1,500,000	6,065,000	6,065,000	
국비		0				0	
도비	1,260,000	0				0	
시비	3,000,000	1,500,000		1,500,000	6,065,000	6,065,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65,000	
시도12호선 (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3.1km, B=20m(4차로)	= 6,065,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편성
- 2024년 상반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완료에 따른 보상액 지급을 위한 보상비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보상비, 공사비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일자	2017.11.	2017.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2. : 도로구역 결정 및 손실보상계획 공고
- 2022. 4. : 토지 분할 및 보상 착수
- 2022. 12.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3. 3. : 협의보상 개시
- 2023. 6.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4. 상반기. : 공사 착공
- 2025. 12. : 공사 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40,000,000</b>	<b>11,670,000</b>	<b>19,000,000</b>	<b>6,065,000</b>	<b>12,935,000</b>	<b>9,330,000</b>	
공 정 별	설계비	800,000	800,000	0			
	보상비	19,700,000	9,090,000	10,610,000	6,065,000	4,545,000	
	공사비	18,000,000	1,260,000	8,390,000		8,390,000	8,350,000
	감리비	1,400,000	500,000	0			900,000
	부대비	100,000	20,000	0			80,00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2022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보상 착수
2023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보상 진행 중(보상률 40%)

### ○ 최근3년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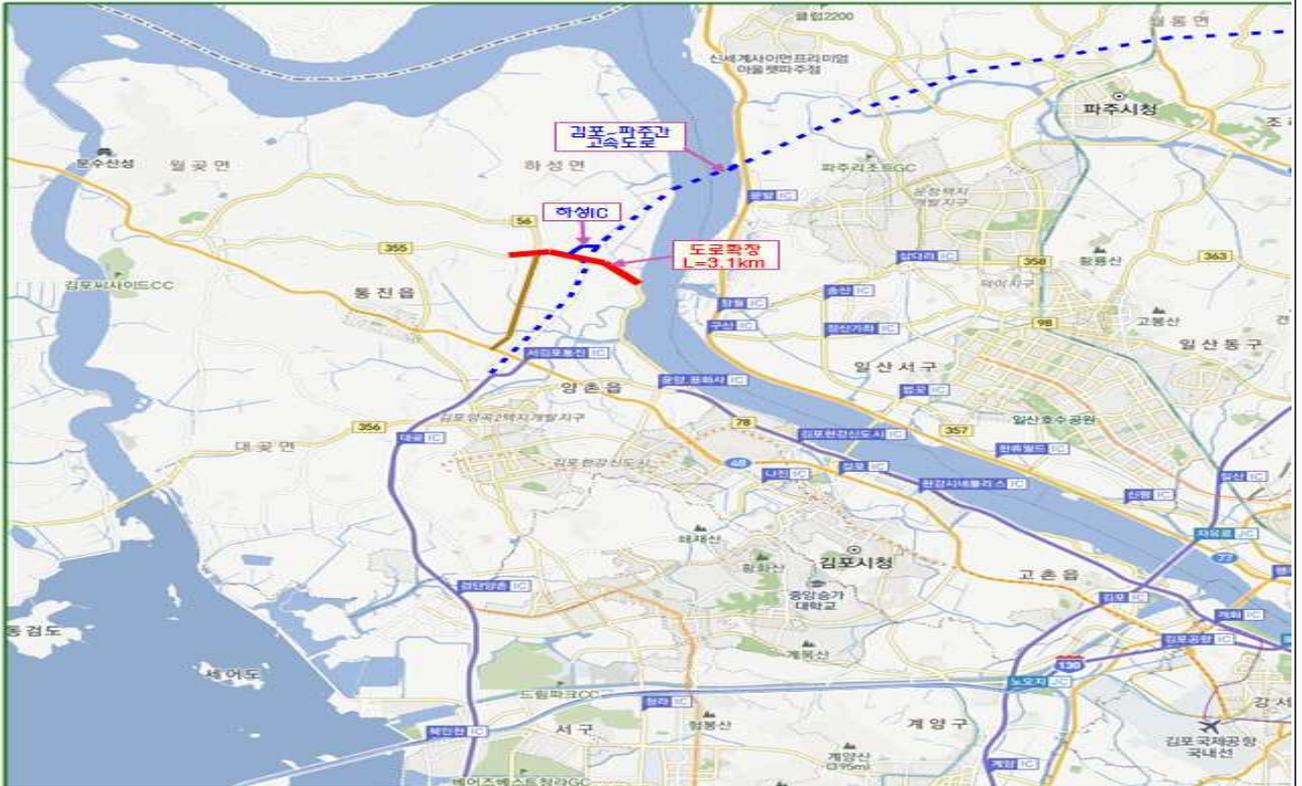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452,405	32,521	5,419,884		
2022	9,679,884	350,754	9,329,130		
2023	10,829,130	7,614,940	3,214,190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3.1km, B=20m(4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6,065,000
부기명 (세부사업)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 원산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9급 이승철	전화	2438
-----	-------	-------------	-----	----------	----	------

# 애기봉~태산패밀리파크간 경관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6. 12.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 양택리
사업규모	L=3.5km, B=12m(2차로)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활성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제13조
	제9조(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625,000	500,000	500,000	0	1,600,000	1,100,000	
국비	500,000	400,000	400,000		1,280,000	880,000	
도비		0				0	
시비	125,000	100,000	100,000		320,000	22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00	
애기봉~태산 패밀리파크간 경관도로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3.5km, B=12m(4차로)	= 1,600,000	

## □ 예산요구 사유

-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토지분할 측량 완료 후 토지보상을 위한 소요예산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상반기 도로 편입토지 보상액 지급을 위한 보상비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증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5.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12.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 6. : 기본 및 설계용역 착수
- 2022. 3. ~ :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2022. 12. :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관련 주민 공람
- 2023. 10. : 관계기관 재협의(군사협의 심의의견에 따른 보완 심의)
- 2024. 1. : 노선 지정 공고 및 토지분할 측량(감정평가 병행)
- 2024. 6. : 공사착공
- 2026. 12. : 공사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24,550,000</b>	<b>3,675,000</b>	<b>1,600,000</b>	<b>1,600,000</b>	<b>0</b>	<b>19,275,000</b>	
공 정 별	설계비	1,000,000	1,000,000	0			
	보상비	7,485,000	2,660,000	1,600,000		3,225,000	
	공사비	15,400,000		0		15,400,000	
	감리비	650,000		0		650,000	
	부대비	15,000	15,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계기관 협의 추진
202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계기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설계VE 등) 협의 추진
2023	- 관계기관 재협의(군사협의 심의의견에 따른 보완)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280,690	281,829	1,998,861		
2022	2,623,861	63,354	2,560,507		
2023	1,517,212	-	1,517,212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3.5km, B=12m(2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1,6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애기봉 ~ 태산패밀리파크간 경관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 양택리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윤상민	전화	2437
-----	-------	-------------	-----	----------	----	------

# 영사정IC 건설사업

사업기간	2015. 5. ~ 2027. 12.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리 일원(김포한강로)
사업규모	연결램프 2개소 설치 (L=2,038m, B=8.1m)		
사업목적	영사정IC 건설을 통해 김포한강로와 수도권제1순환선의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연결로 설치로 국도48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신곡사거리의 만성적 교통정체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00,000	2,640,000	2,030,000	610,000	500,000	-1,53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00	2,640,000	2,030,000	610,000	500,000	-1,53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0	
영사정IC 건설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2,038m, B=8.1m	= 500,000	

## □ 예산요구 사유

- '23년 하반기 고속국도 도로구역 결정 예정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보상비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설계완료 및 도로구역결정에 따라 공사 등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7.11.	2017.6.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5. 5. : 영사정 하이패스IC 선정
- 2017. 9. : 협약체결(김포시↔한국도로공사)
- 2019. 6. : 영사정 하이패스IC 타당성평가 용역 완료
- 2020.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21. 12. : 영사정IC(무료화) 도로 연결 변경허가 승인(국토부→김포시)
- 2022. 12. : 변경 협약 체결(김포시↔한국도로공사)
- 2023.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한국도로공사)
- 2023. 12. : 고속국도 도로구역 결정(국토부)
- 2024. 2. : 보상 착수 및 공사 착공
- 2027. 12. : 공사 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31,500,000</b>	<b>3,690,000</b>	<b>10,000,000</b>	<b>500,000</b>	<b>9,500,000</b>	<b>17,810,000</b>	
공 정 별	설계비	1,160,000	1,160,000	0		0	
	보상비	5,300,000	2,020,000	3,000,000	500,000	2,500,000	280,000
	공사비	23,210,000	0	6,500,000		6,500,000	16,710,000
	감리비	1,800,000	500,000	500,000		500,000	800,000
	부대비	30,000	10,000	0			20,00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2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사업추진계획 변경(무료화 운영) 협약 체결
202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도로구역결정 고시, 보상착수 등

### ○ 최근3년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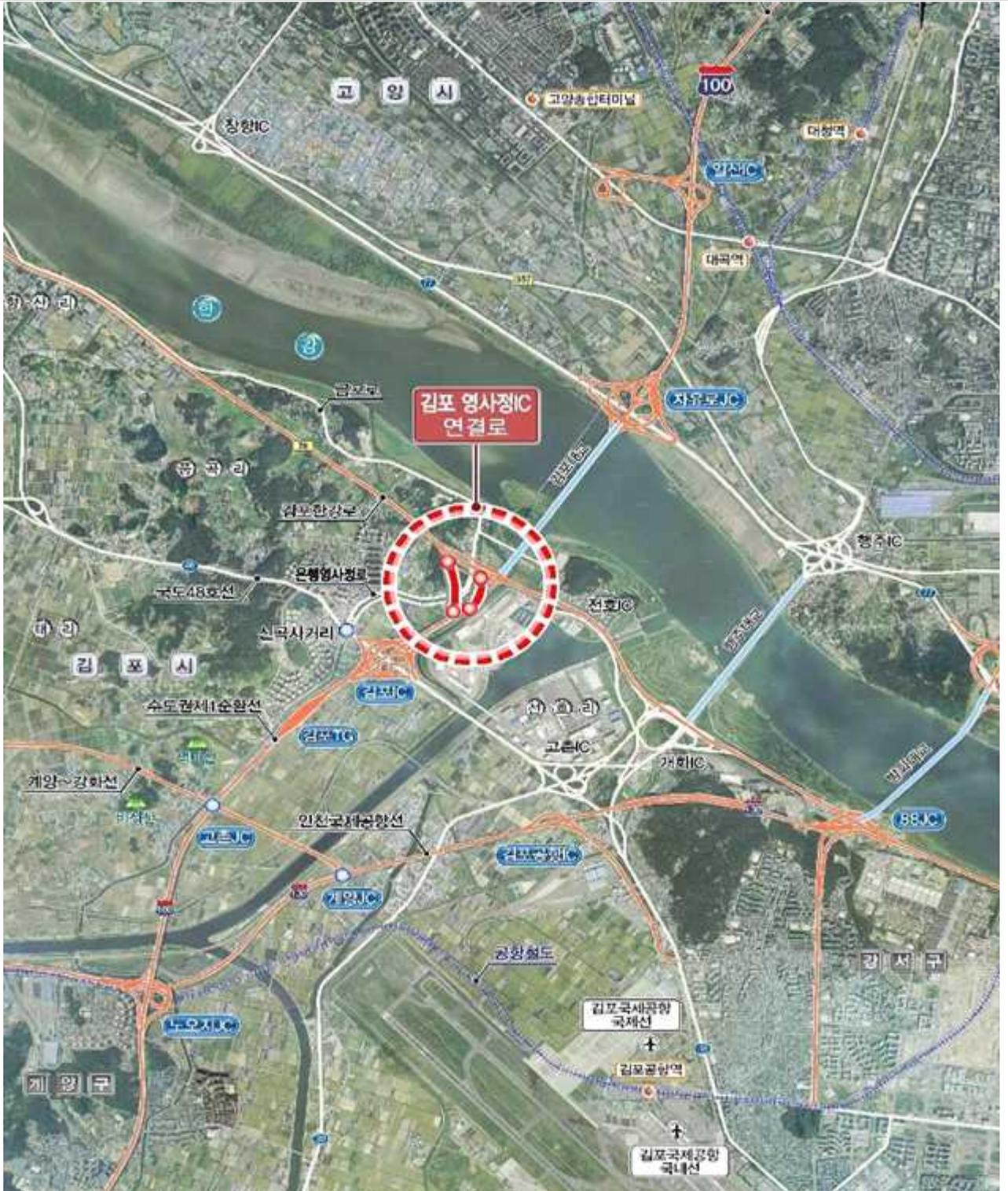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2022	300,000	300,000	-		
2023	2,640,000	112,904	2,527,096		10.31. 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연결램프 2개소 설치 (L=2,038m, B=8.1m)	본예산 요구액 (천원)	5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영사정IC 건설사업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리 일원(김포한강로)		

위치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모상훈	전화	2436
-----	-------	-------------	-----	----------	----	------

# 월곶 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8. 6. ~ 2024. 6.	사업위치	월곶면 군하로 158-2 일원
사업규모	L=0.95km, B=25m, 교량 1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사업목적	월곶면 갈산사거리 인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상태 향상이 발생하여 도로확장을 통한 도로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가압의 물류비용 절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인가) 제96조(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500,000	7,340,000	4,740,000	2,600,000	1,200,000	-3,54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500,000	7,340,000	4,740,000	2,600,000	1,200,000	-3,54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00	
월곶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도로개설(L=0.95km, B=25m), 교량 1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 1,200,000	

## □ 예산요구 사유

○ 본 사업은 갈산~군하간 교통정체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확장사업(2차로→4차로) 추진

## □ 예산증감 사유

○ 추가 실정보고 사항 반영 및 관급자재 비용 증가, 잔여 토지보상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7.12.	2020.11. (재심사)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9.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7.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6.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0. 9. : 보상 착수
- 2020. 11. : 투자(재)심사 예산(총사업비) 변경
- 2021. 2. : 실시계획인가(변경) 완료
- 2021. 4. : 공사 착공
- 2023. 4. : 부대공사 착수(통신, 전기)
- 2024. 4. : 군하교 개설
- 2024. 6. : 공사 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23,300,000</b>	<b>22,100,000</b>	<b>1,200,000</b>	<b>1,200,00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230,000	230,000	0			
	보상비	6,300,000	6,300,000	0			
	공사비	16,040,000	14,840,000	1,200,000	1,200,000		
	감리비	700,000	700,000	0			
	부대비	30,000	30,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공사 착공
2022	-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추진(국도48호선 갈산사거리 일원)
2023	- 부대공사 착수(통신, 전기)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9,152,389	5,673,487	3,478,902		
2022	7,978,902	4,096,556	3,882,346		
2023	11,222,345	5,153,718	6,068,627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95km, B=25m, 교량 1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1,2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월곶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군하로 158-2 일원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8급 전용후	전화	2138
-----	-------	-------------	-----	----------	----	------

# 시도 미지급용지 보상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도로구간 편입용지, 도로사용료		
사업목적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00,000	400,000	350,000	50,000	270,000	-8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00	400,000	350,000	50,000	270,000	-8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0,000	
시도 미지급용지 보상	401-01 시설비	· 소송 확정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 · 도로 편입용지 보상	= 270,000	

## □ 예산요구 사유

- 법정도로 및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등) 관련 도로사용료 또는 손실보상금 지급
- 기시행된 공익사업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의 손실보상금 지급

## □ 예산증감 사유

- 매년 점진적인 소송(패소)의 증가로 도로사용료 지급액 증가
- 도시지역 증가로 인한 토지 매매가액 상승으로 손실보상금(도로사용료) 지급액 증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6. : 상반기 도로사용료 지급, 토지 감정평가 및 매입 등
- 2024. 7. ~ 12. : 하반기 도로사용료 지급, 토지 감정평가 및 매입 등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 금210,760천원(4필지, 579㎡), 도로사용료 금125,504천원, 수수료 등
2022	-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 금180,858천원(3필지, 367㎡), 도로사용료 금112,613천원, 수수료 등
2023	-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 금273,510천원(6필지, 260㎡), 도로사용료 금34,569천원, 수수료 등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50,000	341,458	-	8,542	
2022	300,000	296,951	-	3,049	
2023	400,000	348,003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보상팀장 채민석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433
-----	-------	------------	-----	----------	----	------

#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
사업규모	연 4회		
사업목적	관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설계 또는 용역에 대한 단계별 설계 자문 및 심의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18조 1항 제16조
	-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8조(수당 등) 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16조(수당과 여비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720	2,720	2,720	0	2,72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720	2,720	2,720		2,720	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2,720</b>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김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수당 : 80,000원*5명*2회 ·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 80,000원*12명*2회	= 800 = 1,920	

##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따른 자문·심의 수당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심의 수당

##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2024. 12. :

- 1) 김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2회 개최(연중)
- 2)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심의 件 접수에 따른 회의 개최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2회) -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1회)
2022	-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3회) -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1회)
2023	- 김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1회) -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4회)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720	1,240	-	1,480	
2022	2,720	1,400	-	1,320	
2023	2,720	1,440	-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장 이순묵	담당자	행정7급 박선영	전화	2770
-----	-------	------------	-----	----------	----	------

# 해강안 일주도로(월곶중로3-8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6. 12.	사업위치	월곶면 성동리 ~ 용강리 일원
사업규모	L=5.9km, B=12m(2차로)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2,042,500	1,812,500	1,812,500	0	1,946,250	133,750	
국비	9,634,000	1,450,000	1,450,000		1,557,000	107,000	
도비		0				0	
시비	2,408,500	362,500	362,500		389,250	26,75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46,250	
해강안 일주도로 (월곶중로3-8호선)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5.9km, B=12m(2차로)	= 1,696,250	
	401-02 감리비	· 감리비 : L=5.9km, B=12m(2차로)	= 250,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상반기 보상 착수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예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 및 감리비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편입 토지 보상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소요 사업비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2. : 도로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019. 8.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20.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1구간)
- 2020. 8. : '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국비지원사업)
- 2022. 1.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1구간)
- 2022. 2. : 실시계획인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 2023. 1. : 실시계획인가
- 2023. 2. : 토지분할 측량 실시
- 2023. 4. : 금개구리 포획·이주 용역 착수
- 2023. 12. :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착수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2024. 상반기. : 보상 착수
- 2026. 12. : 공사 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38,000,000</b>	<b>16,700,000</b>	<b>1,946,250</b>	<b>1,946,250</b>	<b>0</b>	<b>19,353,750</b>	
공 정 별	설계비	1,300,000	1,300,000	0			
	보상비	13,600,000	8,875,000	1,696,250	1,696,250	3,028,750	
	공사비	22,200,000	6,280,000	0		15,920,000	
	감리비	850,000	200,000	250,000	250,000	400,000	
	부대비	50,000	45,000	0		5,00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관련 관계기관 협의
20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시계획 인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2023	- 실시계획인가, 토지분할 측량, 금개구리 포획·이주 용역 착수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32,985	70,056	1,962,929		
2022	14,005,429	208,870	13,796,559		
2023	15,609,059	297,441	15,311,618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5.9km, B=12m(2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1,946,250
부기명 (세부사업)	해강안 일주도로 (월곶중로3-8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성동리 ~ 용강리 일원		

위치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모상훈	전화	2436
-----	-------	-------------	-----	----------	----	------

#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6. 12.	사업위치	월곶면 고막리 ~ 용강리 일원
사업규모	L=4.2km, B=12m(4차로)		
사업목적	도로개설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1,000,000	1,0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000,000	1,00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0	
시도22호선 (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4.2km, B=12m(4차로)	= 1,000,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3년도 편성된 예산 범위 내 토지분할 측량 완료 예정(기 편성 예산 전액 소진 예정)
- 고막지구 사업개발자 등 도로개설 신속 진행을 요청 민원(고막지구 사업승인 및 기반시설 관련)
- 사업구간 내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기허가(신고)를 득한 사용인들의 개발행위 전 보상 실시 필요

## □ 예산증감 사유

- 도로구역결정 및 토지분할 완료에 따라 보상 등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3.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3. : 투자심사 완료
- 2019.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3.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3. 7. : 토지분할 측량 의뢰
- 2024. 3.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및 보상 착수
- 2024. 10. : 공사 착공
- 2026. 12. : 공사 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19,500,000</b>	<b>810,000</b>	<b>8,195,000</b>	<b>1,000,000</b>	<b>7,195,000</b>	<b>10,495,000</b>	
공 정 별	설계비	600,000	600,000	0			
	보상비	6,490,000	195,000	5,500,000	1,000,000	4,500,000	795,000
	공사비	11,900,000	0	2,500,000		2,500,000	9,400,000
	감리비	495,000	0	195,000		195,000	300,000
	부대비	15,000	15,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2022	- 도로구역 결정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중
2023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및 토지분할측량 추진 중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32,020	15,088	416,932		
2022	416,932	215,884	201,048		
2023	201,048	-	201,048		10.31. 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4.2km, B=12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시도22호선(고막리~용강) 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고막리 ~ 용강리 일원		

위치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윤상민	전화	2437
-----	-------	-------------	-----	----------	----	------

# 김포 도시계획도로(대로3-7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20. 6. ~ 2024. 7.	사업위치	김포시 감정로 109 일원
사업규모	L=0.12km, B=15m		
사업목적	감정동과 검단신도시 연결 구간으로 지역 간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로개설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30,000	0	0	0	550,000	5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30,000	0			550,000	55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50,000	
김포 도시계획도로 (대로3-7호선)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도로개설 L=0.12km, B=15	= 550,000	

## □ 예산요구 사유

- 감정5지구 및 인천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감정동~검단신도시 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차량 정체 등 불편 예상
-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지역간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속한 공사 추진

## □ 예산증감 사유

- 감정5지구와 검단신도시 연결 구간으로 2024년 7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적기에 도로 사업을 추진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	-	-	-
일자	2019.11.	2020.2.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 2. : 투자심사
- 2020.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5. : 실시계획인가
- 2022. 4. : 보상착수
- 2024. 1. : 공사착공
- 2024. 7. : 공사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3,180,000</b>	<b>2,630,000</b>	<b>550,000</b>	<b>550,00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50,000	50,000	0			
	보상비	2,570,000	2,570,000	0			
	공사비	560,000	10,000	550,000	55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2	- 보상착수
2023	- 보상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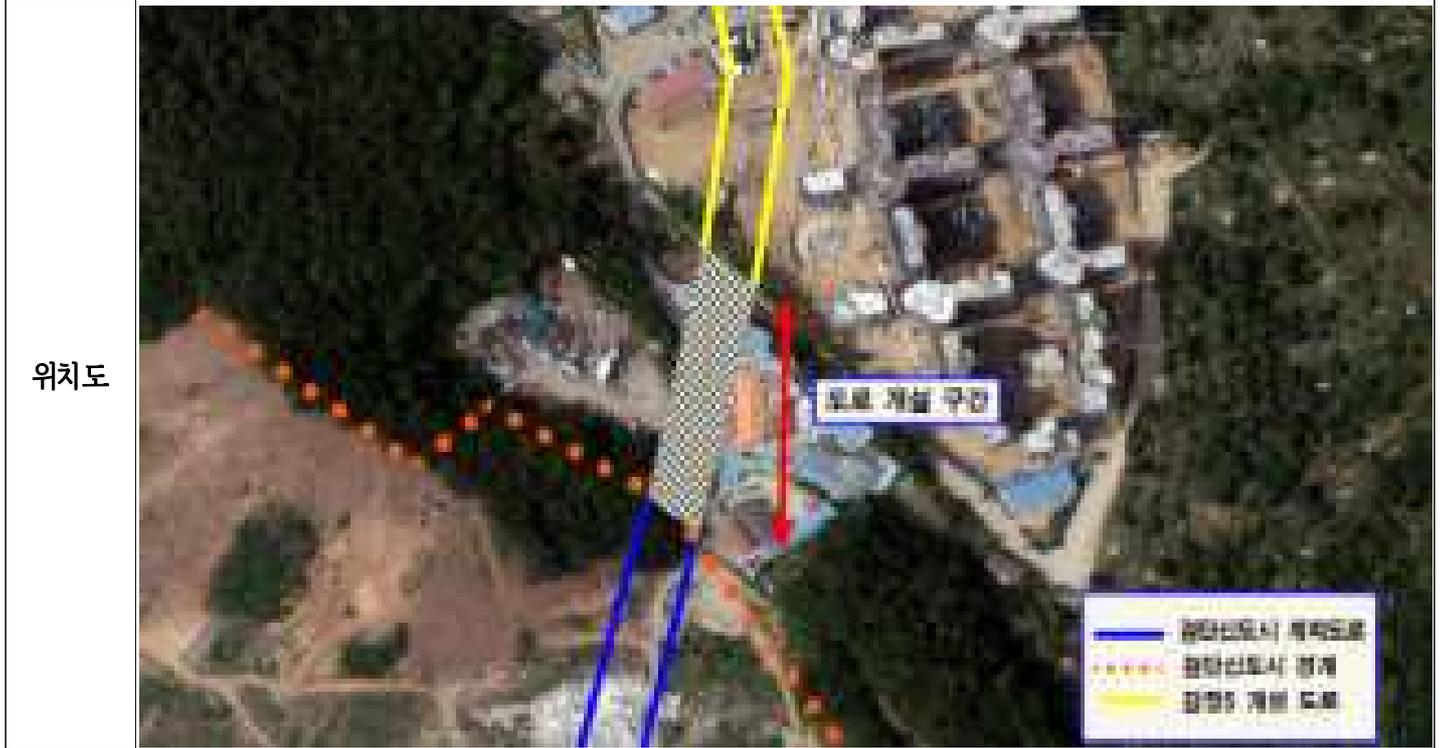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297,252	30,610	2,266,642		
2022	2,596,642	1,028,444	1,568,198		
2023	1,568,198	609,663	958,474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12km, B=15m	본예산 요구액 (천원)	550,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도시계획도로 (대로3-7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김포시 감정동 631-20번지 일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9급 차수진	전화	2458
-----	-------	-------------	-----	----------	----	------

#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측량 약 50회, 물품[홍보물(단속, 계도, 안내) 등] 제작·구입 등		
사업목적	유류재산 및 무단점유된 국·공유재산을 보존·보호하고 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②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 제17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53,000	63,100	53,000	10,100	53,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3,000	63,100	53,000	10,100	53,000	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3,000	
국·공유재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측량 수수료 : 1,000,000원*50회 · 국·공유재산 관리 물품 제작 및 구입 - 홍보물(무단점유 방지 및 해소) 제작 : 1,000,000원 - 현장 관리·점검 안전용품 및 물품 구입 : 2,000,000원	= 53,000	

**□ 예산요구 사유**

- 국·공유재산을 보호·보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 이에 따른 유휴재산 및 무단점유재산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경계, 현황)측량 등 비용 발생
-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점검하기 위한 홍보물(현수막 등) 제작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확인을 위한 지적(경계 및 현황)측량 실시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점검을 위한 물품 구입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등의 민원으로 인한 지적(경계 및 현황)측량 실시 및 현수막 제작(35건)
2022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등의 민원으로 인한 지적(경계 및 현황)측량 실시 및 현수막 제작(37건)
2023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등의 민원으로 인한 지적(경계 및 현황)측량 실시 및 현수막 제작(30건), 소유권 이전등기(140필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1,425	43,506	-	7,919	
2022	53,000	51,419	-	1,581	
2023	63,100	31,365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장 이순묵	담당자	시설8급 조민경 시설9급 고정호	전화	2427 2428
-----	-------	------------	-----	----------------------	----	--------------

#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저수지 및 양수장
사업규모	저수지 및 양수장 유지관리		
사업목적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유지관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32,922	263,392	262,412	980	243,420	-18,99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32,922	263,392	262,412	980	243,420	-18,992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243,420</b>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저수지 유지관리 인부임(환경정화 및 불법낙시 단속) - 기본급 : 11,210원*7시간*2명*16일*8월=20,089,000원 - 유급휴일수당 : 11,210원*5.6시간*2명*45일=5,650,000원 - 명절휴가수당 : 350,000원*2명*1회=700,000원 - 4대보험료 : 13,220,000원*2명*14%=3,702,000원	= 30,141	
		· 쇄암대명 배수갑문 유지관리 인부임(배수갑문의 개폐 및 시설 유지관리) - 기본급 : 11,210원*8시간*2명*80일=14,349,000원 - 유급휴일수당 : 11,210원*6.4시간*2명*29일=4,162,000원 - 4대보험료 : 9,256,000원*2명*14%=2,592,000원	= 21,103	
		· 포내·약암 양수장유지관리 인부임 - 기본급 : 11,210원*3시간*4명*177일=23,811,000원 - 유급휴일수당 : 11,210원*3시간*4명*25일=3,363,000원 - 4대보험료 : 5,952,750원*4명*14%=3,334,000원	= 30,508	
		· 포내양수장 보안관리 : 132,000원*12월 · 약암양수장 보안관리 : 132,000원*12월 · 저수지 유지관리 장비임차 : 3,000,000원*6개소 ·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 1,750,000원*2개소	= 1,584 = 1,584 = 18,000 = 3,500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기반시설 공공요금 : 9,500,000원*6개월	= 57,000	
201-02 공공운영비	· 양수장-저수지-관정 유지관리 : 80,000,000원*1식	= 80,000		

**□ 예산요구 사유**

- 양수장 및 저수지 시설노후화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결 및 안전한 유지관리
- 농업생산기반시설(양수장, 저수지, 관정)의 전기사용료 및 통신료 납부

**□ 예산증감 사유**

- 농업생산기반시설(양수장, 저수지, 관정)의 공공요금 기본료 상승에 따른 예산 요구
- 농어촌공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예산 요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12. : 저수지, 양수장 및 관정 전기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 포내·약암양수장 보안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양수장 유지보수(하무양수장 외 3개소), 대벽저류지 철조망 설치공사, 조강저수지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포내·약암 양수장 및 대명·쇄암배수갑문 위탁관리, 공공운영비 집행
2022	- 양수장 유지보수(고막양수장 외 7개소), 대벽저류지 철조망 보강공사, 양택저수지 준설공사, 포내·약암양수장 및 위탁관리, 공공운영비 집행
2023	- 송미양수장 유지보수(수중펌프, 전기공사), 포내양수장 유지보수(전기공사), 시암리 수문 교체공사, 걸포동 4-34번지 일원 농수로 준설공사, 공공운영비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86,468	160,857	10,000	15,611	
2022	242,922	202,679	-	40,243	
2023	263,392	165,368	-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본예산 요구액 (천원)	243,420
부기명 (세부사업)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김상민	담당자	시설9급 안호영	전화	2429
-----	-------	------------	-----	----------	----	------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소규모 마을 및 농업 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등) 유지관리		
사업목적	노후 및 파손된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제10조
	-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380,000	1,380,000	730,000	650,000	1,335,000	60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80,000	1,380,000	730,000	650,000	1,335,000	605,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1,335,000</b>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 : 30,000,000원*1식 = 30,000 · 합동설계 운영비 = 5,000 - 특근매식비 : 8,000원*16명*10일 = 1,280,000원 - 벤치마킹비 : 186,000원*20명*2일 = 3,720,000원		
	401-01 시설비	·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공사 : 800,000원*1식 = 800,000 ·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 500,000원*1식 = 500,000 - 토공, 관로공, 부대공 등		

##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및 파손된 농업기반시설을 유지보수하여 농업생산력 증대
- 열악한 마을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
- 합동설계 및 벤치마킹을 통한 담당자 시공경험 및 업무능력 향상 기대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추진예정사업(농로정비, 마을기반시설 정비) 증가로 인한 예산증액
- 읍면동 합동설계 관련 특근매식비, 벤치마킹 등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2. :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설계
- 2024. 1. :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 착공
- 2024. 12. :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 준공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시암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소규모사업 15건
2022	-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83건 - 용·배수로정비 2건 -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5건 - 구거 수초목제거 및 준설작업 6건
2023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116건 - 용·배수로정비 및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건 - 구거 수초목제거 및 준설작업 8건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100,000	633,079	407,442	59,478	
2022	1,787,442	1,562,950	-	224,492	
2023	1,380,000	823,396	-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소규모 마을 및 농업기반시설 (농로, 용배수로 등) 유지관리	본예산 요구액 (천원)	1,335,000
부기명 (세부사업)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김상민	담당자	시설9급 조영훈	전화	2459
-----	-------	------------	-----	----------	----	------

#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제3종 시설물(비법정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목적	제3종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50,000	180,000	180,000	0	154,000	-26,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000	180,000	180,000		154,000	-26,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154,000</b>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 25,000원*2회 · 제3종 시설물(교량) 보수공사 : 104,000,000원*1식 - 표면보수 및 난간재설치 등 정비(13개소)	= 50,000 = 104,000	

## □ 예산요구 사유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마을길 내 교량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안전상태 판정 용역 필요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마을길 내 교량의 내구성 저하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공사 실시

## □ 예산증감 사유

- 제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 집행을 위한 공사비 확보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1) 정기안전점검 용역
  - 2024. 1. ~ 12. :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실시
- 2) 제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
  - 2023. 7. ~ 10. : 실시설계용역
  - 2023. 11. : 2023년 제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 착공
  - 2023. 12. : 2023년 제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 준공
  - 2024. 1. : 2024년 제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 착공
  - 2024. 4. : 2024년 제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 준공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간척3교 외 1개소 보수 - 간척1교 철거
2022	- 제3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 (구)황금교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 간척1교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 - 거물대 교차로 교량 보수공사
2023	- 제3종시설물(교량)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 제3종시설물(교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구)황금교 철거공사 - 제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

### ○ 최근3년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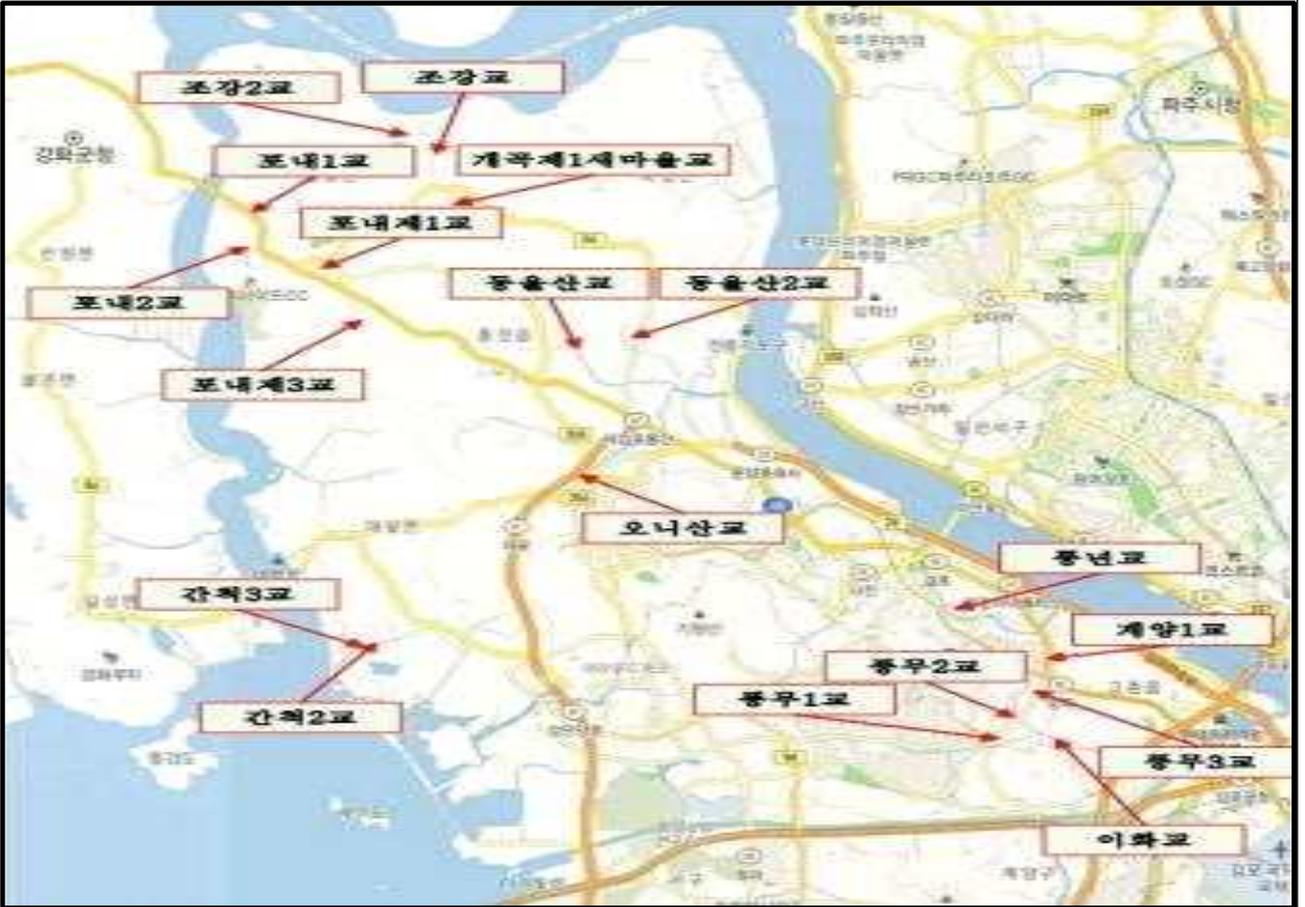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70,000	321,520	148,480	148,480	
2022	198,480	137,131	50,000	11,349	
2023	230,000	120,921	-		10.31.기준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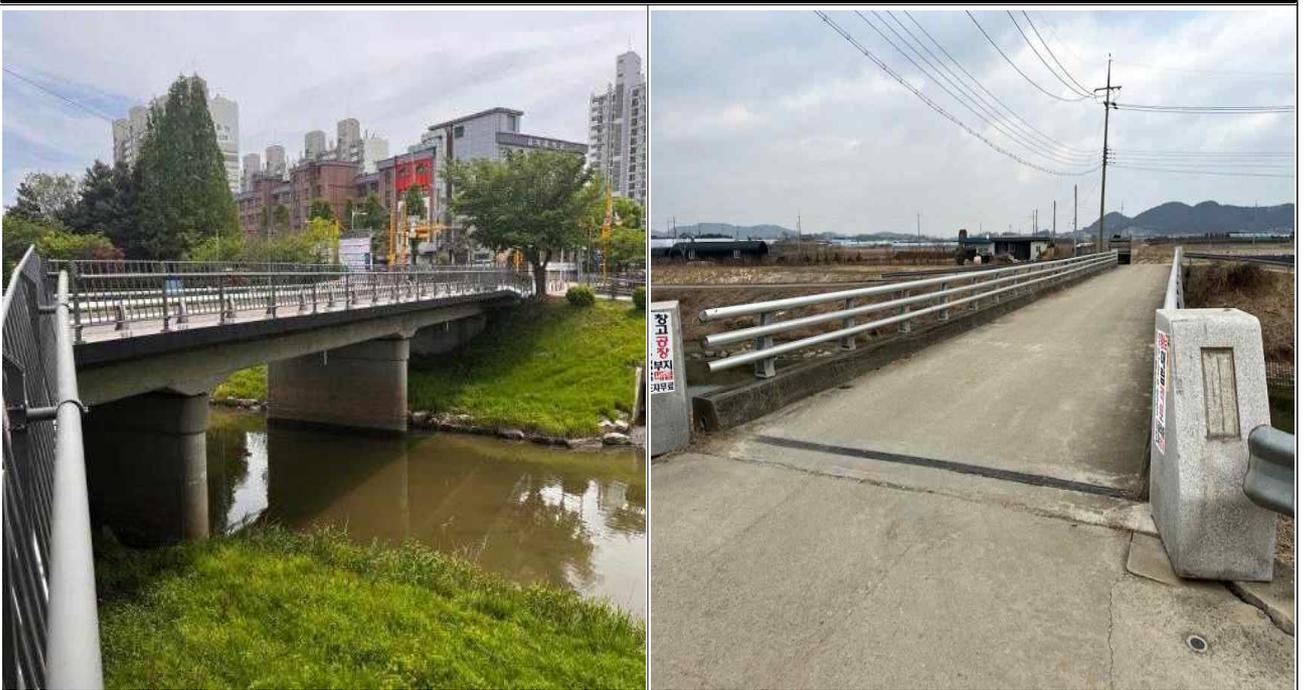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제3종 시설물(비법정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본예산 요구액 (천원)	154,000
부기명 (세부사업)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김상민	담당자	시설9급 조영훈	전화	2459
-----	-------	------------	-----	----------	----	------

# 마을회관 관리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목적	마을회관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숙원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지원대상)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통·리(이하 "통·리"이라 한다) 단위로 형성된 지역의 마을회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99,150	356,000	356,000	0	109,000	-247,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99,150	356,000	356,000		109,000	-247,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109,000</b>	
마을회관 관리	401-01 시설비	· 마을회관 유지관리 - 양택2리 마을회관 보수(건물누수보수) : 4,000,000원*1식	= 4,000	
	402-01 민간자본보조	· 마을회관 관리 - 도사2리 마을회관 보수(건물누수보수) : 16,210,000원*1식 - 수침1리 마을회관 보수(건물누수보수) : 22,000,000원*1식 - 전호1리 마을회관 보수(건물누수보수) : 8,000,000원*1식 - 전호2리 마을회관 보수(건물누수보수) : 6,500,000원*1식 - 양곡4리 마을회관 보수(지붕설치) : 10,450,000원*1식 - 신안1리 마을회관 보수(건물누수, 샷시교체) : 19,840,000원*1식 - 고막1리 마을회관 보수(건물누수, 형광등교체) : 22,000,000원*1식	= 105,000	

## □ 예산요구 사유

○ 마을회관 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복지 및 정주의식을 증진시키고자 함

## □ 예산증감 사유

○ 건물의 노후화로 보수가 시급한 마을회관에 한하여 공사비 확보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반영	-	-	-	-	-	-
일자	2023.11.	-	-	2023.11.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6. ~ 8. : 2024년도 마을회관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 2024. 1. : 공사착공
- 2024. 12. : 공사준공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보수공사 : 도사6리 마을회관 외 11개소
2022	- 재건축공사 : 시암2리 마을회관 - 보수공사 : 동을산2리 마을회관 외 6개소
2023	- 증축공사 : 대벽1리 마을회관 - 보수공사 : 구래5리 마을회관 외 6개소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93,000	130,403	-	62,597	
2022	299,150	299,067	-	83	
2023	356,000	237,754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마을회관 유지관리	본예산 요구액 (천원)	109,000
부기명 (세부사업)	마을회관 관리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김상민	담당자	시설8급 전호연	전화	2447
-----	-------	------------	-----	----------	----	------

# 약암방조제 보수공사

사업기간	2022. 5. ~ 2024. 7.	사업위치	대곶면 약암리 437-176번지 일원
사업규모	피복석 돌붙임 등 호안공 1식(L=1.5km)		
사업목적	약암방조제 유실구간 보수로 제방기능 유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방조제 관리법」 및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2호
	- 「방조제 관리법」 제6조(방조제의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5조(관리대행자) 2.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밖에 있는 경우 : 그 농경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150,000	2,200,000	2,200,000	0	100,000	-2,1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150,000	2,200,000	2,200,000		100,000	-2,10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약암방조제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 공사비 - 피복석 돌붙임 등 호안공(L=1.5km)	= 100,000	

## □ 예산요구 사유

-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점검결과 약암방조제의 약1.5km 구간에 사석유실 및 지반침하가 확인되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며, 제방 손실 시 염수유입으로 인한 피해, 군사시설물 파손 등 재산·안보상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바 시급한 사업추진 필요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으로 약암방조제 유실구간 보수 공사비 확보 필요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	-	-	-
일자	2023.11.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5. ~ 2023. 1. : 실시설계용역
- 2023. 6. : 공사착공
- 2024. 7. : 공사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4,450,000</b>	<b>4,350,000</b>	<b>100,000</b>	<b>100,00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250,000	250,000	0			
	보상비	0		0			
	공사비	4,200,000	4,100,000	100,000	1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실시설계용역 착수('22. 5월)
2023	- 실시설계용역 준공('23. 1월) - 공사 착공('23. 6월)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2022	2,150,000	87,862	2,062,138		
2023	4,262,138	1,988,527	2,273,611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피복석 돌붙임 등 호안공 1식(L=1.5k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약암방조제 보수공사	사업위치	대곶면 약암리 437-176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김상민	담당자	시설8급 전호연	전화	2447
-----	-------	------------	-----	----------	----	------

# 수리시설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4. 1. ~ 2024. 5.	사업위치	대곶면 약암리 813번지 일원
사업규모	배수로 정비(L=620m)		
사업목적	기존 흙수로에 수로관 신설을 통한 통수능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촌정비법」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1,200,000	1,200,000	0	280,000	-920,000	
국비		0				0	
도비		240,000	240,000		56,000	-184,000	
시비		960,000	960,000		224,000	-736,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80,000	
수리시설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비(배수로 L=620m)	= 17,000	
		· 공사비(배수로 L=620m)	= 263,000	

## □ 예산요구 사유

- 대곶면 약암리 813번지 일원 약암지구 내 일부 구간이 흙수로로 조성되어있어 배수 기능 저하로 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금회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배수로 기능을 회복하여 통수능을 개선하고자 함

## □ 예산증감 사유

- 수리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확보 필요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2024. 2. : 실시설계용역
- 2024. 3. : 공사착공
- 2024. 5. : 공사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A+B+E)	기투자(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E)	비고
			계(B=C+D)	본예산(C)	추경(D)		
계	280,000	0	280,000	280,000	0	0	
공정별	설계비	17,000	17,000	17,000			
	보상비	0	0				
	공사비	263,000	263,000	263,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용수로 정비(L=145m), 배수로 정비(L=1,190m)
2022	- 배수로 정비(L=1,144m)
2023	- 용수로 정비(L=5.6km)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574,000	1,574,000	-		
2022	890,000	890,000	-		
2023	1,200,000	621,892	578,108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배수로 정비 (L=62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280,000
부기명 (세부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약암리 813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김상민	담당자	시설9급 안호영	전화	2429
-----	-------	------------	-----	----------	----	------

# 후평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사업기간	2023. 1. ~ 2025. 12.	사업위치	하성면 후평리 846번지 일원
사업규모	용배수로 정비(L=6.7km), 양수장 정비(3개소)		
사업목적	파손된 용배수로 정비 및 양수장 설치를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공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1,423,750	1,423,750	0	2,576,250	1,152,500	
국비		1,139,000	1,139,000		2,061,000	922,000	
도비		0				0	
시비		284,750	284,750		515,250	230,5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2,576,250</b>	
후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용배수로 정비(L=6.7km), 양수장 정비(3개소)	= 2,576,250	

## □ 예산요구 사유

- 하성면 후평리 일대 농경지는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말단부 수혜구역으로 양수장 등 수원공 시설이 부족하고 평야부(용배수로)가 노후되어 상습가뭄 피해, 농업용수 손실 등 주민들의 민원 제기 및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국비지원으로 용수원 확보 및 용배수로 정비 등 안정적인 영농 기반시설구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 하반기 설계 준공으로 후평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공사비 확보 필요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8. :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
- 2023. 1. ~ 2023. 9. : 실시설계용역
- 2023. 11. : 공사착공
- 2025. 12. : 사업완료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4,000,000</b>	<b>1,423,750</b>	<b>2,576,250</b>	<b>2,576,25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131,000	131,000	0			
	보상비	0		0			
	공사비	3,869,000	1,292,750	2,576,250	2,576,25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22. 8월)
2023	- 실시설계용역 완료('23.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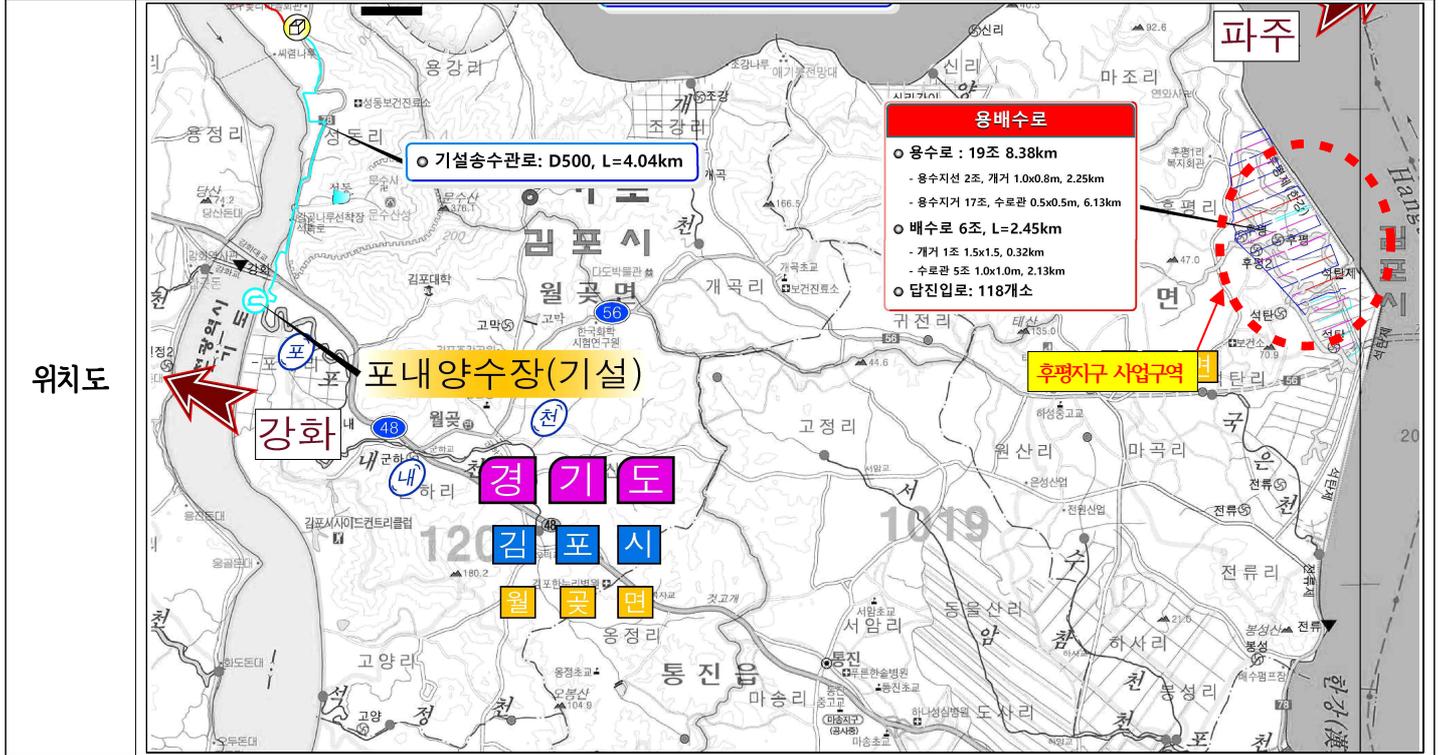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2022	-	-	-		
2023	1,423,750	151,073	1,272,677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용배수로 정비(L=6.7km), 양수장 정비(3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2,576,250
부기명 (세부사업)	후평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후평리 846번지 일원	본예산 요구액 (천원)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김상민	담당자	시설9급 조영훈	전화	2459
-----	-------	------------	-----	----------	----	------

# 누산~마근포간 도로확포장공사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02. 3. ~ 2024. 12.		사업위치	양촌읍 누산리 ~ 하성면 양택리		
사업규모	L=6.9km, B=21.0m(4차로) (하사교 구간 : L=340m, B=19.5m)					
사업목적	지역간 연결 도로망 확충 및 균형적인 지역 발전 도모, 도로 확포장을 통한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72,372,000	70,682,774	1,689,226	2,128,000	1,293,275	2,523,951			
국비									
도비									
시비	72,372,000	70,682,774	1,689,226	2,128,000	1,293,275	2,523,951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5.11.	2009.10.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4. : 3구간(누산~마곡, L=3.9km) 공사 타절준공(L=340m 미시행)
- 2021. 6. : 공사 미시행구간 보완설계 용역 착수
- 2021. 12. : 공사 미시행구간 보완설계 용역 준공
- 2022. 4. : 공사(하사교일원, L=340m) 착공
- 2023. 12. : 공사 준공
- 2024. 12. : 확정측량 및 지적정리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74,500,000</b>	<b>74,500,000</b>	<b>0</b>	<b>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400,000	400,000	0			
	보상비	46,967,000	46,967,000	0			
	공사비	26,895,000	26,895,000	0			
	감리비	190,000	190,000	0			
	부대비	48,000	48,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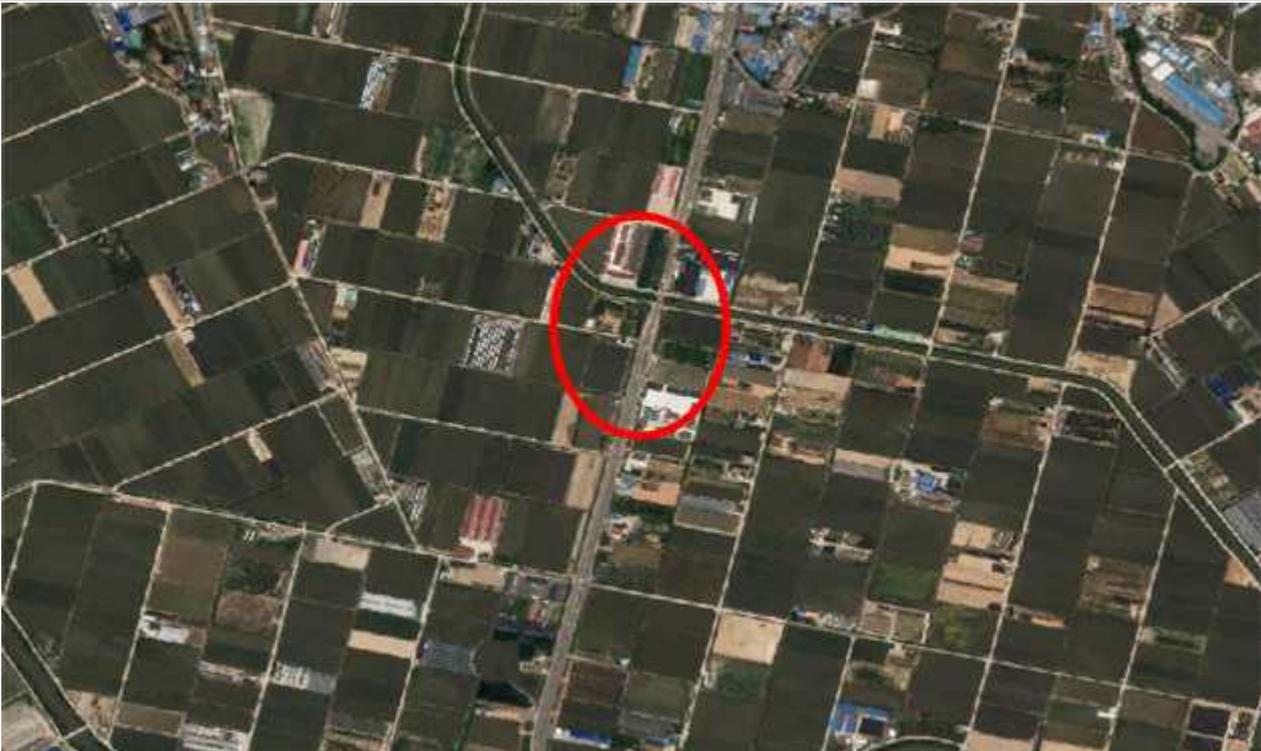
2021	- 누산~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보완) 용역 완료
2022	- 2022. 4월 공사 착공 (공정률 22%)
2023	- 공사 중 (공정률 8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675,531	49,708	625,823		
2022	4,625,823	2,936,597	1,689,226		
2023	3,817,226	1,293,275	2,523,951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6.9km, B=21.0m(4차로) (하사교 구간 : L=340m, B=19.5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누산~마근포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위치	양촌읍 누산리 ~ 하성면 양택리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윤상민	전화	2437
-----	-------	-------------	-----	----------	----	------

# 마곡~시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07. 1. ~ 2026. 12.	사업위치	하성면 마곡리 ~ 시암리 일원
사업규모	L=6.5km, B=15.0m(2차로) (후평교 구간 : L=249m(국사천 교량 40m))		
사업목적	협소한 도로를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제13조
	제9조(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38,912,000	35,690,231	3,221,769	2,521,430	1,365,841	4,377,358	1,660,570	1,660,570	
국비	26,656,000	24,694,484	1,961,516	1,765,000	998,839	2,727,677	1,623,000	1,623,000	
도비	3,952,000	3,952,000	-						
시비	8,304,000	7,043,747	1,260,253	756,430	367,002	1,649,681	37,570	37,57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1,660,570	
마곡~시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L=249m (국사천 교량 : 40m)	= 1,558,570	
	401-02 감리비	· 감리비 : L=249m (국사천 교량 : 40m)	= 102,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국사천 교량구간 공사 준공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국사천 교량구간 공사 준공을 위한 소요 사업비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	-	-	-
일자	2015.11.	2006.1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7. 1.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07.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09. 6. : 노선지정 [김포시 공고 제2009-643호]
- 2009. 7. : 보상착수
- 2016. 5. : 노선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2017. 7. ~ 2020. 6. : 1구간(마곡~석탄,2.5km) 공사추진
- 2020. 11. : 후평교 교량구간 보완설계(L=249m) 착수
- 2021. 12. : 2구간 보완설계 착수
- 2022. 2. : 후평교 교량구간 보상 착수
- 2023. 4. : 후평교 교량구간 공사 착공
- 2023. 12. : 2구간 보완설계 준공
- 2024. 3. : 후평교 교량구간 공사 준공
- 2026. 12. : 전구간 공사 완료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43,500,000</b>	<b>41,433,430</b>	<b>1,660,570</b>	<b>1,660,570</b>	<b>0</b>	<b>406,000</b>	
공 정 별	설계비	654,960	654,960	0			
	보상비	21,836,040	21,836,040	0			
	공사비	20,422,000	18,457,430	1,558,570	1,558,570	406,000	
	감리비	572,000	470,000	102,000	102,000		
	부대비	15,000	15,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보완설계(국사천 교량구간) 용역 추진
2022	- 국사천 교량 구간 보상 착수(보상율100%)
2023	- 국사천 교량 구간 공사 착공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266,236	71,313	1,194,923		
2022	4,680,924	1,459,155	3,221,769		
2023	5,743,199	1,365,841	4,377,358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6.5km, B=15.0m(2차로) (후평교 구간 : L=249m(쿠사천 교량 4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660,570
부기명 (세부사업)	마곡~시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마곡리 ~ 시암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9급 이승철	전화	2438
-----	-------	-------------	-----	----------	----	------

# 인천거침도~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7. 1. ~ 2026. 12.		사업위치	인천 서구 거침도 ~ 대곶면 약암리 일원		
사업규모	L=6.4km, B=20m(4차로)					
사업목적	대곶면 약암리와 인천시 서구를 연결하는 도로확장을 통해 교통불편 해소 및 원활한 물류수송 기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로법」			제3조의2 및 제5조 / 제25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도로개설 관련 추진계획) - 「도로법」 제25조 (도로개설 관련 도로구역결정)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6,190,000	4,774,840	11,415,160	2,830,000	2,832,904	11,412,256			
국비									
도비	2,400,000		2,400,000			2,400,000			
시비	13,790,000	4,774,840	9,015,160	2,830,000	2,832,904	9,012,256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	-	-	-
일자	2018.7.	2017.10.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 :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 반영 및 광역도로 지정(6.4km, 4차로)
- 2017. 10. : 사업시행 업무 협약 (김포시↔인천시)
- 2018.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9. 5. : 기본 설계 완료
- 2020. 3. : 도로구역 변경(안) 주민공람
- 2021. 7. : 시도23호선 노선(변경) 지정 고시
- 2021. 12. : 공사 착공(인천구간)
- 2022. 10. : 시도23호선 도로구역(변경) 결정
- 2023. 12. :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 2026.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9,020,000	19,020,000	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0	0				
	보상비	19,010,000	19,010,000	0			
	공사비	0	0	0			
	감리비	0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도로구역(변경) 결정 관련 협의
2022	- 도로구역(변경) 결정 관련 협의 추진중
2023	- 도로구역(변경) 결정 관련 협의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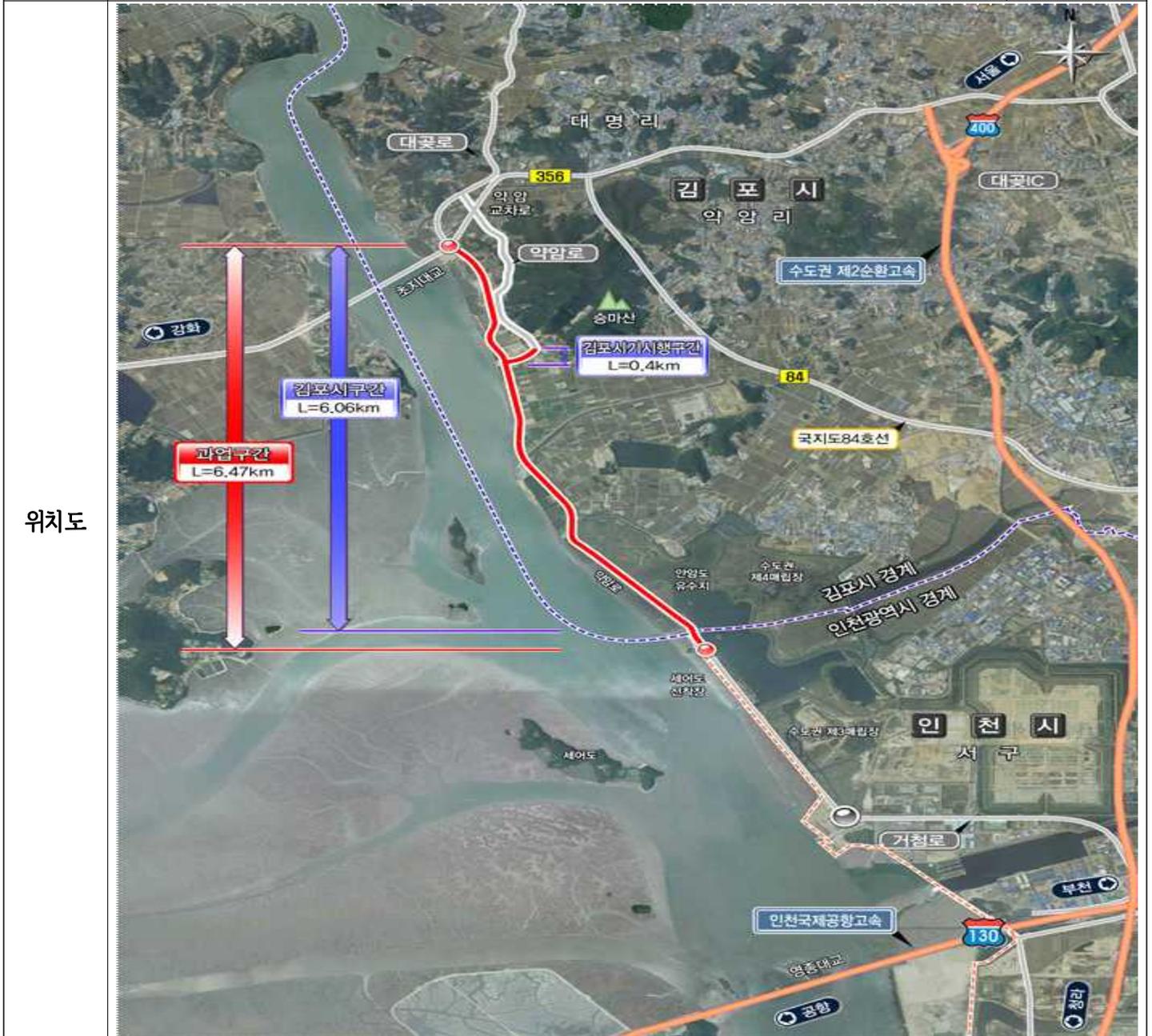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1,415,160	-	11,415,160		
2022	11,415,160	-	11,415,160		
2023	14,245,160	2,832,904	11,412,256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6.4km, B=2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인천거침도~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	인천 서구 ~ 대곶면 약암리 일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모상훈	전화	2436
-----	-------	-------------	-----	----------	----	------

#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7. 11. ~ 2025. 12.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 원산리 일원
사업규모	L=3.1km, B=20m(4차로)		
사업목적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구간과 연결되는 시도12호선의 확장을 통한 IC건설 여건 마련으로 교통량 분산 및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0,170,000	840,870	9,329,130	1,500,000	7,614,940	3,214,190	19,000,000	6,065,000	12,935,000
국비									
도비	1,260,000	-	1,260,000	-	-	1,260,000			
시비	8,910,000	840,870	8,069,130	1,500,000	7,614,940	1,954,190	19,000,000	6,065,000	12,935,00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65,000	
시도12호선 (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3.1km, B=20m(4차로)	= 6,065,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편성
- 2024년 상반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완료에 따른 보상액 지급을 위한 보상비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보상비, 공사비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일자	2017.11.	2017.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2. : 도로구역 결정 및 손실보상계획 공고
- 2022. 4. : 토지 분할 및 보상 착수
- 2022. 12.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3. 3. : 협의보상 개시
- 2023. 6.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4. 상반기. : 공사 착공
- 2025. 12. : 공사 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40,000,000</b>	<b>11,670,000</b>	<b>19,000,000</b>	<b>6,065,000</b>	<b>12,935,000</b>	<b>9,330,000</b>	
공 정 별	설계비	800,000	800,000	0			
	보상비	19,700,000	9,090,000	10,610,000	6,065,000	4,545,000	
	공사비	18,000,000	1,260,000	8,390,000		8,390,000	8,350,000
	감리비	1,400,000	500,000	0			900,000
	부대비	100,000	20,000	0			80,00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2022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보상 착수
2023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보상 진행 중(보상률 40%)

### ○ 최근3년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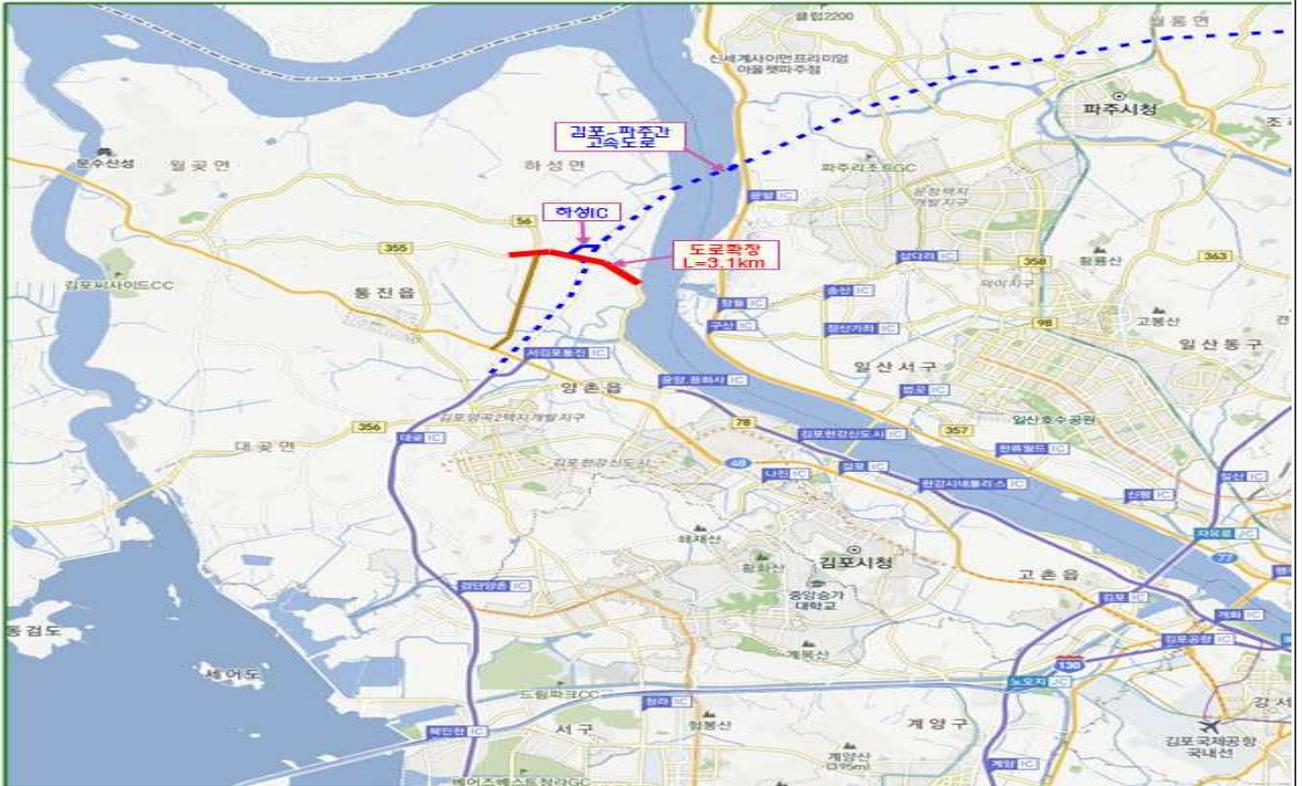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452,405	32,521	5,419,884		
2022	9,679,884	350,754	9,329,130		
2023	10,829,130	7,614,940	3,214,190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3.1km, B=20m(4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6,065,000
부기명 (세부사업)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 원산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9급 이승철	전화	2438
-----	-------	-------------	-----	----------	----	------

# 초원지~석정(간동사거리)간 도로확포장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7. 11. ~ 2024. 12.	사업위치	대곶면 대곶북로 일원
사업규모	L=0.9km, B=20m(4차로)		
사업목적	교통정체가 심각한 초원신사거리~간동사거리 구간의 도로확장을 통해 교통불편 해소 및 원활한 물류수송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제13조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2,650,000	9,302,952	3,347,048	2,650,000	2,820,835	3,176,213			
국비									
도비									
시비	12,650,000	9,302,952	3,347,048	2,650,000	2,820,835	3,176,213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7.11.	2017.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8. :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
- 2019. 11. : 토지분할 및 손실보상계획 공고
- 2021. 3. : 공사 착공
- 2023. 12. : 공사 준공
- 2024. 12. : 확정측량 및 지적정리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15,300,000</b>	<b>15,300,000</b>	<b>0</b>	<b>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230,000	230,000	0			
	보상비	7,360,000	7,360,000	0			
	공사비	7,400,000	7,400,000	0			
	감리비	300,000	300,000	0			
	부대비	10,000	10,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1. 3월 공사 착공
2022	- 도로 확포장공사중
2023	- 도로 확포장공사중(공정률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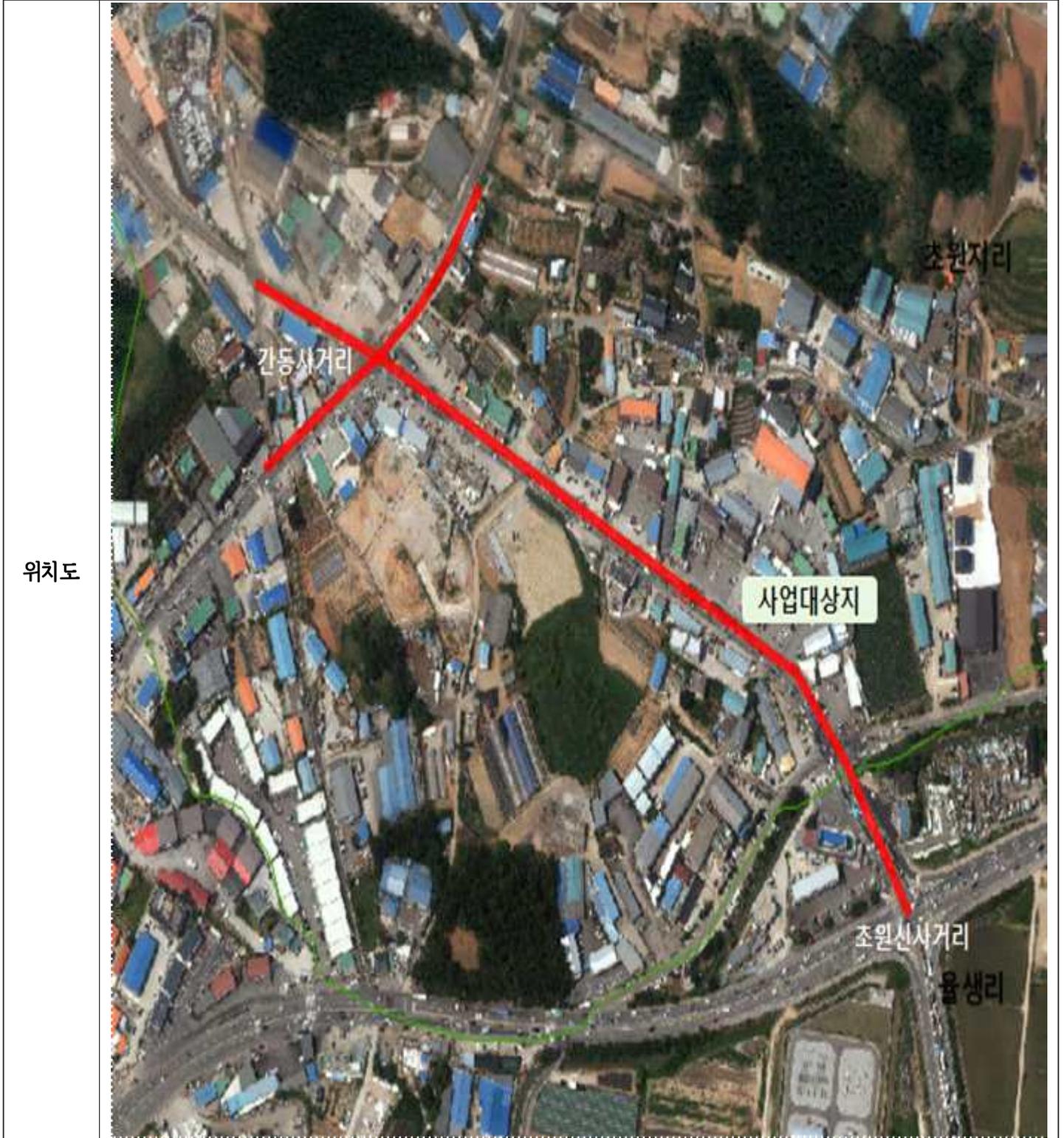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7,470,805	2,514,917	4,955,888		
2022	6,055,753	2,707,010	3,348,743		
2023	5,997,048	2,820,835	3,176,213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9km, B=20m(4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초원지-석정(간동사거리)간 도로확포장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대곶북로 일원 (초원신사거리~간동사거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윤상민	전화	2437
-----	-------	-------------	-----	----------	----	------

# 대곶 농어촌도로(농도301호선)확포장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4. 12.	사업위치	대곶면 대벽리 445번지 일원
사업규모	L=0.5km, B=10m(2차로)		
사업목적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및 이용차량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제13조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3,400,000	3,278,144	121,856		18,296	103,560			
국비									
도비									
시비	3,400,000	3,278,144	121,856		18,296	103,560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8.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11. :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 2020. 2. : 토지분할 및 손실보상계획 공고
- 2020. 9. : 보상착수
- 2021. 9. : 공사착공
- 2022. 4. : 공사준공
- 2022. 12. : 보완공사 준공
- 2023. 5. : GIS DB 구축용역 준공
- 2024. 12. : 확정측량 및 지적정리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3,400,000</b>	<b>3,400,000</b>	<b>0</b>	<b>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150,000	150,000	0			
	보상비	2,190,000	2,190,000	0			
	공사비	1,050,000	1,050,000	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도로공사 중
2022	- 도로공사 준공('22. 4.), 보완공사 준공('22. 12.)
2023	- GIS DB 구축용역 준공('23. 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804,457	910,594	893,863		
2022	893,863	772,007	121,856		
2023	121,856	18,296	103,56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5km, B=10m(2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대곶 농어촌도로(농도301호선) 확포장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대백리 445번지 일원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윤상민	전화	2437
-----	-------	-------------	-----	----------	----	------

# 월곶 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8. 6. ~ 2024. 6.	사업위치	월곶면 군하로 158-2 일원
사업규모	L=0.95km, B=25m, 교량 1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사업목적	월곶면 갈산사거리 인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상태 현상이 발생하여 도로확장을 통한 도로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가압의 물류비용 절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위임규정	제88조(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인가) 제96조(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4,760,000	10,877,655	3,882,345	7,340,000	5,153,718	6,068,627	1,200,000	1,200,000	
국비									
도비									
시비	14,760,000	10,877,655	3,882,345	7,340,000	5,153,718	6,068,627	1,200,000	1,200,000	
기타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D-B)	비고
		최종예산액(A=B+C)	본예산(B)	1회추경(C)			
계	4,500,000	7,340,000	4,740,000	2,600,000	1,200,000	-3,54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500,000	7,340,000	4,740,000	2,600,000	1,200,000	-3,54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00	
월곶 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도로개설(L=0.95km, B=25m), 교량 1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 1,200,000	

## □ 예산요구 사유

○ 본 사업은 갈산~군하간 교통정체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확장사업(2차로→4차로) 추진

## □ 예산증감 사유

○ 추가 실정보고 사항 반영 및 관급자재 비용 증가, 잔여 토지보상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7.12.	2020.11. (재심사)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9.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7.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6.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0. 9. : 보상 착수
- 2020. 11. : 투자(재)심사 예산(총사업비) 변경
- 2021. 2. : 실시계획인가(변경) 완료
- 2021. 4. : 공사 착공
- 2023. 4. : 부대공사 착수(통신, 전기)
- 2024. 4. : 군하교 개설
- 2024. 6. : 공사 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23,300,000</b>	<b>22,100,000</b>	<b>1,200,000</b>	<b>1,200,00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230,000	230,000	0			
	보상비	6,300,000	6,300,000	0			
	공사비	16,040,000	14,840,000	1,200,000	1,200,000		
	감리비	700,000	700,000	0			
	부대비	30,000	30,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공사 착공
2022	-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추진(국도48호선 갈산사거리 일원)
2023	- 부대공사 착수(통신, 전기)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9,152,389	5,673,487	3,478,902		
2022	7,978,902	4,096,556	3,882,346		
2023	11,222,345	5,153,718	6,068,627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95km, B=25m, 교량 1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1,2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월곶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군하로 158-2 일원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8급 전용후	전화	2138
-----	-------	-------------	-----	----------	----	------

# 애기봉~태산패밀리파크간 경관도로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6. 12.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 양택리
사업규모	L=3.5km, B=12m(2차로)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활성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계)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위임규정		제9조 및 제13조
제9조(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3,175,000	2,157,788	1,017,212	500,000		1,517,212	1,600,000	1,600,000	
국비	2,540,000	2,089,443	450,557	400,000		850,557	1,280,000	1,280,000	
도비									
시비	635,000	68,345	566,655	100,000		666,655	320,000	320,00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00	
애기봉~태산패밀리파크간 경관도로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3.5km, B=12m(4차로)	= 1,600,000	

## □ 예산요구 사유

-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토지분할 측량 완료 후 토지보상을 위한 소요예산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상반기 도로 편입토지 보상액 지급을 위한 보상비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5.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12.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 6. : 기본 및 설계용역 착수
- 2022. 3. ~ : 농어촌도로 노선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2022. 12. :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관련 주민 공람
- 2023. 10. : 관계기관 재협의(군사협의 심의의견에 따른 보완 심의)
- 2024. 1. : 노선 지정 공고 및 토지분할 측량(감정평가 병행)
- 2024. 6. : 공사착공
- 2026. 12. : 공사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24,550,000</b>	<b>3,675,000</b>	<b>1,600,000</b>	<b>1,600,000</b>	<b>0</b>	<b>19,275,000</b>	
공 정 별	설계비	1,000,000	1,000,000	0			
	보상비	7,485,000	2,660,000	1,600,000		3,225,000	
	공사비	15,400,000		0		15,400,000	
	감리비	650,000		0		650,000	
	부대비	15,000	15,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계기관 협의 추진
202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계기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설계VE 등) 협의 추진
2023	- 관계기관 재협의(군사협의 심의의견에 따른 보완)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280,690	281,829	1,998,861		
2022	2,623,861	63,354	2,560,507		
2023	1,517,212	-	1,517,212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3.5km, B=12m(2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1,6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애기봉 ~ 태산패밀리파크간 경관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 양택리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윤상민	전화	2437
-----	-------	-------------	-----	----------	----	------

# 영사정IC 건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5. 5. ~ 2027. 12.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리 일원(김포한강로)
사업규모	연결램프 2개소 설치 (L=2,038m, B=8.1m)		
사업목적	영사정IC 건설을 통해 김포한강로와 수도권제1순환선의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연결로 설치로 국도48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신곡사거리의 만성적 교통정체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050,000	1,050,000		2,640,000	112,904	2,527,096	10,000,000	500,000	9,500,000
국비									
도비									
시비	1,050,000	1,050,000		2,640,000	112,904	2,527,096	10,000,000	500,000	9,500,00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0	
영사정IC 건설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2,038m, B=8.1m	= 500,000	

## □ 예산요구 사유

- '23년 하반기 고속국도 도로구역 결정 예정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보상비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설계완료 및 도로구역결정에 따라 보상 등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7.11.	2017.6.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5. 5. : 영사정 하이패스IC 선정
- 2017. 9. : 협약체결(김포시↔한국도로공사)
- 2019. 6. : 영사정 하이패스IC 타당성평가 용역 완료
- 2020.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21. 12. : 영사정IC(무료화) 도로 연결 변경허가 승인(국토부→김포시)
- 2022. 12. : 변경 협약 체결(김포시↔한국도로공사)
- 2023.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한국도로공사)
- 2023. 12. : 고속국도 도로구역 결정(국토부)
- 2024. 2. : 보상 착수 및 공사 착공
- 2027. 12. : 공사 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A+B+E)	기투자(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E)	비고
			계(B=C+D)	본예산(C)	추경(D)		
<b>계</b>	<b>31,500,000</b>	<b>3,690,000</b>	<b>10,000,000</b>	<b>500,000</b>	<b>9,500,000</b>	<b>17,810,000</b>	
공정별	설계비	1,160,000	1,160,000	0		0	
	보상비	5,300,000	2,020,000	3,000,000	500,000	2,500,000	280,000
	공사비	23,210,000	0	6,500,000		6,500,000	16,710,000
	감리비	1,800,000	500,000	500,000		500,000	800,000
	부대비	30,000	10,000	0			20,00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2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사업추진계획 변경(무료화 운영) 협약 체결
202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도로구역결정 고시 등

### ○ 최근3년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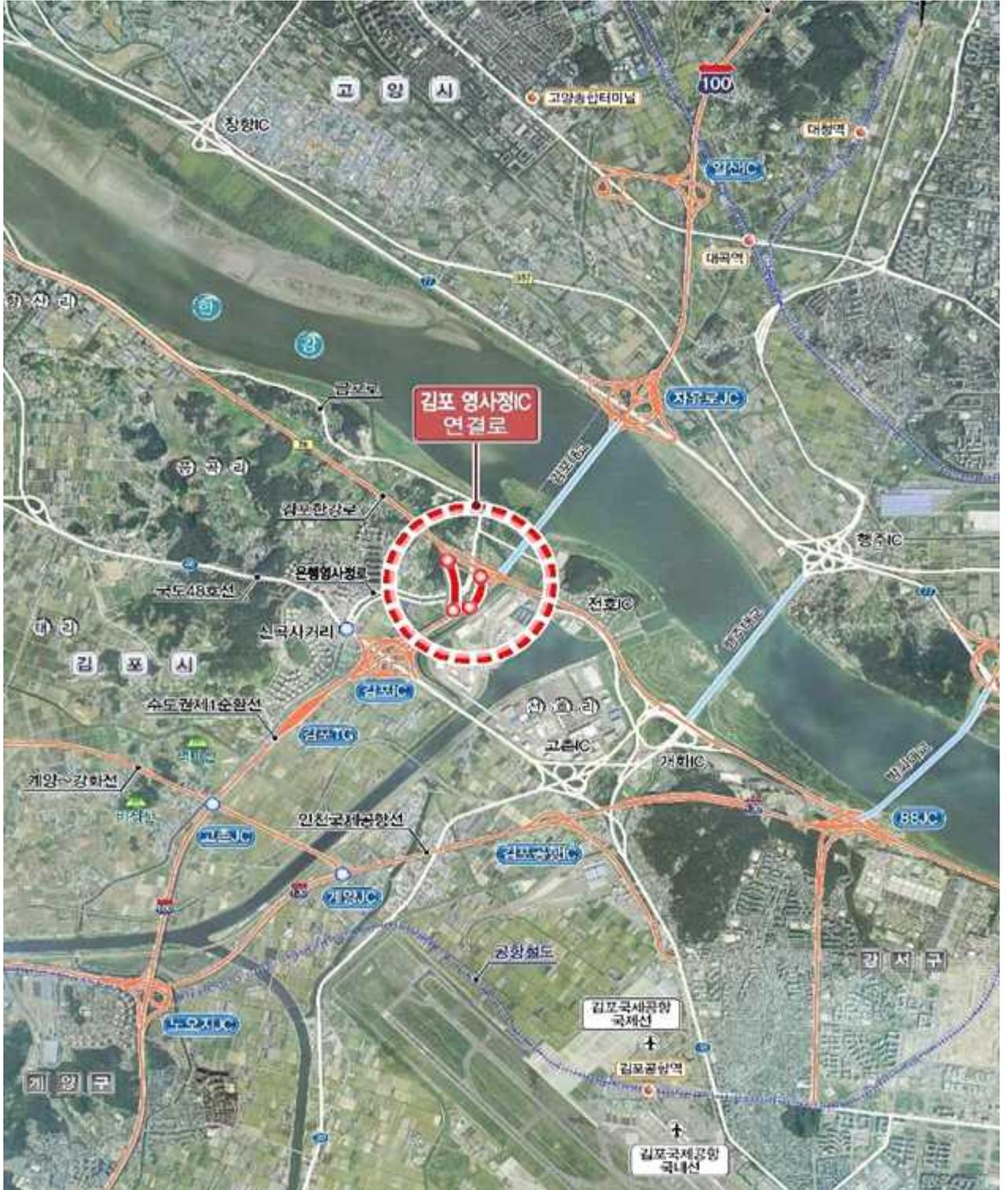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2022	300,000	300,000	-		
2023	2,640,000	112,904	2,527,096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연결램프 2개소 설치 (L=2,038m, B=8.1m)	본예산 요구액 (천원)	5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영사정IC 건설사업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리 일원(김포한강로)		

위치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모상훈	전화	2436
-----	-------	-------------	-----	----------	----	------

# 김포대로~개화역 서울방향 차로확장공사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4. 6. ~ 2025. 12.	사업위치	고촌읍 전호리~강서구 개화동
사업규모	L=0.75km, 1개차로 확장		
사업목적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및 버스전용차로 지정운영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3,000,000		3,000,000
국비									
도비									
시비							3,000,000		3,000,000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투자심사 중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4. :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대책 TF회의 결과(도로확장 추진)
- 2023. 5. : 도로확장 소요 재원확보 방안 마련
- 2023. 12. : 인천계양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제출(LH→대광위)
- 2024. 6. : 사업부담금 납부(LH→김포시) 및 설계착수
- 2024. 10.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김포시, 서울시)
- 2025.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0,000,000	0	3,000,000	0	3,000,000	7,000,000	
공정별	설계비	700,000	700,000		700,000		
	보상비	500,000	500,000		500,000		
	공사비	8,000,000		1,500,000	1,500,000	6,500,000	
	감리비	700,000		200,000	200,000	500,000	
	부대비	100,000		100,000		100,000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75km, 1개차로 확장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대로~개화역 서울방향 차로확장공사	사업위치	고촌읍 전호리~강서구 개화동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모상훈	전화	2436
-----	-------	-------------	-----	----------	----	------

# 해강안 일주도로(월곶중로3-8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6. 12.	사업위치	월곶면 성동리 ~ 용강리 일원
사업규모	L=5.9km, B=12m(2차로)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4,887,500	1,090,941	13,796,559	1,812,500	297,441	15,311,618	1,946,250	1,946,250	
국비	10,134,000	158,189	9,975,811	1,450,000	297,441	11,128,370	1,557,000	1,557,000	
도비									
시비	4,753,500	932,752	3,820,748	362,500		4,183,248	389,250	389,25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b>합 계</b>			<b>1,946,250</b>	
해강안 일주도로(월곶중로3-8호선)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5.9km, B=12m(2차로)	= 1,696,250	
	401-02 감리비	· 감리비 : L=5.9km, B=12m(2차로)	= 250,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상반기 보상 착수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예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 및 감리비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편입 토지 보상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소요 사업비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2. : 도로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019. 8.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20.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1구간)
- 2020. 8. : '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국비지원사업)
- 2022. 1.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1구간)
- 2022. 2. : 실시계획인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 2023. 1. : 실시계획인가
- 2023. 2. : 토지분할 측량 실시
- 2023. 4. : 금개구리 포획·이주 용역 착수
- 2023. 12. :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착수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2024. 상반기. : 보상 착수
- 2026. 12. : 공사 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38,000,000</b>	<b>16,700,000</b>	<b>1,946,250</b>	<b>1,946,250</b>	<b>0</b>	<b>19,353,750</b>	
공 정 별	설계비	1,300,000	1,300,000	0			
	보상비	13,600,000	8,875,000	1,696,250	1,696,250	3,028,750	
	공사비	22,200,000	6,280,000	0		15,920,000	
	감리비	850,000	200,000	250,000	250,000	400,000	
	부대비	50,000	45,000	0		5,00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관련 관계기관 협의
20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시계획 인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2023	- 실시계획인가, 토지분할 측량, 금개구리 포획·이주 용역 착수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32,985	70,056	1,962,929		
2022	14,005,429	208,870	13,796,559		
2023	15,609,059	297,441	15,311,618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5.9km, B=12m(2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1,946,250
부기명 (세부사업)	해강안 일주도로 (월곶중로3-8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성동리 ~ 용강리 일원		

위치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모상훈	전화	2436
-----	-------	-------------	-----	----------	----	------

#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6. 12.	사업위치	월곶면 고막리 ~ 용강리 일원
사업규모	L=4.2km, B=12m(2차로)		
사업목적	도로개설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810,000	608,952	201,048			201,048	8,195,000	1,000,000	7,195,000
국비									
도비									
시비	810,000	608,952	201,048			201,048	8,195,000	1,000,000	7,195,00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0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4.2km, B=12m(4차로)	= 1,000,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3년도 편성된 예산 범위 내 토지분할 측량 완료 예정(기 편성 예산 전액 소진 예정)
- 고막지구 사업개발자 등 도로개설 신속 진행 요청 민원(고막지구 사업승인 및 기반시설 관련)
- 사업구간 내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기허가(신고)를 득한 사용인들의 개발행위 전 보상 실시 필요

## □ 예산증감 사유

- 도로구역결정 및 토지분할 완료에 따라 보상 등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 편성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3.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3. : 투자심사 완료
- 2019.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3.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3. 7. : 토지분할 측량 의뢰
- 2024. 3.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및 보상 착수
- 2024. 10. : 공사 착공
- 2026. 12. : 공사 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19,500,000</b>	<b>810,000</b>	<b>8,195,000</b>	<b>1,000,000</b>	<b>7,195,000</b>	<b>10,495,000</b>	
공 정 별	설계비	600,000	600,000	0			
	보상비	6,490,000	195,000	5,500,000	1,000,000	4,500,000	795,000
	공사비	11,900,000	0	2,500,000		2,500,000	9,400,000
	감리비	495,000	0	195,000		195,000	300,000
	부대비	15,000	15,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2022	- 도로구역 결정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중
2023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및 토지분할측량 추진 중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32,020	15,088	416,932	-	
2022	416,932	215,884	201,048	-	
2023	201,048	-	201,048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4.2km, B=12m(2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1,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시도22호선(고막리~용강) 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고막리 ~ 용강리 일원		

위치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윤상민	전화	2437
-----	-------	-------------	-----	----------	----	------

# 김포 도시계획도로(한강소로1-260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1. 1. ~ 2024. 7.	사업위치	김포시 운양동 산73번지 일원
사업규모	L=0.26km, B=10m		
사업목적	인구 및 차량증가, 초중통합학교 신설에 따라 좁은 마을안길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 (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2,110,000	43,651	2,056,349	500,000	96,891	2,459,458	190,000		190,000
국비									
도비									
시비	2,110,000	43,651	2,056,349	500,000	96,891	2,459,458	190,000		190,000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20.11.	2020.10.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6.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 10.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 2021.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11.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3. 1. : 보상착수
- 2023. 9. : 공사착공
- 2023. 10. : 공사정지
- 2024. 7. : 공사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2,800,000</b>	<b>2,610,000</b>	<b>190,000</b>	<b>0</b>	<b>190,000</b>	<b>0</b>	
공 정 별	설계비	110,000	110,000	0			
	보상비	1,000,000	1,000,000	0			
	공사비	1,690,000	1,500,000	190,000		19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실시계획인가 신청
2022	-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2023	- 실시계획인가 완료, 보상착수 및 공사착공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10,000	5,500	104,500		
2022	2,104,500	38,151	2,066,349		
2023	2,566,349	96,891	2,469,458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5km, B=1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도시계획도로 (한강소로1-260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운양동 산73번지 일원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8급 최혁	전화	2338
-----	-------	-------------	-----	---------	----	------

#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확포장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0. 3. ~ 2024. 12.	사업위치	월곶면 평화공원로 10 일원
사업규모	L=1.5km, B=12m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및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 (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6,650,000	5,651,409	998,591	2,700,000	2,590,689	1,107,902			
국비									
도비									
시비	6,650,000	5,651,409	998,591	2,700,000	2,590,689	1,107,902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9.12.	2019.12.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1.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 2020. 3.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3.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1. 5. : 보상 착수
- 2021. 6. : 공사 착공
- 2023. 8. : 공사 준공
- 2024. 12. : 잔여지 보상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9,350,000</b>	<b>9,350,000</b>	<b>0</b>	<b>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200,000	200,000	0			
	보상비	2,890,000	2,890,000	0			
	공사비	5,950,000	5,950,000	0			
	감리비	300,000	300,00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상 및 공사착수
2022	- 보상 및 공사 추진
2023	- 공사준공(2023. 8.)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726,287	1,838,545	1,887,742		
2022	4,537,742	3,538,698	999,044		
2023	3,698,591	2,771,183	927,408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1.5km, B=12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월곶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 확포장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평화공원로 10 일원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8급 최혁	전화	2338
-----	-------	-------------	-----	---------	----	------

# 김포 도시계획도로(대로3-7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0. 6. ~ 2024. 7.	사업위치	김포시 감정로 109 일원
사업규모	L=0.12km, B=15m		
사업목적	감정동과 검단신도시 연결 구간으로 지역 간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로개설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2,630,000	1,061,802	1,568,198		609,724	958,474	550,000	550,000	
국비									
도비									
시비	2,630,000	1,061,802	1,568,198		609,724	958,474	550,000	550,00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550,000	
김포 도시계획도로(대로3-7호선)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도로개설 L=0.12km, B=15	= 550,000	

## □ 예산요구 사유

- 감정5지구 및 인천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감정동~검단신도시 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차량 정체 등 불편 예상
-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지역 간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속한 공사 추진

## □ 예산증감 사유

- 감정5지구와 검단신도시 연결 구간으로 2024년 7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적기에 도로 사업을 추진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	-	-	-
일자	2019.11.	2020.2.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 2. : 투자심사
- 2020.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5. : 실시계획인가
- 2022. 4. : 보상착수
- 2024. 1. : 공사착공
- 2024. 7. : 공사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3,180,000</b>	<b>2,630,000</b>	<b>550,000</b>	<b>550,00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50,000	50,000	0			
	보상비	2,570,000	2,570,000	0			
	공사비	560,000	10,000	550,000	55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2	- 보상착수
2023	- 보상착수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297,252	30,610	2,266,642		
2022	2,596,642	1,028,444	1,568,198		
2023	1,568,198	609,724	958,474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12km, B=15m	본예산 요구액 (천원)	550,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도시계획도로 (대로3-7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김포시 감정동 631-20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9급 차수진	전화	2458
-----	-------	-------------	-----	----------	----	------

# 김포 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4. ~ 2024. 3.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동 202-2번지 일원
사업규모	L=0.2km, B=8m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인가) 제96조(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 (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2,440,000	2,050,602	389,398	389,398	261,280	128,117			
국비									
도비									
시비	2,440,000	2,050,602	389,398	389,398	261,280	128,117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3.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2019년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2. :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019.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20. 3. : 실시계획인가
- 2020. 4. : 보상착수
- 2021. 11. : 공사착공
- 2023. 3. : 공사준공
- 2023. 11. : 시설물 인수인계
- 2024. 3. : 잔여지 보상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2,440,000</b>	<b>2,440,000</b>	<b>0</b>	<b>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0			
	보상비	1,990,000	1,990,000	0			
	공사비	420,000	420,000	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공사 착공
2022	- 공사 추진
2023	- 공사 준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31,383	4,316	527,067		
2022	471,920	32,037	439,883		
2023	389,398	261,280	128,117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2km, B=8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0호선)개설사업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동 202-2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8급 전용후	전화	2138
-----	-------	-------------	-----	----------	----	------

# 통진 도시계획도로(대로3-2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8 ~ 2027. 2.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로 65-72 일원
사업규모	L=0.34km, B=25m		
사업목적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혼잡 및 통행불편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인가) 제96조(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 (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190,000	154,383	35,617	35,617	29,599	6,018	7,700,000		7,700,000
국비									
도비									
시비	190,000	154,383	35,617	35,617	29,599	6,018	7,700,000		7,700,000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3.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9.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3. : 투자심사 완료
- 2019. 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4. : 설계VE 등 검토 용역 추진
- 2023. 6. :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23. 8. : 건설기술심의 완료
- 2024. 3. : 보상 착수
- 2025. 3. : 공사 착공
- 2027. 2. : 공사 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20,190,000</b>	<b>190,000</b>	<b>7,700,000</b>	<b>0</b>	<b>7,700,000</b>	<b>12,300,000</b>	
공 정 별	설계비	190,000	190,000	0			
	보상비	7,700,000		7,700,000	7,700,000		
	공사비	12,200,000		0		12,2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0		0		100,00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2	- 실시계획인가 협의
2023	- 설계VE 등 검토 용역 추진 - 실시계획인가 완료 - 건설기술심의 추진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01,244	52,582	48,661		
2022	48,661	13,044	35,617		
2023	35,617	29,599	6,018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34km, B=25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통진 도시계획도로 (대로3-2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로 65-72 일원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8급 전용후	전화	2138
-----	-------	-------------	-----	----------	----	------

# 양촌 도시계획도로(광로3-5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8 ~ 2028. 2.	사업위치	양촌읍 구래리 202-16번지 일원		
사업규모	L=0.5km, B=40m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규정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인가) 제96조(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340,000	317,222	22,778	22,778	15,770	7,008	21,000,000		21,000,000
국비									
도비									
시비	340,000	317,222	22,778	22,778	15,770	7,008	21,000,000		21,000,000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20.11.	2020.10.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9.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3. : 투자심사 완료
- 2019. 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 4. : 설계VE 등 검토 용역 추진
- 2023. 4. :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23. 8. : 건설기술심의 완료
- 2024. 3. : 보상 착수
- 2025. 3. : 공사 착공
- 2028. 2. : 공사 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37,840,000</b>	<b>340,000</b>	<b>21,000,000</b>	<b>0</b>	<b>21,000,000</b>	<b>16,500,000</b>	
공 정 별	설계비	340,000	340,000	0			
	보상비	21,000,000		21,000,000	21,000,000		
	공사비	16,300,000		0		16,3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200,000		0		200,00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2	- 실시계획인가 협의
2023	- 설계VE 등 검토 용역 추진 - 실시계획인가 완료 - 건설기술심의 추진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61,808	24,285	137,522		
2022	137,522	114,744	22,778		
2023	22,778	15,770	7,008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5km, B=4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양촌 도시계획도로 (광로3-5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양촌읍 구래리 202-16번지 일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8급 전용후	전화	2138
-----	-------	-------------	-----	----------	----	------

# 대곶 도시계획도로(중로3-9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8. ~ 2026. 12.	사업위치	대곶면 대곶북로 205-22 일원
사업규모	L=0.72km, B=10m		
사업목적	주거 및 공장 밀집지역의 열악한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및 차량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 및 원활한 물류 수송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인가) 제96조(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40,000	97,095	42,905			42,905	6,290,000		6,290,000
국비									
도비									
시비	140,000	97,095	42,905			42,905	6,290,000		6,290,000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3.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9.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3. : 투자심사 완료
- 2019. 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3. : 실시계획인가
- 2024. 3. : 보상착수
- 2025. 3. : 공사착공
- 2026. 12. : 공사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8,930,000</b>	<b>140,000</b>	<b>6,290,000</b>	<b>0</b>	<b>6,290,000</b>	<b>2,500,000</b>	
공 정 별	설계비	130,000	130,000	0			
	보상비	7,090,000		6,290,000		6,290,000	800,000
	공사비	1,700,000		0			1,7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2	- 실시계획인가 관계기관 협의
2023	- 실시계획인가 완료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82,550	8,750	73,800		
2022	73,800	30,895	42,905		
2023	42,905	-	42,905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72km, B=1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대곶 도시계획도로 (중로3-9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대곶북로 205-22 일원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8급 최혁	전화	2338
-----	-------	-------------	-----	---------	----	------

# 대곶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5. ~ 2025. 12.	사업위치	대곶면 율생리 266-3번지 일원
사업규모	L=1.33km, B=10~12m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계)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인가) 제96조(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 (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210,000	154,659	55,341			55,341	5,290,000		5,290,000
국비									
도비									
시비	210,000	154,659	55,341			55,341	5,290,000		5,290,000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8.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5.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9.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4. 3. : 보상착수
- 2024. 9. : 공사착공
- 2025. 12.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11,000,000</b>	<b>210,000</b>	<b>5,290,000</b>	<b>0</b>	<b>5,290,000</b>	<b>5,500,000</b>	
공 정 별	설계비	200,000	200,000	0			
	보상비	5,290,000		5,290,000	5,290,000		
	공사비	5,500,000		0		5,5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2	-
2023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25,950	70,609	55,341		
2022	55,341	-	55,341		
2023	55,341	-	55,341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1.33km, B=10~12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대곶 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개설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울생리 266-3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9급 차수진	전화	2458
-----	-------	-------------	-----	----------	----	------

# 월곶 도시계획도로(소로2-4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5. ~ 2025. 12.	사업위치	월곶면 군하리 149-3번지 일원
사업규모	L=0.24km, B=8m		
사업목적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혼잡 및 통행불편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인가) 제96조(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 (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90,000	52,586	37,414			37,414	2,750,000		2,750,000
국비									
도비									
시비	90,000	52,586	37,414			37,414	2,750,000		2,750,000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8.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2. :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019.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6.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4. 1. : 보상착수
- 2025. 1. : 공사착공
- 2025. 12.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3,800,000</b>	<b>90,000</b>	<b>2,750,000</b>	<b>0</b>	<b>2,750,000</b>	<b>960,000</b>	
공 정 별	설계비	40,000	40,000	0			
	보상비	2,750,000		2,750,000	2,750,000		
	공사비	1,000,000	40,000	0		960,00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편입용지 분할측량 완료
2022	-
2023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2,923	15,509	37,414		
2022	37,414	-	37,414		
2023	37,414	-	37,414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24km, B=8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월곶 도시계획도로 (소로2-4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군하리 149-3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9급 차수진	전화	2458
-----	-------	-------------	-----	----------	----	------

# 양촌 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4. ~ 2024. 9.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1로 38 일원
사업규모	L=0.3km, B=8m		
사업목적	양촌 구도심 교통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불편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인가) 제96조(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2,050,000	2,027,670	22,330	3,672,330	3,047,227	625,103	1,200,000		1,200,000
국비									
도비									
시비	2,050,000	2,027,670	22,330	3,672,330	3,047,227	625,103	1,200,000		1,200,000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8.11.	2019.3.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2019년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2. :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019.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4. :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22. 4. : 보상 착수
- 2023. 12. : 공사 착공
- 2024. 3. : 잔여지 보상 재착수
- ※ 기협회사항 : 도시관리과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 부지 앞 양촌소로2-9호선의 토지보상은 건설도로과, 도로설계 및 시공은 도시관리과 시행
- 2024. 9.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6,900,000</b>	<b>5,700,000</b>	<b>1,200,000</b>	<b>0</b>	<b>1,200,000</b>	<b>0</b>	
공 정 별	설계비	30,000	30,000	0			
	보상비	6,390,000	5,190,000	1,200,000		1,200,000	
	공사비	470,000	470,000	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2023	- 사업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5,844	-	15,844		
2022	2,015,844	1,993,513	22,331		
2023	3,672,330	3,047,216	625,103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3km, B=8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양촌 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1로 38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8급 전용후	전화	2138
-----	-------	-------------	-----	----------	----	------

# 대곶 도시계획도로(소로2-15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0. 6. ~ 2024. 5.	사업위치	대곶면 울생로 103-36 일원
사업규모	L=0.13km, B=10m		
사업목적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센터 진출입로 개설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인가) 제96조(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800,000	76,067	1,723,933			
국비									
도비									
시비				1,800,000	76,067	1,723,933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0.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6. : 실시설계용역
- 2020.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2. 11. : 실시계획인가
- 2023. 1. : 보상 착수
- 2023. 4. : 공사 착공
- 2024. 5.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800,000	1,800,000	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0					
	보상비	1,200,000	1,200,000				
	공사비	600,000	600,000				
	감리비	0					
	부대비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실시계획인가 관계 기관 협의
2022	- 실시계획인가 승인
2023	- 보상착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2022	-	-	-		
2023	1,800,000	76,067	1,723,933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13km, B=1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대곶 도시계획도로 (소로2-15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울생로 103-36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9급 차수진	전화	2458
-----	-------	-------------	-----	----------	----	------

# 김포 도시계획도로(중로3-25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2. 2. ~ 2026. 12.	사업위치	풍무동 429-31번지 일원
사업규모	L=0.45km, B=12m		
사업목적	인천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 유입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간 연계도로 구축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인가) 제96조(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 (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200,000	105,045	94,955	7,000,000		7,000,000
국비									
도비									
시비				200,000	105,045	94,955	7,000,000		7,000,000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	-	-	-	-	-	-	-	-
일자	2022.11.	2022.11.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2 : 김포 도시계획도로(중로3-25호선) 개설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22.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완료
- 2023.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12.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4. 3. : 보상 착수
- 2025. 3. : 공사 착공
- 2026.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9,700,000</b>	<b>200,000</b>	<b>7,000,000</b>	<b>0</b>	<b>7,000,000</b>	<b>2,500,000</b>	
공 정 별	설계비	190,000	190,000	0			
	보상비	7,000,000		7,000,000	7,000,000		
	공사비	2,500,000		0		2,5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추진계획보고(방침), 투자심사 완료
202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2022	-	-	-		
2023	200,000	105,045	94,955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45km, B=12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도시계획도로 (중로3-25호선) 개설공사	사업위치	풍무동 429-31번지 일원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8급 최혁	전화	2338
-----	-------	-------------	-----	---------	----	------

## 풍무~검단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1. 6.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승가로 85 일원
사업규모	L=0.36km, B=15m		
사업목적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증가된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지역주민 및 기업들의 교통 편익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도로개설관련 실시계획인가) 제96조(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 (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200000	64,245	135,755	135,755		135,755	2,000,000		2,000,000
국비									
도비									
시비	200,000	64,245	135,755	135,755		135,755	2,000,000		2,000,000
기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21.9.	2021.4.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2. 9. : 도시관리계획(도로) 입안 신청
- 2023. 7. : 설계용역 준공
- 2024. 6. :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2024. 9. : 보상 착수
- 2025. 3. : 공사 착공
- 2025.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11,180,000</b>	<b>200,000</b>	<b>2,000,000</b>	<b>0</b>	<b>2,000,000</b>	<b>8,980,000</b>	
공 정 별	설계비	200,000	200,000	0			
	보상비	9,780,000		1,990,000		1,990,000	7,790,000
	공사비	1,190,000		0			1,190,00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1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2	- 도시관리계획(도로) 입안 추진
2023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0,000	64,245	135,755		
2022	135,755	-	135,755		
2023	135,755	-	135,755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36km, B=15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풍무~검단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	김포시 승가로 85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8급 전용후	전화	2138
-----	-------	-------------	-----	----------	----	------

# 약암방조제 보수공사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2. 5. ~ 2024. 7.	사업위치	대곶면 약암리 437-176번지 일원
사업규모	피복석 돌붙임 등 호안공 1식(L=1.5km)		
사업목적	약암방조제 유실구간 보수로 제방기능 유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계) 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방조제 관리법」 및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시행령제5조제2호
	- 「방조제 관리법」 제6조(방조제의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5조(관리대행자) 2.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밖에 있는 경우 : 그 농경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2,150,000	87,862	2,062,138	2,200,000	1,988,527	2,273,611	100,000	100,000	
국비									
도비									
시비	2,150,000	87,862	2,062,138	2,200,000	1,988,527	2,273,611	100,000	100,00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약암방조제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 공사비 - 피복석 돌붙임 등 호안공 L=1.5km	= 100,000	

## □ 예산요구 사유

-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점검결과 약암방조제의 약1.5km 구간에 사석유실 및 지반침하가 확인되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며, 제방 손실 시 염수유입으로 인한 피해, 군사시설물 파손 등 재산·안보상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바 시급한 사업추진 필요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으로 약암방조제 유실구간 보수 공사비 확보 필요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	-	-	-
일자	2023.11.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5. ~ 2023. 1. : 실시설계용역
- 2023. 6. : 공사착공
- 2024. 7. : 공사준공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4,450,000	4,350,000	100,000	100,000	0	0	
공 정 별	설계비	250,000	250,000	0			
	보상비	0		0			
	공사비	4,200,000	4,100,000	100,000	1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실시설계용역 착수('22. 5월)
2023	- 실시설계용역 준공('23. 1월) - 공사 착공('23. 6월)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2,150,000	87,862	2,062,138	-	
2023	4,262,138	1,988,527	2,273,611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피복석 돌붙임 등 호안공 1식 (L=1.5k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약암방조제 보수공사	사업위치	대곶면 약암리 437-176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김상민	담당자	시설8급 전호연	전화	2447
-----	-------	------------	-----	----------	----	------

# 후평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3. 1. ~ 2025. 12.	사업위치	하성면 후평리 846번지 일원
사업규모	용배수로 정비(L=6.7km), 양수장 정비(3개소)		
사업목적	파손된 용배수로 및 양수장 정비를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공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423,750	151,073	1,272,677	2,576,250	2,576,250	
국비				1,139,000	151,073	987,927	2,061,000	2,061,000	
도비									
시비				284,750		284,750	515,250	515,250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2,576,250</b>	
후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용배수로 정비 L=6.7km, 양수장 정비(3개소)	= 2,576,250	

## □ 예산요구 사유

- 하성면 후평리 일대 농경지는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말단부 수혜구역으로 양수장 등 수원공 시설이 부족하고 평야부(용배수로)가 노후되어 상습가뭄 피해, 농업용수 손실 등 주민들의 민원 제기 및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국비지원으로 용수원 확보 및 용배수로 정비 등 안정적인 영농 기반시설구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 하반기 설계 준공으로 후평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공사비 확보 필요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8. :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
- 2023. 1. ~ 2023. 9. : 실시설계용역
- 2023. 11. : 공사착공
- 2025. 12. : 사업완료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b>계</b>	<b>4,000,000</b>	<b>1,423,750</b>	<b>2,576,250</b>	<b>2,576,250</b>	<b>0</b>	<b>0</b>	
공 정 별	설계비	131,000	131,000	0			
	보상비	0		0			
	공사비	3,869,000	1,292,750	2,576,250	2,576,25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22. 8월)
2023	- 실시설계용역 완료('23.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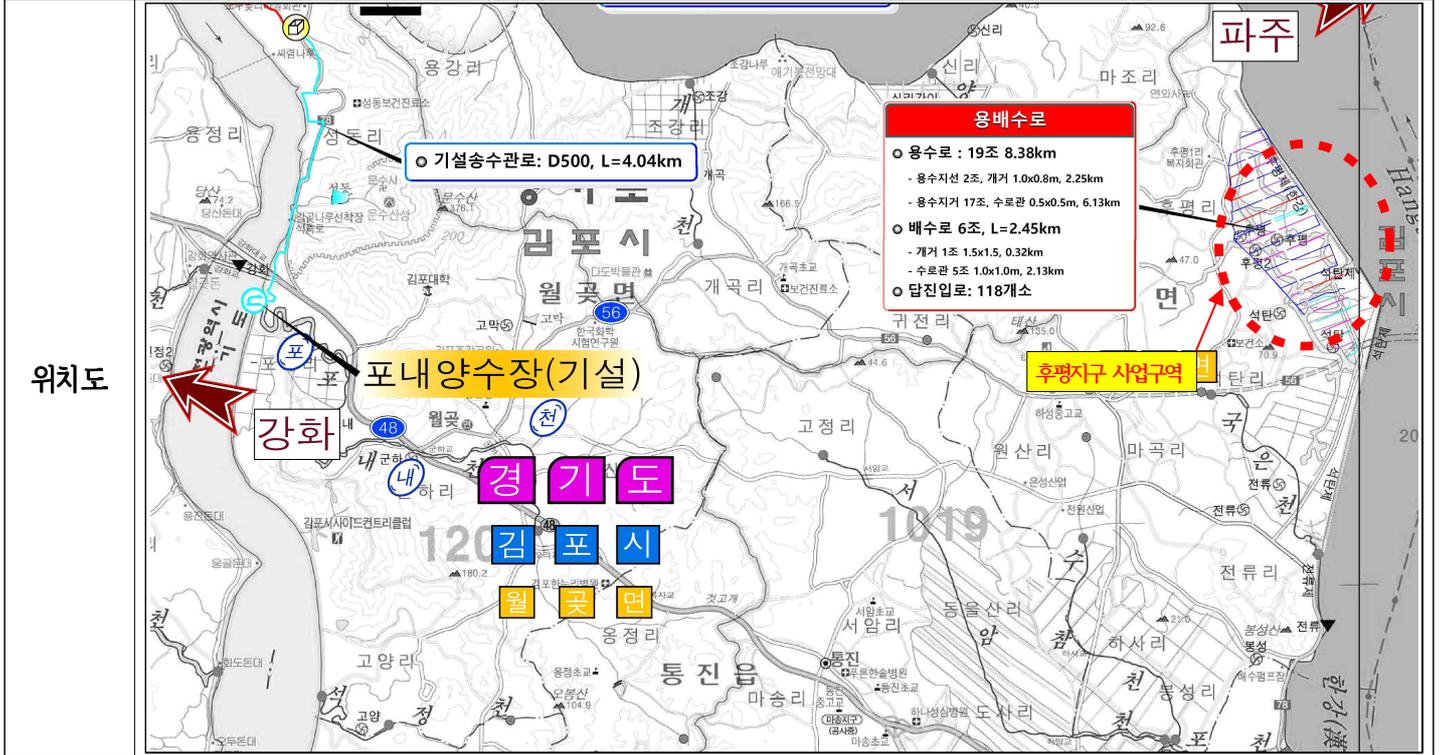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2022	-	-	-		
2023	1,423,750	151,073	1,272,677		10.31.기준 집행현황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용배수로 정비(L=6.7km), 양수장 정비(3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2,576,250
부기명 (세부사업)	후평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후평리 846번지 일원	본예산 요구액 (천원)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김상민	담당자	시설9급 조영훈	전화	2459
-----	-------	------------	-----	----------	----	------

---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

철도과



#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19. 9. ~ 2024. 12.	사업위치	김포골드라인 노선 일원
사업규모	김포한강차량기지, 정거장(10개소), 구간(23.67km)		
사업목적	철도전문 운영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한 김포도시철도 효율성 증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철도법	제42조 제①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①항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3,982,857	29,000,000	25,000,000	4,000,000	27,764,000	2,764,000	
국비		0				0	
도비	1,629,857	1,814,840	1,538,000	276,840	1,694,000	156,000	환승할인 도비 지원금(25%)
시비	22,353,000	27,185,160	23,462,000	3,723,160	26,070,000	2,608,000	환승할인 시비 지원금(75%)포함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764,000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 운영관리비 협약금	= 25,529,500	
		- '24년 협약금(불변가)	= 19,046,520	
		- '23, '24년 물가 변동 조정금(협약상 주무관청 보전)	= 6,482,980	
		○ 협약금 외 추가비용 (법령 제·개정, 혼잡률 개선 등 추진비용)	= 2,234,500	
		- 전동차추가투입		
		(1) 인건비 및 경비(동력비 등)	= 133,000	
		- 협약이후 법령 제·개정		
		(1)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 추가 전력비 및 유지보수비	= 457,500	
		(2) 최저임금법 / 청소, 경비용역 최저임금 인상분	= 427,500	
		(3) 근로기준법 / 운영사 직원 및 청소용역 공휴수당 인상분	= 262,500	
		(4) 지하안전법 / 지하안전점검 용역비	= 30,000	
		- 혼잡률 개선(열차운행계획 변경 과업)	= 556,000	
		- 차량진동 개선(차량진동개선 과업 관련 추가인력)	= 350,000	
		-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살균기 유지보수 용역	= 10,500	
- 구래역 상하수도요금 보전 정산	= 7,500			

**□ 예산요구 사유**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철도전문 운영기관에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김포도시철도 운영 시 사고 사전예방 및 효율성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 '23년 1회 추경 관련 운영관리비 내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사업 제외, 세출예산 재구조화
  - ※ 운임관련 사업 2건(경기도 환승할인 추가지원사업 도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내부지출) 세출예산서 별도 작성
- 운영관리비 협약금 증액 / '23년 225억 → '24년 255억
  - '23년, '24년 물가 변동 조정금 지급에 따른 증액(협약상 마지막 연도의 물가 변동 조정금은 당해년도 지급)
- 협약금 외 추가비용 감액 / '23년 52억 → '24년 21억
  - '24년 3분기 現운영관리자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4분기 추가 비용 제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3.11.	-	-	-	-	-	-	-	2016.2.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9. 09. 02 : 김포도시철도 건설·운영 사업면허 교부(국토부 면허조건 : 위탁)
  - 2016. 02. 24 : 김포도시철도 관리·운영 민간위탁(시의회 원안동의)
  - 2016. 06. 30 :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울교통공사)
  - 2017. 01월 ~ 2019. 09월 : 단계별 운영인력의 투입 및 시운전 참여
  - 2019. 10월 ~ 2024. 09월 :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개통 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2020.08. ~ 2021.08.)
2022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2021.08. ~ 2022.08.)
2023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2022.08. ~ 2023.08.)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1,010,000	20,751,147	-	258,853	
2022	23,982,857	23,305,436	-	677,421	
2023	29,000,000	22,564,095	-	6,435,90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운영팀장 최영문	담당자	공업7급 이승학	전화	5537
-----	-----	------------	-----	----------	----	------

#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1. ~ 2025. / 5년	사업위치	김포골드라인 노선 일원
사업규모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제작(6편성) 및 시스템 개선		
사업목적	김포골드라인 차량 혼잡률 과다 및 장래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전동차 추가 제작으로 배차간격 단축 및 혼잡률 완화 등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3.2.5.3. 운영계획 1) 차량계획 나) 수송계획은 장래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해야 하며, 또한 승객의 편의성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때, 차량규모와 열차편성은 수송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2) 열차운영계획 다) 연도별 소요차량 수는 첨부시 최대혼잡구간 수요와 표정속도, 노선연장에 따른 왕복운전시간, 회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	3.2.5.3.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김포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2,200,000	10,900,000	1,000,000	9,900,000	6,567,800	5,567,8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200,000	10,900,000	1,000,000	9,900,000	6,567,800	5,567,8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567,800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li> <li>- 전동차 출고(2~5편성) 및 차량 인수 = 4,767,940</li> <li>- 차상신호장치 출고(2~5편성) 및 차상신호장치 인수 = 1,719,860</li> <li>- 개별 시운전 및 본선 시운전(1~5편성) = 80,000</li> </ul>		

### □ 예산요구 사유

-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한 전동차 제작(6편성) 및 시스템 개선
- 전동차 출고(2~5편성)에 따른 차량 인수 및 본선 시운전에 따른 비용

### □ 예산증감 사유

- 전동차 증차사업의 대금지급 조건(Key이벤트 방식)에 따른 '24년도 연부액 지출대상금액 계상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적정			
일자	2023.11.	2020.11.					2020.9.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 김포골드라인 개통
- 2020.10 공유재산심의 시의회 의결
- 2021.05 전동차 제작 구매 발주 / 조달청 계약체결
- 2022.06. 차량분야 실시설계 완료
- 2022.07. 차량기계작업 착수
- 2023.01. 변경계약(6편성/12량)
- 2023.10. 초도편성 김포한강차량기지 반입
- 2023.11. 2~3편성 김포한강차량기지 반입
- 2023.12. 4~5편성 김포한강차량기지 반입

### ○ 향후계획

- 2023.11. ~ 2024.08. 시운전시험
- 2024.06. ~ 영업투입 / 순차투입

###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A+B+E)	기투자(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E)	비고	
			계(B=C+D)	본예산(C)	추경(D)			
계	48,349,280	33,100,000	6,567,800	6,567,800	0	8,681,480		
공정별	차량 및 시스템	46,093,968	32,025,200	6,487,800	6,487,800		7,580,968	
	차륜(예비품)	880,440	880,440	0				
	월가계산용역	7,700	7,700	0				
	전력검토용역	19,341	19,341	0				
	제작감독	150,450	39,560	0			110,890	
	조달수수료	188,267	0	0			188,267	
	시운전	1,009,114	127,759	80,000	80,000		801,355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전동차 원가계산 용역 완료 - 전동차 증차사업(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2022	- 전동차 증차사업((차량)장납기자재(강제) 발주 / (신호통신)실시설계 완료 / (차량)실시설계 완료) - 전동차 차륜제작 구매 완료(276EA)
2023	- 차상신호장치 입고 - 시스템 업데이트 및 개선 - 김포골드라인 전철전원 급전 시뮬레이션 용역 - 전동차 출고(초도편성 '23.1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100,000	14,014,156	85,843	-	
2022	18,185,843	17,818,259	367,584	-	
2023	11,267,584	768,898	127,759	10,370,927	10.31.기준 집행현황/ 집행잔액 11월 집행예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기술팀장 하대용	담당자	공업7급 이기만	전화	5535
-----	-----	------------	-----	----------	----	------

#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송 정산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수도권 지하철 연락운송 기관
사업규모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송 정산		
사업목적	도시철도법 제34조(연락운송)으로 인한 운임수입 및 연락반환승차권 정산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시철도법		제34조 연락운송
	①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250	1,250		771,000	769,7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50	1,250		771,000	769,75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771,000</b>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송 정산	802-03 기타 반환금 등	○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반환금 (2022년 발생분) - 수도권 철도운영자 간 연계하여 운송하는 연락운임에 대한 정산금 · 연락운임정산협의체(대광위 주관) 공동용역 통한 정산금액 확정 - 22년 (예상) : 770,000천원 (운임수입 160억 대비 4.8% 산정) ※ 21년 정산금 : 674,331천원 (운임수입 142억 대비 4.74%)	= 770,000	대광위 공동 용역 통한 금액 확정
		○ 수도권 연락반환승차권 정산 반환금 (2022년 발생분) - 수도권 연락반환승차권 정산 (12개 기관) 1,000천원	= 1,000	

### □ 예산요구 사유

- (연락운임 정산) 수도권 철도운영자 간 연계하여 운송하는 연락운송 운임(연락운임) 22년분의 정산  
- 연락운임정산협의체(대광위 외 13개 기관) 공동용역 통한 정산금액 확정(대광위 공동용역 통한 금액확정)
- (연락반환승차권 정산) 골드라인 구간에서 발급한 승차권을 타 철도운영기관에서 반환 받은 경우 발생하는 반환금 정산

**□ 예산증감 사유**

○ `23년 예산 편성 이후 `18~`21년 연락운임 정산 확정 (`23. 10.) 따른 정산금 미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 2019. 9. 김포도시철도 개통 및 연락운송 협정 가입  
 ※ 수도권 연락운송 협정 가입에 따른 수도권 연락운송(연락운임 및 연락승차권반환) 정산
- 2021. 12.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협의체 구성 및 공동용역 협정 (`18~`21년도 정산분)
- 2022. 4. ~ 2023. 9. `18~`21년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 향후계획

- 2023. 11. `18~`21년도 연락운임 정산 금액 지급(김포시 → 타 운영기관)
- 2023. 11. ~ 2024. 6. `22년도 연락운임 정산 공동용역 및 정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협의체 구성 및 공동용역 협정
2022	`18~`21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공동용역(연구,검증,개발)
2023	`18~`21년 기관별 정산금액 확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22					
2023	1,250	1,247		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행정팀장 김은철	담당자	행정7급 김세진	전화	5526
-----	-----	------------	-----	----------	----	------

#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5. ~ 2024. 12.	사업위치	수도권 지하철 연락운송 노선
사업규모	수도권 지하철 연락운임 정산 공동용역 (대광위, 김포시 등 14개 기관)		
사업목적	수도권 철도운영자 간 연계하여 운송하는 연락운임 22년도 발생분 정산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도시철도법		제34조 연락운송
	①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대광위)이 결정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4,000	20,000	0	20,000	13,000	13,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000	20,000		20,000	13,000	13,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정산 공동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공동 용역 (2023년 발생분 정산) - 연락운임 정산 및 정산체계 도입·검증 연구용역 · 연락운임정산협의체 (대표발주 : 대광위) 공동용역 13,000천원 ※ 용역금액 연락운임정산협의체 14개 기관 분담 납부 ('18~'21년도 : 23,000천원 '22년도 김포시 분담금 : 11,000천원)	= 13,000	

### □ 예산요구 사유

- 수도권 철도운영자 간 연계하여 운송하는 연락운임 23년도 발생 분 정산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
- 공동 용역(14개 철도기관 / 대표기관 : 대광위)을 통한 정산금액의 이견 발생 사전 차단, 합리적인 정산 방안 연구 및 반영

### □ 예산증감 사유

- 전차 용역('18~'21년) 자료 통한 용역과제 범위 축소 (프로그램 용역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 2019. 9. 김포도시철도 개통
- 2021. 12.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협의체 구성 및 공동용역 협정 ('18~'21년도 정산분)
- 2022. 4. '18~'21년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공동용역 착수(정산규칙 도출, 정산금액 산출, 프로그램 개발)
- 2023. 2. '18~'21년도 공동용역 준공
- 2023. 3. ~ 8. 공동용역 기관별 협의

○ 향후계획

- 2023. 9. ~ 11. '18~'21년도 연락운임 정산 금액 지급(시 → 타 운영기관)
- 2023. 11. ~ 2024. 12 '22년도 및 '23년도 연락운임 정산 공동용역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18~'21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공동용역(연구,검증,개발)
2023	'22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공동용역(연구,검증)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22	24,000	16,128	6,796	1,076	
2023	20,000	8,800	2,200	9,000	8,800천원 집행예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행정팀장 김은철	담당자	행정7급 김세진	전화	5526
-----	-----	------------	-----	----------	----	------

# 김포도시철도 경영정보시스템 통신료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2. ~ 2024. 12.	사업위치	김포골드라인 노선 일원
사업규모	김포한강차량기지, 정거장(10개소), 구간(23.67km)		
사업목적	김포도시철도 개통이후 열차운행 시스템관리, 운임수입 및 이용승객 통계관리 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①항
	위임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해당조례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6,200	6,200	6,200	0	6,114	△8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200	6,200	6,200		6,114	△86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114	
김포도시철도 경영정보시스템 통신료	201-02 공공운영비	○ 차량기지내 경영정보시스템(MIS)↔시(철도과) 연결을 위한 통신회선료 -회선료 : 509,430원(월)*12개월	= 6,114	

### □ 예산요구 사유

- 김포도시철도 개통이후 일일 운임수입금 정산, 회계처리, 열차운행 스케줄 및 이용승객 통계관리 등
-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기관의 차량검수, 철도시설물 자산관리, 유지 보수 활동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수행 등

### □ 예산증감 사유

- 불용률 최소화를 위한 감액(산출내역은 과년도와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4. : 통신회선 신청 (전기통신사업자)
- 2019.07. : 통신회선 개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2021.01.01 ~ 2021.12.31)
2022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2022.01.01 ~ 2022.12.31)
2023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2023.01.01 ~ 2023.12.31)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6,200	6,163		37	
2022	6,200	6,074		126	
2023	6,200	5,604		59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운영팀장 최영문	담당자	시설8급 박종훈	전화	5527
-----	-----	------------	-----	----------	----	------

# 김포도시철도 홍보 및 부대사업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1월 ~ 2024. 12월	사업위치	김포골드라인
사업규모	김포도시철도 홍보 및 부대사업 발굴, 역명부기 판매사업		
사업목적	김포도시철도와 관련한 홍보로 시민과 원활한 소통 확보 김포도시철도와 관련한 부대사업으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및 재정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세출) 8항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000	5,000	5,000	0	4,000	△1,000	
국비						0	
도비						0	
시비	5,000	5,000	5,000		4,000	△1,000	
기타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	
김포도시철도 홍보 및 부대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김포 도시철도 홍보물 제작	= 3,000	
		○ 김포 도시철도 역명부기 판매사업에 따른 온비드 수수료 - 5개 역사 (낙찰가격에 따른 수수료 합 * 낙찰예상율 50% 적용)	= 1,000	

### □ 예산요구 사유

- 철도이용객 및 일반시민 대상 김포도시철도 관련(안전, 철도망 확장 등) 홍보 강화
- 김포도시철도 부대사업 추가 발굴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재정확보
- 김포도시철도 역명부기 판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건전한 철도재정운영 도모

### □ 예산증감 사유

-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공단 설립 등 홍보 범위 축소에 의한 감액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경위

- 2021. 5.~ 12. : 철도망 구축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등 홍보물 제작
- 2023. 6. : 2023년 상반기 역명부기 판매사업 진행

### ○ 향후계획

- 2023.10.~ 11. : 2023년 하반기 역명부기 판매사업 진행
- 2024. 1.~ 12. : 철도 시민안전, 철도망 확장 등 철도 전반에 관한 홍보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현수막 홍보물 제작(서울5호선 김포연장, 코로나확산 방지 등)
2022	-
2023	역명부기 판매사업 가격선정 감정평가 및 온비드 이용 수수료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7,000	6,253	-	747	
2022	5,000	0	0	5,000	
2023	5,000	1,749	-	3,251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행정팀장 김은철	담당자	시설9급 김우진	전화	5525
-----	-----	------------	-----	----------	----	------

# 김포골드라인 차기운영사 선정 제안서심사 및 협상단 운영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1. ~ 2024.3.	사업위치	김포골드라인 노선 일원
사업규모	김포한강차량기지, 정거장(10개소), 구간(23.67km)		
사업목적	김포골드라인 2차 민간위탁 운영관리자 제안서 심사를 위한 적격자 심사위원 및 협상단 구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8항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44,500	0	
국비		0				0	
도비							
시비					44,5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4,500	
김포골드라인 차기운영사 선정 제안서심사 및 협상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참석 및 제안서 평가수당 : 440,000원*9명	= 4,000	
		○ 철도분야 협상단(자문단) 구성·운영 - 협상단 철도분야 법률·회계 자문 용역 : 22,000,000원	= 22,000	
		- 협상단 철도분야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 : 200,000원*5명*15회	= 15,000	
		- 협상단 운영비(급식, 현수막 등) : 3,500,000원	= 3,500	

### □ 예산요구 사유

- 기존 운영관리자 민간위탁기간 만료('24.9월)에 따른 차기운영사 선정시, 민간위탁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방계약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내실있는 계약을 위한 협상단(자문단) 구성 및 운영

###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신규사업)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미동의	-
일자	2023.11.	-	-	-	-	-	-	-	2023.09	-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 2016. 2월 : 김포도시철도 관리·운영 민간위탁(시의회 원안동의)
- 2016. 6월 :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울교통공사)
- 2017. 1월 :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협약 체결(서울교통공사)
- 2018. 1월 :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및 인력투입(김포골드라인운영(주))
- 2019. 10월 ~ 2024. 09월 :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개통 후 5년)

### ○ 향후계획

- 2023. 9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상정
- 2023. 9월 : 국내 입찰공고
- 2023. 11월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3. 11월 ~ 2024. 1월 : 협상단(자문단) 운영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2	
2023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22					
2023					10.31.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운영팀장 최영문	담당자	공업7급 이승학	전화	5537
-----	-----	------------	-----	----------	----	------

#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3. 11. ~ 2025. 2.	사업위치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전역
사업규모	연구용역 1식(연장19.63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사업목적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및 활용방안, 대응책 강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가재정법	제38조 제①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3호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비 ※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현재 운행중인 인천2호선을 김포골드라인(걸포북변)과 연계, 고양 중산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120,000	120,000	0	10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20,000	120,000	0	100,000	△2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7-01)	합 계	100,000	
		○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총액) =	220,000	용역 주관 - 김포시 용역비 분담 (거리비례) -인천30% -김포30% -고양40%  ※ '23년도 본예산 :120,000천원 (1차/차수계약)
		- 인건비		
		· 연구인력(책임,연구,연구보조) 15개월, 총7인, 참여율(%) 각각 적용 =	144,190	
		- 경비		
		· 여비 :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15회, 연구보조원 10회		
		· 회의비 : 80,000원×3인×10회 =	28,010	
		· 유인물비 : 표지(A3, 4000원 120부), 내지(A4, 150원, 10,400매), 제본(무선, 2,000원 120부), 최종파일(USB, 60,000원, 6EA)		
		· 전산처리비 : 영상물제작(20,000,000원×1편)		
		- 일반관리비 =	10,332	
- 이윤 =	17,468			
- 합 계 =	200,000			
- 부가가치세 =	20,000			

## □ 예산요구 사유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예타조사기관(KDI)의 정책성·경제성 평가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대응체계(전략)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사항임.

## □ 예산증감사유

- 예산 추가 요구(100백만원) 사유(용역비 증액, 120백만원→220백만원)
  - 기존 수립 용역예산으로 입찰 및 재공고입찰 결과, 2회 모두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추진하였으나, 참여의사 업체 無
  - 본 용역 특성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업체가 제한적인 반면, 대규모 철도사업(KR 등) 용역발주 증가로 인해 용역수행 가능 업체 부족
  - 또한, '22년 12월 개정된 「예타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맞춰 평가항목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과업량 증가 추세로 기존 대비 추가 전문인력 투입 필요 의견
  - 연구용역 착수시기가 지체됨에 따라 예타대응 차질이 우려되는 바 용역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며, 공동수행 지자체(인천시, 고양시) 회의를 통해 용역 예산 상향 조정 협의
- 최종 합의 지자체 용역비 및 분담금(총액 220백만원, 증 100백만원) \*김포시(주관)
  - 김포시 66백만원(증 30백만원), 인천시 66백만원(증 30백만원), 고양시 88백만원(증 40백만원)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통과 (원안가결)	-	-	-	-	-	-	-
일자	2023.11.	-	2022.11.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2. ~ 2022. 12. :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수행
  - 2022. 10. :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2022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시→경기도→국토부→기재부)
  - 2022. 12. ~ 2023. 5.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안건 미상정
  - 2023. 7.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알림(기재부→국토부→경기도→시)
  - 2023. 7. :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추진(120백만원)
    - 본공고 및 재공고 입찰 결과 2회 유찰(무응찰), 참여의사 업체 無
  - 2023. 9. : 예타수행기관(KDI) 사업 현장조사 실시
  - 2023. 10. :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신규공고(220백만원)
    - 관계 지자체 회의(“23.9.21.)를 통해 용역비 상향 조정 협의(총액입찰 및 차수계약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211,102천원)
2022	-
2023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23. 7.)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	-	-	-	
2023	120,000	-	-	12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사업팀장 김성관	담당자	시설8급 이성지	전화	5533
-----	-----	------------	-----	----------	----	------

##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1. ~ 2025. / 5년	사업위치	김포골드라인 노선 일원
사업규모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제작(6편성) 및 시스템 개선		
사업목적	김포골드라인 차량 혼잡률 과다 및 장래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전동차 추가 제작으로 배차간격 단축 및 혼잡률 완화 등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3.2.5.3.
		3.2.5.3. 운영계획 1) 차량계획 나) 수송계획은 장래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해야 하며, 또한 승객의 편의성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때, 차량규모와 열차편성은 수송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2) 열차운영계획 다) 연도별 소요차량 수는 첨두시 최대혼잡구간 수요와 표정속도, 노선연장에 따른 왕복운전시간, 회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김포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b>계</b>									
국비									
도비									
시비	22,200,000	21,832,415	367,585	10,900,000	11,139,825	<b>127,760</b>	6,567,800	6,567,800	-
기타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b>합 계</b>	<b>6,567,800</b>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li> <li>- 전동차 출고(2~5편성) 및 차량 인수 = 4,767,940</li> <li>- 차상신호장치 출고(2~5편성) 및 차상신호장치 인수 = 1,719,860</li> <li>- 개별 시운전 및 본선 시운전(1~5편성) = 80,000</li> </ul>		

## □ 예산요구 사유

-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은 대금지급 조건상 사업이 단계별로 완료됨에 따라 대금 지급
- 전동차 출고(2~5편성)에 따른 차량 인수 및 본선 시운전 완료에 따른 비용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적정			
일자	2023.11.	2020.11.					2020.9.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 김포골드라인 개통
- 2020.10 공유재산심의 시의회 의결
- 2021.05 전동차 제작 구매 발주 / 조달청 계약체결
- 2022.06. 차량분야 실시설계 완료
- 2022.07. 차량제작 착수
- 2023.01. 변경계약(6편성/12량)
- 2023.10. 초도편성 김포한강차량기지 반입
- 2023.11. 2~3편성 김포한강차량기지 반입
- 2023.12. 4~5편성 김포한강차량기지 반입
- 2023.11. ~ 2024.08. 시운전시험
- 2024.06. ~ 영업투입 / 순차투입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전동차 원가계산 용역 완료 - 전동차 증차사업 계약
2022	- 전동차 증차사업((차량)장납기자재(강재) 발주 / (신호통신)실시설계 완료 / (차량)실시설계 완료) -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차륜 276EA 입고
2023	- 차상신호장치 입고 - 시스템 업데이트 및 개선 - 전동차 출고(초도편성 '23.1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100,000	4,014,156	85,844		
2022	18,185,843	17,818,259	367,584		
2023	11,267,584	768,898	127,759	10,370,92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기술팀장 하대용	담당자	공업7급 이기만	전화	5535
-----	-----	------------	-----	----------	----	------